

제 2335 호

1990년 1월 1일
1월 15일
경기도공보관실발행

경기도보

경기도청종합발간실

인

쇄

(조 려)

경기도조례 제 2001 호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중 개정조례

(규 칙)

경기도규칙 제 2040 호 경기도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제 2041 호 경기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규칙

제 2042 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53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7 호 돼지고기 연동가격표시

제 19 호 배합사료 성분등록고시

제 23 호 사료성분등록 변경고시

제 26 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제 27 호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연동가격조정

제 28 호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일부변경 지적승인 및 고시

제 29 호 아산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제 30 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계약사항 고시

제 31 호 1990 년도 경기도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고시

제 33 호 사료성분 등록사항 고시

안양시고시 제 5 호 안양도시계획시설(일산공업용지 조성) 사업시행
허가고시

안산시고시 제 2 호 반월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시행 허가고시

구리시고시 제 2 호 구리 // (도로) // //

시흥시고시 제 4 호 반월 // (일단의공업용지조성) 허가고시

고양군고시 제 2 호 벽제읍 // (운동장) 사업변경 시행허가고시

(공 고)

경기도공고 제 4 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공고

제 5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영업정지 처분공고

제 6 호 비료생산업 폐업처리 통보공고

제 7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처분공고

제 8 호 도로법 제 34 조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도로공사
공고

제 10 호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공고

제 11 호 어업면허처분 공고

제 12 호 어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공고

제 14 호 회계관계공무원(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직인신
조공고

제 17 호 지방도 2 선 변경에 관한 공고

제 18 호 덕제지서 공인신조 공고

제 19 호 성남경찰서 공인신조 공고

수원시공고 제 3 호 공인신조 공고

안양시공고 제 6 호 //

제 12 호 //

부천시공고 제 213 호 //

제 5 호 //

동두천시공고 제 91 호 //

시흥시공고 제 2 호 //

고양군공고 제 3 호 //

용인군공고 제 2 호 //

수원시공고 제 5 호 //

22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년 1 월 19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조례 제 2001 호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8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람료 수입금중 100 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도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환경정화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 23 호서식중 구비서류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8 조 제 1 항의 개정 규정은 199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년 1 월 5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규칙 제 2040 호

경기도직제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내무국) 제 1 항중 “총무과” 다음에 “의전담당관”을 신설하고, 동조 제 2 항중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다음에 “의전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신설하며 동조 제 3 항중 제 2 호 “의식 및 행사”를 삭제하고, 동조 “제 4 항” 내지 “제 11 항”을 “제 5 항” 내지 “제 12 항”으로 하며 “제 3 항” 다음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전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의 조정 및 총괄
2. 각종 의전행사의 준비 및 집행

3. 외국귀빈 초청 및 섭외
4. 외국과의 섭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각종 사회단체 관련행사의 협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년 1 월 5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규칙 제 2041 호

경기도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담당관 및 과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 조 (총무과) 중 “의전제”와 “의전제장”을 삭제하고, “제 11 조” 다음에 “제 11 조의 2”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의 2 (의전담당관) 의전담당관 밑에 의전제와 국제협력제를 두고, 각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 3 조 (제의 분장사무) “별표 1” 중 다음과 같이 한다.

내무국소관 사무의 총무과 서무계 분장사무중 “제 11 항 공무원 해외여행” 및 “의전제” 분장사무난을 삭제하고 “총무과” 다음에 의전담당관난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의전담당관	의 전 계	1. 각종행사의 조정 및 총괄 2. 각종 의전행사의 계획 수립 3. 각종 의전행사의 준비 및 집행 4. 각종 행사에 관련되는 인사문 작성 협조 5. 각종 사회단체 관련행사의 협조 6. 그밖에 담당관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의전담당관	국제협력계	1. 국제 자매결연 업무추진(시·군포함) 2. 외국귀빈초청 및 행사 3. 외국과의 섭외에 관한 사항 4. 주한 외국군과 관련된 행사 협조 5. 공무원 해외여행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년 1 월 5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규칙 제 2042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공무원 정원) 제 1 항 “ 별표 1 ”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 (총괄) 의 계 난 1,878 을 1,928 로 하고, 일반직 난 소계 1,032 를 1,065 로 하며, 5 급의 소계 212 를 215 로, 지방행정사무관 115 를 117 로, 지방전산처리관 또는 지방통신기좌에 1 을 삽입하고, 6 급의 소계 293 을 295 로, 지방전산처리사 14 를 15 로, 지방통신기사 2 를 3 으로 하며, 7 급의 소계 344 를 349 로, 지방행정주사보 151 을 153 으로, 지방통신기사보 2 를 5 로 하고, 8 급의 소계 165 를 188 로, 지방행정서기 66 을 67 로, 지방보건기원 9 를 30 으로, 지방통신기원 2 를 3 으로 하며, 기능직 난 소계 673 을 674 로 하고, 10 등급의 소계 544 를 545 로, 지방사무보조원 264 (조무 133, 타자 86, 전산 32, 제도 5, 편집 1, 필기 1) 를 265 (조무 134, 타자 86, 전산 32, 제도 5, 편집 1, 필기 1) 로 한다.

동조 제 2 항 “ 별표 2 ”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 (본청) 의 계 난 1,003 을 1,037 로 하고, 일반직 난 소계 658 을 691 로 하며, 5 급의 소계 153 을 156 으로, 지방행정사무관 87 을 89 로, 지방전산처리관 또는 지방통신기좌에 1 을 삽입하고, 6 급의 소계 188 을 190 으로, 지방전산처리사 13 을 14 로, 지방통신기사 2 를 3 으로 하며, 7 급의 소계 222 를 227 로, 지방행정주사보 112 를 114 로, 지방통신기사보 2 를 5 로 하고, 8 급의 소계 89 를 112 로, 지방행정서기 38 을 39 로, 지방보건기원 7 을 28 로, 지방통신기원 2 를

3으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303을 304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258을 259로, 지방사무보조원 177 (조무 83, 타자 53, 전산 32, 제도 4, 필기 5)을 178 (조무 84, 타자 53, 전산 32, 제도 4, 필기 5)로 하며, 총무과의 제난 141을 125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49를 39로 하며 5급의 소계 6을 4로, 지방행정사무관 4를 3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을 삭제하고, 6급의 소계 14를 9로, 지방행정주사 7을 3으로,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1을 삭제하며, 7급의 소계 19를 16으로, 지방행정주사보 9를 6으로 하고, 별정직난 소계 4를 2로 하고, 5급상당의 소계 1과 통역원 1 및 7급상당의 소계 1과 행정보조원 (제도) 1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난 소계 88을 84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83을 79로, 지방사무보조원 62 (조무 39, 타자 4, 전산 18, 필기 1)를 58 (조무 36, 타자 3, 전산 18, 필기 1)로 하며

총무과난 다음에 의전담당관난을 신설하여 제난에 22를, 일반직난 소계에 15를, 5급의 소계에 4를, 지방행정사무관에 13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에 1을, 6급의 소계에 5를, 지방행정주사에 4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에 1을, 7급의 소계에 5를, 지방행정주사보에 5를, 8급의 소계에 1을, 지방행정서기에 1을, 별정직난 소계에 2를, 5급상당의 소계에 1을, 통역원에 1을, 7급상당의 소계에 1을, 행정보조원 (제도)에 1을, 기능직난 소계에 5를, 10등급의 소계에 5를, 지방사무보조원에 5 (조무 4, 타자 1)를 각각 삽입하고

위생과의 제난 11을 32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0을 31로 하며,

8급의 소계 2를 23으로, 지방보건지원 2를 23으로 하고, 민방위과의 계란 14를 21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9를 16으로 하며, 5급의 소계 3을 4로, 지방전산처리관 또는 지방통신기좌에 1을 삽입하고, 6급의 소계 3을 5로, 지방전산처리사에 1을, 지방통신기사에 1을 각각 삽입하며, 7급의 소계 1을 4로, 지방통신기사보에 3을 삽입하고, 8급의 소계 2를 3으로, 지방통신지원에 1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훈령 제 853 호

경기도 인사관리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1월 6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 인사관리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 인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근무성적평등) 중 제 2 항 “ 별표 1 ” 의 “ 도 ”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항 목	현 행				
	구분 기관	평 정 대 상		평 정 자	확 인 자
		제 급	직 위		
근무성적 평정 및 확 인 자	도	국가 5 급	본청과장 (담당관포함)	실 국 장	부 지 사
			외청과장	소·원장	//
		지방 5 급 (연구관 포함)	본청계장	과 장 (담당관)	실 국 장
			외청계장 (교관포함)	과 장 (부장)	소·원장
			사업소장(지소장)	도과장(본소장)	소속국장
			사업소과장	사업소장	원 장· 실 국 장
		6 급이하 (연구사 포함)	본 청	과 장 (담당관)	실·국장
			외 청	과 장	소·원장
			사 업 소	소 장	소속실국장
		기 능 직	본 청	과 장 (담당관)	실 국 장
			외 청	과 장	소 원 장
			사 업 소	과 장 (지소장, 계장)	소 장

개 정				
구분 기관	평 정 자		평 정 자	확 인 자
	계 급	소 속 · 직 위		
도	국가 5 급 (지방 5 급 과장포함)	본청과장 (담당관포함)	실국장	부 지 사
		외청과장	소·원장	//
	지방 5 급 (연구관 포함)	본청계장	과장(담당관)	실 국 장
		공보관실	공보관	기획관리실장
		외청계장 (교관포함)	과장(부장)	소·원장
		북부출장소계장	부소장	소 장
		사업소장(지소장)	도과장(본소장)	소속실국장
		사업소과장	사업소장	//
		공영개발사업단 과장	담당관	단 장
	6 급이하 (연구사 포함)	본 청	과장(담당관)	실·국장
		공보관실	공보관	기획관리실장
		외 청	과 장	원 장
		북부출장소	과 장	부 소 장
		사 업 소	소 장	소속실국장
		공영개발사업단	담 당 관	단 장
	기 능 적	본 청	과장(담당관)	실 국 장
		공보관실	공 보 관	기획관리실장
		외 청	과 장	원 장
		북부출장소	과 장	부 소 장
		사 업 소	과장(지소장, 계장)	소 장
		공영개발사업단	과 장	담 당 관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7 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1 월 8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비 고
돼 지 고 기	박피품 (정육 500 g 당)	1,450 원	
	미박피품 (//)	1,250 원	

○ 시행일 : 1990.1.11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9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1 월 9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사료성분 등록사항

- 공 장 명 : 동방유량주식회사
- 소 재 지 :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87
- 대 표 자 : 신 명 수

구분	사 료			등록번호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 칭	용 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 쉼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배합 사료	착유 4-1	비유량 30 kg의 고능 력우	6-31-1	21.0	3.0	0.7	0.5	8.0	10.0
		큰소 비육 1-1	생체중 300-400 kg 조사료 급여불능사	6-35-3	10.5	2.0	0.5	0.3	20.0	10.0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3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90. 1. 11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사료 성분 등록사항

- 공장명 : 보거사료(주)
- 대표자 : 박 치 섭
- 소재지 : 당초 : 화성군 오산읍 쉼리 30

변경 : 오산시 쉼동 30

구분	사 료			등록번호	사 료 성 분 등 록 내 역					
	종류	명 칭	용 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소재 지 변경	배합 사료	어린 병아리 외 37종	(산란제) 6주이하	7-1-1	기등록내용과 같음.					

경기도고시 제 26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신기지구
2. 구 역 : 안성군 미양면 신기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기호농지개발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1,012,164 m^2
5. 환 지 내 용 : 신기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년 1 월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7 호

쇠고기,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1 월 16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비 고
쇠고기	정육 500 g 당	5,100 원	
돼지고기	박피품 (정육 500 g 당)	1,600 원	
	미박피품 (//)	1,400 원	

○ 시행일 : 1990. 1. 19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8 호

1.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 246 호 (87.9.11) 로 지적 승인하고 고시한 반월도시계획시설 (제 12 주구운동장) 에 대한 지적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안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년 1 월 17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 제 12 주구운동장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의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당 초	제 12 주구운동장	안산시 고잔동	27,400	
변 경	"	안산고잔 604번지	24,287.3	도면변경없음 (△ 3,112.7 ㎡)

○ 변경토지 세목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안산고잔동	604	운동장	24,287.3㎡	안산시장	

○ 도면표시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생략)

○ 도면은 안산시청에 보관비치. 끝.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9 호

아산산업기지개발구역내 자동차 주행시험장 건설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촉진법 제 8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 계획 변경하고 고시한다.

1990 년 1 월 18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다 음

1. 사업의 명칭 : 자동차 주행시험장 건설부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514-5
 - 나) 성 명 : 기아산업(주) 대표 김 선 홍
3. 사업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수출현탁형 자동차 생산에 따른 주행시험장 건설
 - 나) 개 요 : (당초와 변동없음)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당초와 변동없음)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87.1 - '89.12.31
 - 변 경 : '87.1 - '90.6.30 (6개월)
6. 서류의 송달 : (당초와 변동없음)
7. 수용도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당초와 변동없음)
8. 실시계획변경에 관하여는 화성군청 및 기아산업(주)시험장 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끝.

경기도고시 제 30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28 조에 의거 경기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계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 1

경 기 도 지 사

1. 내 용 :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업무

2. 계약기간 : 1990.1.1 - 1990.12.31

3. 계약금융기관 : (주)경기은행 수원지점

경기도고시 제 31 호

1990 년도 경기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고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0 년도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24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항 별	예 산 액	비 고
수 익 의 부	공 영 개 발 사 업 수 익	12,155,627	
	영 업 수 익	12,106,370	
	영 업 외 수 익	49,257	
	특 별 이 익	0	
비 용 의 부	공 영 개 발 사 업 비 용	41,239,520	
	영 업 비 용	36,321,127	
	영 업 외 비 용	1,336,000	
	특 별 손 실	0	
	예 비 비	3,582,383	

○ 자금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항 별	예 산 액	비 고	
수 입 자 금	계	59,157,028		
	영 업 수 입	12,106,370		
	영 업 외 수 입	49,257		
	특 별 수 입	0		
	전 년 도 미 수 금	0		
	고 정 자 산 매 각 수 입	1		
	투 자 및 기 타 자 산 수 입	0		
	고 정 부 채 수 입	46,577,400		
	잉 여 금 수 입	424,000		
	전 년 도 이 월 금 수 입	0		
	기 타 자 본 적 수 입	0		
지 출 자 금	계	59,157,028		
	영 업 비 용	684,839		
	영 업 외 비 용	1,336,000		
	특 별 손 실	0		
	전 년 도 미 지 급 금	0		
	용 지 및 분 양 주 택 건 설 사 업 비	35,636,288		
	임 대 주 택 건 설 사 업 비	1,651,008		
	가 동 설 비 자 산	6,500		
	비 가 동 설 비 자 산	0		
	무 형 고 정 자 산	0		
	이 연 자 산	0		
	투 자 및 기 타 자 산	0		
	고 정 부 채 상 환	0		
	기 타 자 본 적 지 출	16,080,000		
	예 비 자 금	3,762,393		

고 시

경기도고시 제 33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1 월 20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

- 공 장 명 : 한일사료공업(주)
- 소 재 지 :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13
- 대 표 자 : 최 병 덕

구분	사 료			등록번호	사 료 성 분 등 록 내 역					
	종류	명 칭	용 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수입	개사료1	성견용	15-40-1	15.0	5.0	0.7	0.5	7.0	10.0
	배합									
	사료	// 2	육성견용	15-40-2	21.0	6.5	0.7	0.5	5.0	10.0
		// 3	자견, 육 성견, 노약견	15-40-3	19.0	5.0	0.6	0.4	3.0	10.0
		// 4	육성견	15-40-4	26.0	11.0	0.7	0.5	5.0	10.0
		// 5	자 견	15-40-5	27.0	9.0	0.7	0.5	5.0	10.0

등록	수입	개사료6	자견,육성 견,노약견	15-40-6	19.0	7.0	0.6	0.4	3.0	10.0
	배합									
	사료	// 7	//	15-40-7	11.0	5.0	0.3	0.2	1.5	5.0
		// 8	//	15-40-8	10.0	3.0	0.3	0.2	1.5	5.0
		// 9	//	15-40-9	24.0	7.0	0.6	0.4	3.0	10.0
	양어사 료1		광어, 치어용	15-50-1	53.0	7.0	2.0	2.5	1.5	15.0
	양어사 료2		광어, 육성용	15-50-2	50.0	10.0	2.0	2.5	1.5	16.0

안양시고시 제 5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4 호 (76.7.12)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안양도시계획
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 및 의왕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보이
고 있으니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1990. 1.

안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1. 사업의 시행지 : 의왕시 오전동 265 번지의 4 필지

2. 사업명 : 안양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 면적 : - 결정면적 : 53,570 m^2 - 시행면적 : 16,321 m^2

○ 규모

- 토지이용계획

단위 : m^2

구 분	면 적	비 고
총 계	16,321	
건 축 용 지	6,000	
조 경 시 설 용 지	2,827	
도 로 용 지	2,045	
환 경 시 설 용 지	1,518	
주 차 장 용 지	870	
기 타 용 지	3,061	

- 기존건축물 및 건축계획

단위 : m^2

구 분	용 도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계		4,078.77	7,473.55
기존건축물	공장및 부대시설	2,873.33	4,957.08
신규건물계획	//	1,205.44	2,516.47

4. 사업시행자 : 의왕시 오전동 265 번지 (주)삼아약품 대표이사 허 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 : 허가일로부터 7 일 이내

- 준공일 : 1990.10.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

인 주소, 성명 : 6 항과 동일

안산시고시 제 2 호

고 시

반월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시행변경 허가하고 같은법 제 24 조 3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 및 초지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1.

안 산 시 장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초지동 607 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소매시장

명칭 : 원초시장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당초 { 주소 : 안산시 초지동 607 번지
 성명 : (주)원초 대표 위 룡 삼
- 변경 { 주소 : 안산시 초지동 607 번지
 성명 : (주)원초 대표 주 광 수

라. 면적 및 규모

- 면적 : 1,573 m^2 (변경없음)
- 규모 { 건축면적 : 839.55 m^2 (변경없음)
 - 녹지면적 - 당초 : 76.99 m^2
 - 변경 : 70.28 m^2
 - 주차장면적 : 406.65 m^2 (변경없음)
 - 기타부지 당초 : 249.81 m^2
 변경 : 256.52 m^2
 - 사업비 : 873 백만원 (변경없음)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
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 토지소유자 : (주)원초대표 주 광 수
- 건물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없 음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 수 일 : 허가일로부터 15 일 이내
- 준공예정년월일 { 당 초 : '89.5. 3
 변 경 : '90.1.30

고 시

구리시고시 제 2 호

구리시 고시제 10 호 (89.5.24) 로 고시된 구리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내용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재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구리시청 도시과 및 구리시 수택동, 수평동 사무소와 미금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1. 8.

구 리 시 장

1. 사업시행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초와 동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당초와 동일

다. 면적 또는 규모 : 당초와 동일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당초와 동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와 동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 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함.

2.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권 리 명 세 서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지적 (㎡)	편입지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구리시토평동	22-1	임	4,625	758	조 동 근	구리시토평동 48-1		
	-2	"	2,218	53	우 승 환 외 1 인	서울시용산구한남동 1-168		
	48-1	"	43,835	765	조 동 근	구리시토평동 48-1		
	-7	잡	102	14	우 승 환 외 1 인	서울시용산구한남동 1-168		
	-8	"	813	210	"	"		
	-9	"	1,517	1,007	"	"		
	-10	"	1,950	1,858	"	"		
	-11	"	1,749	1,340	"	"		
	-12	"	2,149	1,163	"	"		
	-42	"	1,223	14	"	"		
	-51	도	866	246		소유자 미복구		
	-52	잡	3,818	1,393	우 승 환 외 1 인	서울시용산구한남동 1-168		
	-53	"	393	145	"	"		

구리시토평동	48-68	임	56,605	18,407	우 승 환 외 1 인	서울시용산구한남동 1-168		
	-96	"	9,798	768	"	"		
	-97	"	11,491	643	"	"		
	-99	잡	952	906	"	"		
	-100	"	1,408	962	"	"		
	-101	"	602	602	"	"		
	-102	"	5,557	1,471	"	"		
	-110	임	11,048	9,099	"	"		
	-112	"	121,594	151	조 동 근	토평동 48-1		
	49-21	제		149				
	51	임	2,013	1,458	조 정 현	서울시마포구합정동 378-17		
	51-5	전	18,680	4,796		전 설 부		
	-6	"	13,402	288		"		
	61-1	"	1,855	872	김 혁 윤	구리시토평동 61		
	-3	잡	2,403	740	"	"		
	63	"	6,288	2,576	김 동 수	용산구원효로 1 가 17-11		

구리시토평동	64	집	2,337	578	안 점 순	토평동 413		
	65	"	1,392	452	김 동 수	용산구원효로 1 가 17-11		
	66	"	1,293	546	김 윤 우	영등포구신길동 206-2		
	67	전	2,972	1,094	김 학 운	토평동 413		
	68	"	1,881	836	조 동 군	" 48-1		
	70	임	3,610	1,992	임 옥 자	마포구합정동 378-17		
	71-1	"	2,142	416	조 경 수	"		
	-2	전	2,033	268	조 동 군	토평동 48-1		
	72	"	3,233	2,784	김 혁 윤	" 413		
	73	잡	2,410	622	김 동 수	용산구원효로 1 가 17-11		
	82	전	2,939	118	홍 신 자	토평동 34		
	83	"	2,040	270	"	"		
	86	"	2,235	397	윤 동 식	은평구증선동 190-3		
	87	"	2,208	467	홍 신 자	토평동 34		
	90-1	도	919	370		건 설 부		
	91	전	4,473	1,798	이 동 식	수택동 343		

구리시토평동	92	전	1,418	644	이 동 식	수택동 343		
	103-1	"	1,464	748	"	"		
	-2	"	1,461	636	"	"		
	104	"	1,402	834	김 진 실	미금면수석리 231		
	105	"	1,316	814	"	"		
	106	"	1,613	1,166	박 춘 호	교문동 346		
	108-7	"	2,486	1,216	이 순 옥	수택동 570		
	109-1	"	2,357	424	송 점 순	토평동 345		
	110-1	"	6,641	6,624	맹 봉 도	동대문구용두동 39-674		
	-2	"	235	235	"	"		
	-3	"	69	69	"	"		
	111	"	1,190	943	김 명 덕	수택동 474		
	113	"	2,803	593	최 동 근	" 552-8		
	117	"	1,623	766	이 영 재	토평동 571-4		
	119	"	400	5	김 길 만	수택동 344		
	120-1	"	1,114	666	강 명 순	" 343		

구리시토평동	120-2	전	992	992	강 명 순	수택동 343		
	121	"	3,220	2,635	이 연 훈	미금면금곡리 621		
	122	"	2,281	232	김 경 식	토평동 354		
	123	"	1,557	479	윤 광 식	수택리산 2		
	124	"	783	425	이 기 수	동대문구중화동 327-59		
	125	"	982	748	"	"		
	126-1	"	3,745	2,482	윤 천 민	교문동 229		
	127-1	"	3,435	1,301	김 낙 원	구리시토평동 526		
	128-1	"	2,929	922	전 영 철	수택동 597		
	129-1	"	30	30		국		
	-2	"	331	331	이 길 회	수택동 180		
	-3	"	331	331	신 태 화	인창동 555		
	-4	"	872	872	노 승 직	수택동 337		
	130-1	"	2,542	487	장 춘 덕	서울시마포구염리 동 10-54		
	131-1	"	1,860	607	권 태 중	토평동 591-4		
	132	"	1,382	432	경주김씨 양주중친회	교문동 203		

구리시토평동	133	전	1,980	625	윤 광 식	수택리 산 2		
	134	"	4,479	1,478	김 영 철	" 597		
	135-1	"	1,868	1,240	"	"		
	155	"	3,150	36	지 복 성	" 409-22		
	156-1	"	1,871	174	이 호 선	" 571		
	157-1	"	3,517	627	"	"		
	158	"	1,283	346	장 석 천	"		
	159	"	1,104	379	이 명 성	남양주군미금면수석리 224		
	109-1	"	2,357	424	송 점 순	토평동 345		
	110-1	"	6,641	6,624	맹 봉 도	동대문구용두동 39-674		
	-2	"	235	235	"	"		
	-3	"	69	69	"	"		
	111	"	1,190	943	김 명 덕	수택동 474		
	113	"	2,803	593	최 동 근	" 552-8		
	117	"	1,623	766	이 영 제	토평동 571-4		
	119	"	400	5	김 길 만	수택동 344		

구리시 토평동	120-1	전	1,114	666	강 명 순	수택동 343		
	-2	"	992	992	"	"		
	121	"	3,220	2,635	이 연 훈	미금면 금곡리 621		
	122	"	2,281	232	김 경 식	토평명 354		
	123	"	1,557	479	윤 광 식	수택리산 2		
	124	"	783	425	이 기 수	동대문구 중화동 327-59		
	125	"	982	748	"	"		
	126-1	"	3,745	2,482	은 천 먼	교문동 229		
	160-1	"	1,788	810	김 낙 원	토평동 526		
	160-2	"	1,987	801	"	"		
	114-1	"	1,117	64	국	건 설 부		
	45-1	"	4,026	862	노 명 기	구리시 교문동 270		
	954	"	2,089 702	11,998		건 설 부		
	136-1	"	2,475	473	윤 중 식			
	137-5	"	456	144	"	서울시 서대문구 부임동 210-16		
	235-1	"	4,661	432	손 점 석	수택동 570		

구리시수택동	236-1	전	162	76	손 점 석	수택동 570		
	-5	"	744	20	"	"		
	-4	"	1,111	201	"	"		
	237-1	"	1,666	360	"	"		
	-2	도	436	103	"	소유지 미복구		
	238-3	전	893	374	이 범 준	수택동 344		
	239-3	"	1,828	966	서 광 복	미금면평내리 산 87-11 진주아파트사동 303		
	240-3	"	684	90	이 원 실	수택동 571		
	-4	"	992	669	"	"		
	241-1	"	4,208	1,296	이 정 무	교문동 220		
	242-1	"	2,357	775	이 무 성	수택동 339		
	243-1	"	2,188	739	"	"		
	244-1	"	4,040	1,145	"	"		
	245-1	"	3,055	912	구 순 업	수택동 419-87		
	246-1	"	3,742	1,015	이 무 성	" 339		
	247-3	"	2,446	346	정 종 근	서울시성동구송정동 43-35		

구리시 수택동	169-1	도		32			
	170-1	천	13,590	1,774		건 설 부	
	169	임		336			
	206-1	전	1,855	720	서 병 열	수택동 281	
	-2	제	1,289	375	"	"	
	207-1	"	1,051	288	이 시 범	" 571	
	-2	"	360	120	"	"	
	208-1	"	2,327	350		국	
	209-1	"	1,518	257			
	210-1	"	800	50		경 기 도	
	-3	전	2,357	225	이 원 실	수택동 571	
	231-1	"	322	264	"		
	217-1	도	1,613	84		건 설 부	
	233-1	전	5,233	600	안 경 승	인창동 307	
	233-2	"	3,144	360	"	"	
	238-2	도	347	191		소유자 미복구	

구리시수택동		도				소유자 미복구		
	239-2	전	4,119	384	손 영 산	인창동 370		
	250	도		2				
	237-3	전	2,965	52	김 기 홍	서울시강동구명일동 삼익아파트 507-905		
		"		6				
		도		96				
	247-4	전		1,104				
미금시도농동	210-231	천	30,757	1,339	국	건 설 부		
	-128	"	228	160	최 종 안	수택동 281		
	-130	"	192	17	(주)원진 레이온	도농동 1		
	-129	전	182	26		소유자 미복구		
	-126	"	2,711	852	박 두 형	도농동산 1		
	-227	"	817	89	이 옥 우	" 18		
	-125	"	532	298	신 종 철	도봉구미아동 229-21		
	-124	"	218	218	고 문 식	도농동 210-184		
	-122	"	1,268	35	전 종 순	" 131-2		

미금시도농동	210-123	전	258	58	고 문 식	도농동 210-184		
	-131	"	949	232	"	"		
	-132	잡	426	426	"	"		
	-137	전	569	126	"	"		
	-133	"	311	311	"	"		
	-136	답		46		"		
	-135	전	195	195	고 재 회	"		
	-140	천	46	46	"	"		
	-139	"	155	155	"	"		
	-216	전	60	42	(주) 원 진	도농동 1		
	-215	잡	7	7	김 창 설	" 13		
	-197	전	3	3	"	"		
	-201	"	866	95	(주) 원 진	" 1		
	-198	"	46	10	"	"		
	-214	잡	241	218	"	"		
	-47	"	562	318	고 문 식	서울시중림동 206-2		

미금시도농동	210-210	잡	43	43	(주) 원 진	도농동 1		
	-141	"	264	264	고 재 희	서대문구충림동 206		
	-209	"	23	23	(주) 원 진	도농동 1		
	-164	"	129	129	고 재 희	서대문구충림동 206		
	-163	"	205	205	"	"		
	-165	"	985	494	고 문 식	서울시충림동 206-2		
	-50	"	493	177	"	도농동 210-184		
	-160	답	2,552	97	(주) 원 진	도농동 1		
	-213	"	245	241	"	"		
	-212	잡	96	96	"	"		
	-193	"	116	44	"	"		
	-211	"	33	33	"	"		
	-191	전	53	53	"	"		
	-189	천	23	23	"	"		
	-224	잡	63	14	"	"		
	-187	답	40	40	"	"		

미금시도농동	210-223	잡	23	20	(주) 원 진	도농동 1		
	-190	전	519	2	고 재 회	" 210-184		
	-181	수	99	99	(주) 원 진	" 1		
	-179	"	56	56	"	" 1		
	-151	잡	106	106	고 재 회	중립동 206		
	-51	"	1,567	184	고 문 식	도농동 210-184		
	-177	수	69	69	(주) 원 진	" 1		
	-152	잡	17	17	고 재 회	중립동 206		
	-175	수	10	10	(주) 원 진	도농동 1		
	-153	잡	126	126	고 재 회	중립동 206		
	-173	수	109	109	(주) 원 진	도농동 1		
	-174	잡	106	106	고 재 회	중립동 206		
	-60	"	2,998	179	"	"		
	-157	"	314	314	"	"		
	-52	"	4,218	10	고 문 식	도농동 210-184		
	-171	수	304	304	고 재 회	중립동 206		

미금시도농동	210-172	잡	278	278	고 재 회	중립동 206		
	-59	"	109	49	고 문 식	도농동 210-184		
	-168	수	152	146	(주) 원 진	도농동 1		
	-166	"	198	51	"	"		
	-169	잡	1,418	722	고 문 식	도농동 210-184		
	-167	"	2,112	1,169	"	"		
	215-3	"	2,460	1,788	"	"		
	210-25	"	1,031	3	"	중립동 206-2		
	202-2	답		376				
	241-2	"	1,517	672	박 두 회	호평동 230		
	216-7	잡	909	249	고 문 식	도농동 210-184		
	201-2	"	1,012	470	"	"		
	191	전	747	684	고 재 회	"		
	"	"	747	13	"	"		
	216-2	잡	1,273	585	고 문 식	"		
	200-2	"	781	68	"	"		

미금시도농동	190	전	512	36	고 재 회	도농동 210-184		
	192	"	2,866	1,317	"	"		
	193	"	1,898	1,814	송 경 수	종로구적선동 26		
	"	"	1,898	18	"	"		
	199-5	답	1,190	111	"	"		
	"	"	1,190	54	"	"		
	199-4	"	1,511	74	이 영 한	수석동 224		
	"	"	1,511	56	"	"		
	194	"	1,250	334	김 순 옥	수석동 25		
	"	"	1,250	183	"	"		
	186-1	전	2,929	45	이 혜 숙	동대문구면목동장안시영 ㉠ 83-204		
	185	답	2,364	1,047	장 윤 봉	가운동 367		
	184-5	"	863	863	박 영 부	도농동 292		
	-4	"	192	6		국		
	185-3	답	972	6	박 기 철	강남구서초동 34 호삼호 ㉠ 8동 1503 호		
	195-3	"	972	318	"	"		

미금시도농동	182-1	답	1,286	63	박 기 철	강남구서초동 34 호삼호 ㉠ 8동 1503 호		
	-1	"	1,286	1,223	"	"		
	-2	전	998	70	"	"		
	-2	"	998	928	"	"		
	183-5	답	43	43	이 상 옥	도농동 23-2		
	-7	"	231	231	"	"		
	-1	전	602	50	"	"		
	-1	"	602	552	"	"		
	-6	답	1,587	345	"	"		
	-6	"	1,587	1,242	"	"		
	184-2	"	1,494	180	박 영 복	도농동 292		
	-2	"	1,494	1,314	"	"		
	183-3	전	767	208	이 상 옥	도농동 23-2		
	-2	답	3,570	3,092	이 철 영	" 60		
	225	전	2,641	125	박 기 호	" 292		
	181-2	"	426	315	박 기 철	강남구서초동 34 호삼호 ㉠ 8동 1503 호		

미금시도농동	181-1	전	479	327	박 기 철	강남구서초동 34 호삼호 ㉠ 8동 1503 호 국		
	180-3	"	347	347				
	-2	"	1,101	808	"	강남구서초동 34 호삼호 ㉠ 8동 1503 호		
	-1	답	2,169	771	장 순 리	도농동 118		
	178-10	"	1,058	757		소유자 미복구		
	-2	전	526	226	"	도농동 118		
	-1	답	1,147	619	이 주 명	" 30		
	177-3	"	235	32	이 금 경	" 34		
	197-4	도		153				
	177-2	답	1,306	199	"	" 34		
	163-4	"	393	81	우 순 영	" 131		
	-1	"	2,671	303	"	"		
	143	"	2,281	2,237	박 이 래	서울성동구응봉동 204-1		
	144	"		48				
	141-4	"	1,980	333	윤 복 순	도농동 236-11		
	179	전	2,783	1,832	이 성 자	" 49		

미금시도농동	178	답		1,507				
	279-1	구	542	185	국	전 설 부		
	279	답	1,471	116	박 이 례 외 3	서울성동구응봉동 204-1		
	282-2	"	4,476	994	박 정 남	도농동 45-2		
	283-2	"	2,562	1,372	문 석 경	" 7		
	284-1	"		361	노 대 영	남양주군외부읍덕소리 528		
	142-2	전	1,336	1,017	이 회 재	도농동 30		
	141-3	답	4,393	237	이 진 회	" 105		
	-6	"	1,798	1,044	"	" 105		
	-2	도	1,177	1,177	국	전 설 부		
	-1	"	1,045	419	"	"		
	140	"	436	52	"	"		
	142-1	"	321	321	"	"		
	284-1	"	393	393	노 대 영	남양주군외부읍덕소리 528		
	283-1	"		383				
	282-1	도	688	44	국	전 설 부		
	181-4	전	1,141	859	박 기 철	강남구서초동 34 호삼호㉠ 8동 1503 호		

건 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구 조	용 도	규 모 (수 량)	소 재 지		소유자 이외의 권 리	비 고
	주 소	지 번				주 소	성 명		
1	구리시토평동	48-68임	기 와	주거용	120	구리시토평동 48-57	우승환		
	"	"	슬라브		60.8	"			
2	미금시도농동	1 번	슬라브	편프장	128	미금시도농동 1 번	원 진 레이온		
3	구리시토평동	142-5대	기 와	주거용	42.8	서울시중립동 206-2	고문식		
4	"	179-6전	스레트	우 사	144	동대문구망우 1 동	김덕주		
	"	179-7전	"	주거용	66	"	"		
5	미금시도농동	191 전	"	편프용	144	구리시동구동 9/3	조용구		
	"	"	"	"	42	"	"		

고 시

시흥시고시 제 4 호

반월도시계획시설(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제 24 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흥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1. 8.

시 흥 시 장

1. 허가(변경)내용

○ 사업시행위치: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산 25-4 번지의 2 필지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변경없음)

· 명 칭 : 광덕물산주식회사(변경없음)

○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변경없음)

- 결 정 면 적 : 76,000 평방미터

- 기시행면적 : 26,614 "

- 금회시행면적 : 49,396 "

· 규 모

토 지 이 용 제 획

구 분	면 적 (m^2)	비 고
제	49,386	변 경 없 음
건 축 부 지	13,970	"
운 동 장 부 지	2,416	"
녹 지 부 지	33,000	"

건 축 제 획

구 분	면 적 (m^2)	비 고
건 물 면 적	5,355.36	변 경 없 음
건 물 연 면 적	12,036.96	"

○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 성 명 : 당초 - 광덕물산(주) 김 성 기
변경 - 광덕물산(주) 김 태 수

○ 사업기간

- 당 초 : '87.8.15 - '89.12.30
- 변 경 : '87.8.15 - '90.12.30

주 민 공 람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3 항 규정에 의거 생략

고양군고시 제 2 호

고 시

벽제읍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1 항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변경 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 24 조 3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고양군청 및 벽제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1. 3.

고 양 군 수

1. 허가내용

시 설 명	세부시설명	위 치	규 모	비 고
운 동 장	골 프 장	고양군벽제읍벽제리 산 65-1 번지의 14 필지	379,896 ^{m²}	9 홀 대중골프장 세부시설변경

2. 부대시설

단위 : 평방미터

시 설 명	당 초 면 적	변 경 면 적	비 고
계	1,453.35	2,384.61	증가 931.26
클럽하우스	1,126.95	1,380.6	증가 253.65
관리사무소	288	288	변 동 없 음
기 타 시 설	38.4	716.01	증가 677.61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벽제도시계획사업 (운동장 : 골프장) 신설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산 65-1번지

조영관광(주) 이 관 식

다. 면적 및 규모 : 379,896 평방미터

공 고

경기도공고 제 4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공고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건설촉진법 제 7 조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8.

경 기 도 지 사

아 래

1. 등록업체명 : 별지와 같음
2.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사유 : 별지와 같음
3. 영업정지기간 : 별지와 같음

주택건설 (대지 조성) 사업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현황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행 정 처 분 일	처분분야	사 유	근 거	처분내용
1	89-41	89.4.26	뉴 타 운 개 발(주)	이진세	안양시 석수동 417-3	'90.1.8	주택건설	• 고용기술자 갑근세미제출 • 사무실소재지 불명 • 청문불응	주택건설 촉진법 제 7 조	등록말소
2	89-55	"	삼천리중 건설(주)	임인규	안양시 안양 6 동 471-17 세무회관 401 호	"	"	• 고용기술자 갑근세미제출 • 청문불응	"	"
3	89-66	"	우성개발 (주)	공운수	남양주군 진건면 용정리 367-20	"	"	"	"	"
4	89-105	89.5.17	(합) 이완토건	이완규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91	"	대지조성	• 고용기술자 갑근세미제출 • 사무실소재지 불명 • 청문불응	"	"

5	89-124	89.5.17	성도건설 (주)	고장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1-8	90.1.8	주택건설	• 고용기술자 갑근세 미제출 • 사무실소재지 불명 • 청문불응	주택건설 촉진법 제 7 조	등록말소
6	89-133	"	(주) 대성주택	이종훈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97-5	"	"	• 고용기술자 갑근세 미제출 • 청문불응 • 대표자사망	"	"
7	89-151	89.6.5	(주) 영승	마황근	광명시 광명동 51-4	"	"	• 고용기술자 갑근세 미제출 • 사무실소재지 불명	"	"
8	89-129	89.5.17	대창산업 개발(주)	오준문	부천시 중구 심곡동 87-3	"	대지조성	• 고용기술자 갑근세 미제출 • 사무실소재지 변경신고미이행	"	영업정지 3 월 '90.1.8 - 4.7

9	89-162	89.6.27	현대개발	여충엽	김포군 통진면	"	주택건설 대지조성	• 고용기술자 - 갑근세미제출 • 대표자, 상호 - 변경신고 미 - 이행	"	"
---	--------	---------	------	-----	---------	---	--------------	--	---	---

공 고

경기도공고 제 5 호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9.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영 업 정 지 기 간	비 고
제 56 호	창신전설	채 흥 식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603-7	90.1.8 - 3.7 (2 월)	국세체납
제 498 호	주경기전	전 수 남	수원시 장안구 화서 1 동 32-6	90.1.8 - 4.7 (3 월)	소재불명

공 고

경기도공고 제 6 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폐업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9.

경 기 도 지 사

1. 허가 번호 : 10-가-1-1, 10-가-5-1, 10-가-11-3, 10-가-7-1

2. 상 호 : 경기유지공업(주)

3. 대표자성명 : 박 기 채

4. 비료의종류 및 품목 : 어박, 채종유박, 혼합유박, 깻묵

5. 제 조 장 소 :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울암리 506-1

6. 폐업년월일 : 1990. 1. 9

7. 폐업사유 : 폐사의 사정으로 인한 자진 폐업

공 고

경기도공고 제 7 호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9.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제 325 호	대원전기공사	이병량	안산시 원곡동 994 유통상가 9동 121	국세채납
제 648 호	평 화 전 업 사	강희진	안성군 안성읍 영동 529-1	"
제 311 호	한진전기공사	김원수	송탄시 서정동 90-1	소재불명
제 573 호	동 양 전 기	엄익형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82-1	"

공 고

경기도공고 제 8 호

도로법 제 34 조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도로공사 시행허가를 하고
 동법시행령 제 1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의종류	지방도 302, 345 호	노선 명	매항 - 송전, 포승 - 우정
공사의종류	지방도로 확장 (로타리 확장)		
장 소	화성군 우정면 화산리 670-5 번지선		
시 행 자	화성군 우정면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 일간
목 적	사거리 급커브 구간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방지는 물론 도로의 시거불량 해소		

1990. 1. 11.

경 기 도 지 사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0 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 37 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신고를 수
리하고 동법시행령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0. 1. 9.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어 업 권 자		어 장		포기 사유	수리일자
	주 소	성 명	위 치	면 적		
경기양식 제 671 호	응진,대부 북리 161	북리어촌 제 장 김 동현	응진, 대부 북리지선	m ² 50,000	보상금수령을 위한 자진포기	89.12.30
경기양식 제 672 호	"	"	"	50,000	"	"
경기양식 제 910 호	"	"	"	140,000	"	"
제 1종공동 제 31 호	응진,대부 북리 1279	청 산 위 원 장 김 복동	"	100,000	"	"
제 1종공동 제 43 호	"	"	"	100,000	"	"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1 호

수산업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합니다.

1990. 1. 8.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양식품종 (채포물)	어 장		어 업 권 자		면허기간
		위 치	면 적	주 소	성 명	
경기양식 제 1010 호	숭어, 농어	강화군길상면 초지리지선	㎡ 13,470	서울시은평구 응암동 243-74	윤정상	1990.1.8 2000.1.7
경기양식 제 1011 호	"	강화군교동면 동산리지선	67,295	경기도강화군 교동면대룡리 516-1	김영철	"

※ 제한 및 조건

1. 매월 생산실적을 익월 5 일한 관할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면허처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장의 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3. 양식어장의 양식품종, 시설내역, 생산량 및 판매량, 양식어장관리 상황을 매년 1 월 30 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어장운영 및 관리에 있어 관할군부대장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2 호

수산업법 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존속기간연장
허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합니다.

1990. 1. 9.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양식품종 (채포물)	어 장		어 업 권 자		연장허가 기 간
		위 치	면 적	주 소	성 명	
경 기 제 1 종 공 동 제 96 호	바지락	화성군남양면 장덕리지선	160,000	화성군남양면 시리 228번지	시리어촌 제 장 홍충선	1990.2.28 2000.2.27

경기도 공고제 14 호

공 인 신 조 공 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다음과 같이 신조사
용함을 경기도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1990 년 1 월 16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용개시일 : 1990 년 1 월 20 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관 리 자 인	경기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기업출납원인	경기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수입원인
		
경기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지출원인	경기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자산출납원인	경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공고제 17 호

○ 지방도 노선변경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 20 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도의 노선을 변경하였기에
이에 공고한다.

1990. 1. 18.

경 기 도 지 사

도로의종류		노 선 명	기 점	종 점	중요경과지	총연장(㎞)	중용연장(㎞)	비 고
지방도 362 호	당 초	와부-상면	남양주군 와부면 덕소리 466-1	가평군 상면 현리 514-2	남양주, 와부, 화도면, 수동면	42,200		
	변 경	하남-상면	하남시 천현동 477-3	"	하남시 팔당, 와부, 화도면, 수동면	50,835	국도 6호선 5,200	

공 고

경기도 제 18 호

의정부경찰서 덕계지서 신설에 따른 덕계지서장의 직인 및 제인을
신조 조각하여 사용함을 관인 규정 제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관 인



제 인



1989. 12.

경 기 도 지 사

공 고

경기도 제 호

의정부경찰서 덕계지서 신설에 따른 덕계지서장의 직인 및
제인을 신조 조각하여 사용함을 관인 규정 제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관 인	계 인
	

1989. 12.

경 기 도 지 사

공 고

경기도제 19 호

1989.12.15자로 성남시 성남경찰서 관내 5개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라 파출소장의 직인 및 계인을 신조 조각 사용함을 관인 규정제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파 출 소 명	관 인	계 인
태 삼파출소		

파 출 소 명	관 인	계 인
수정 파출소		
금동 파출소		
신일 파출소		

파 출 소 명	관 인	계 인
상 원 파 출 소		
공 고 수원시공고제 3 호 수원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된 공인을 관인규정 제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 수 원 시 장 ○ 신조공인		
수원시 양곡관리특별회계분임채권 관리관인	수원시양곡관리기금분임채권 관리관인	
		

안양시공고제 6 호

공 인 신 조 사 용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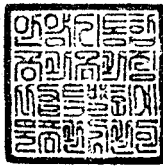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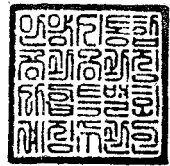
통합공과금제 실시에 의한 회계관계 공인을 안양시 공인조례제 6 조
2 항 및 안양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제 10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년 1 월 15 일

안 양 시 장

1. 사용개시일 : 1990. 1. 16.

2. 신조사용인

안양시통합공과금 과징
사업관리자인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
업특별회계물품관리관인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징수관인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지출원인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물품출납원인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 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안양시만안출장소통합 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 계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만안출장소통합 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 계물품출납원인
		
안양시만안출장소통합공과 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인	안양시동안출장소통합 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 계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동안출장소통합 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 계물품출납원인
		
안양시동안출장소통합공과 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인		
		

안양시 공고제 12 호

공인개각사용및폐공인공고

기관명칭이 변경된 “안양시 문화회관”의 개각 및 폐기공인을 안양시 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90 년 1 월 19 일

안 양 시 장

1. 개각사용및폐기일 : 1990. 1. 22.

2. 개각사용인

안양시 문예 회관장인	안양시 문예 회 관 계 인	안양시문예회관분임징수관인
		
안양시문예회관물품관리인	안양시문예회관분임경리관인	안양시문예회관전도지금출납원인
		
안양시문예회관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인	안양시 문예회관 물품출납원인	안양시문예회관 수입금출납원인
		

2. 폐 기 인			
안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소장인	안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소제인	안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소분임정수관인	안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소물품관리관인
			
안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소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안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소분임경리관인	안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소물품출납원인
			
안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소수입금출납원인			
			

부천시공고제 213 호

공 인 사 용 공 고

부천시 공인조례제 9조제 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 년 12 월 29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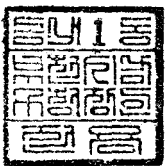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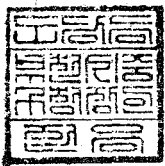
부 천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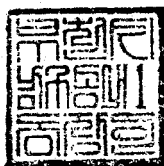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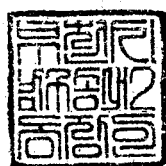
1. 공고내용 : 공인신규제작

2. 사용일자 : 1990 년 1 월 1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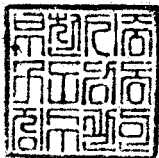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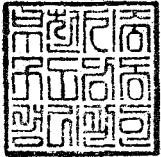
3. 공고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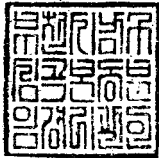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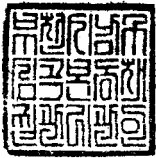
(신규사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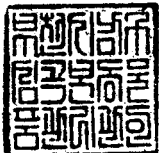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심곡본동전용 부천시 남구청장인		송내 1 동전용 부천시 남구청장인	
송내 2 동전용 부천시 남구청장인		도당동전용 부천시 중구청장인	
심곡본동전용 부천시 남구계인		송내 1 동전용 부천시 남구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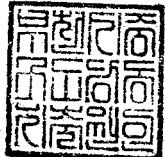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송내 2 동전용 부천시 남구계인		도당동전용 부천시 중구계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심곡본동장인		부천시 남구 송내 1 동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 동장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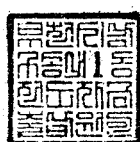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십곡본동계인		부천시 남구 송내 1 동계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 동계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계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십곡본동 정수관인		부천시 남구 송내 1 동 정수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 동정수관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정수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십곡본동경리관인		부천시 남구 송내 1 동경리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 동경리관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경리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십곡본동분임 경리관인		부천시 남구 송내 1 동분임 경리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 동분임 경리관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 분임경리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십곡본동 채권관리관인		부천시 남구 송내 1 동 채권관리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 동 채권관리관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 채권관리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심곡본동 물품관리관인		부천시 남구 송내 1 동 물품관리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 동 물품관리관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 물품관리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심곡본동 지출원인		부천시 남구 송내 1동 지출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동 지출원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 지출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심곡본동 수입금출납원인		부천시 남구 송내 1동 수입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동 수입금출납원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 수입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심곡본동 전도자금출납원인		부천시 남구 송내 1동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동 전도자금출납원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심곡본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부천시 남구 송내 1 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 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심곡본동 물품출납원인		부천시 남구 송내 1 동 물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 2 동 물품출납원인		부천시 중구 도당동 물품출납원인	
○ 폐기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송내동전용 부천시 남구청장인		송내동전용 부천시 남구제인	
공 인 명	인 명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동장인		부천시 남구 송내동제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동 청수관인		부천시 남구 송내동 경리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동 분임경리관인		부천시 남구 송내동 채권관리관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동 물품관리관인		부천시 남구 송내동 지출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동 수입금출납원인		부천시 남구 송내동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송내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부천시 남구 송내동 물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공고제 5 호

공 인 사 용 공 고

부천시 공인조례 제 9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년 1 월 9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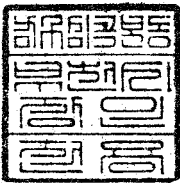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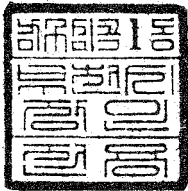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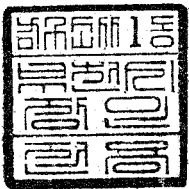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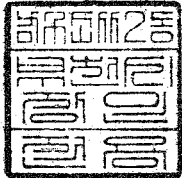
부 천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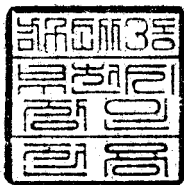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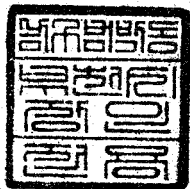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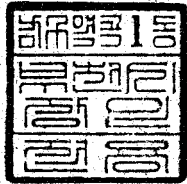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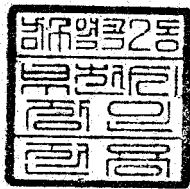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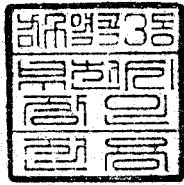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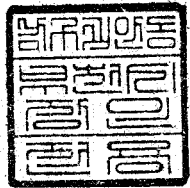
1. 공고내용 : 공인신규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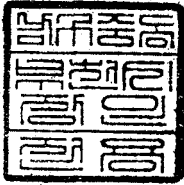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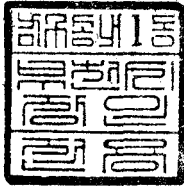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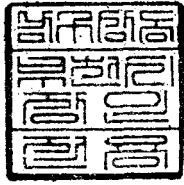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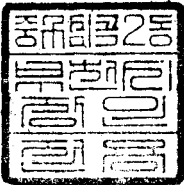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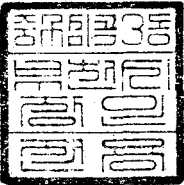
2. 사용일자 : 1990 년 1 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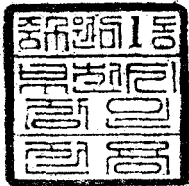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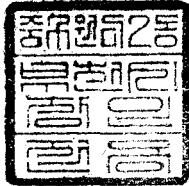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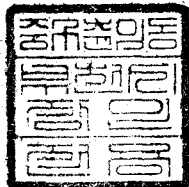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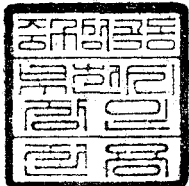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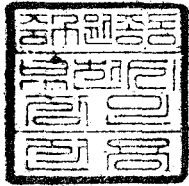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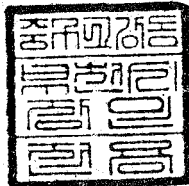
3. 공고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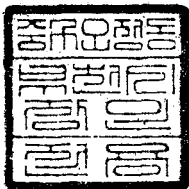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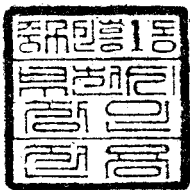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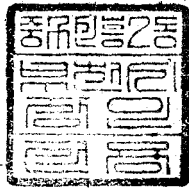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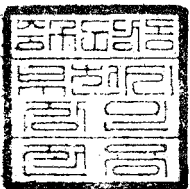
(신규사용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십곡본 동전용 부천 시장인		남구 십곡 1 동전용 부천시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소사 1 동전용 부천시장인		남구 소사 2 동전용 부천시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소사 3 동전용 부천시장인		남구 범박 동전용 부천시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역곡 1 동전용 부천시장인		남구 역곡 2 동전용 부천시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역곡 3 동전용 부천시장인		남구 괴안 동전용 부천시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 구 중 동 전 용 부 천 시 장 인		남 구 송 내 1 동 전 용 부 천 시 장 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 구 송 내 2 동 전 용 부 천 시 장 인		남 구 상 동 전 용 부 천 시 장 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 구 십 곡 2 동 전 용 부 천 시 장 인		중 구 십 곡 3 동 전 용 부 천 시 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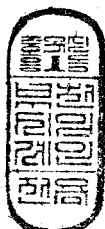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원미 1 동전용 부천시장인		중구 원미 2 동전용 부천시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춘의 동전용 부천시장인		중구 성곡 길전용 부천시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원종 동전용 부천시장인		중구 고강 동전용 부천시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오정 동전용 부천시장인		중구 신흥 1 동전용 부천시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신흥 2 동전용 부천시장인		중구 도당 동전용 부천시장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심곡 본동전용 부천시제인		남구 심곡 1 동전용 부천시제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소사 1 동전용 부천시제인		남구 소사 2 동전용 부천시제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소사 3 동전용 부천시제인		남구 범박 동전용 부천시제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역곡 1 동전용 부천시제인		남구 역곡 2 동전용 부천시제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역곡 3 동 전 용 부천 시 계 인		남구 괴안 동 전 용 부천 시 계 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중동 전 용 부천 시 계 인		남구 송내 1 동 전 용 부천 시 계 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남구 송내 2 동 전 용 부천 시 계 인		남구 상동 전 용 부천 시 계 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심곡 2 동전용 부천시제인		중구 심곡 3 동전용 부천시제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원미 1 동전용 부천시제인		중구 원미 2 동전용 부천시제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춘의 동전용 부천시제인		중구 성곡 동전용 부천시제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원종 동전용 부천시계인		중구 고강 동전용 부천시계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오정 동전용 부천시계인		중구 신흥 1 동전용 부천시계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중구 신흥 2 동전용 부천시계인		중구 도당 동전용 부천시계인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인			
공 고 동두천시제 91 호 동두천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 및 폐각된 관인을 동 조례 제 9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신조사유 : 공인 마모 2. 사용개시년월 : '89.12.27 3. 공인인영 : 별 첨 1989.12. . 동 두 천 시 장			
1. 신규사용인		2. 폐 기 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보산동장인		보산동장인	

공 고

시흥공고제 2 호

건축민원전용 공인을 시흥시공인조례 제 11 조 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동조례 제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6.

시 흥 시 장

- 폐기일 : '90.1.10
- 공인명 및 인영

건축민원 시흥시장인전용

시흥시 계 건축민원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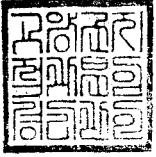
고양군공고제 3 호

고양군공인 () 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신조하였기 공고함.

- 사용개시일 : 1990 년 1 월 15 일

1990 년 1 월 12 일

고 양 군 수

공 인 명	사 용 신 조 인
고 양 군 지 적 과 분 입 경 리 관 인	
고 양 군 지 적 과 전 도 자 금 출 납 원 인	

용인군공고제 2 호

용인군 공인조례 제 6 조에 의거 신조개각 및 폐인된 관인을 같은
조례 제 9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5.

용 인 군 수

1. 사용 및 폐기일시 : 1990. 1. 2.

2.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공 인 명 및 인 영

가. 신흥사용인

민원사무전용 읍인읍장인



민원사무전용 읍인읍계인



용인군지적과분임경리관인



용인군지적과전도자금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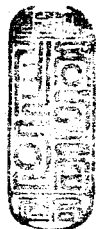


나. 폐 기 인

민원사무전용용인읍장인



민원사무전용용인읍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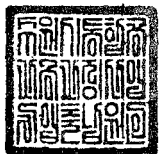
수원시공고제 5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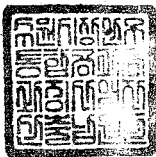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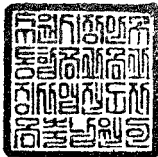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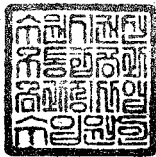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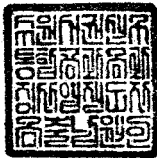
수원시 공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된 공인을 관인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1.25.

수 원 시 장

○ 신조공인

수원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관리자인	수원시통합공과금과징 사업기업출납원인	수원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수입원인
		
수원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지출원인	수원시통합공과금과징 사업자산출납원인	수원시통합공과금과징사 업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수원시 과금과 파금과 장안구 정사업 통합기 업합출 납원인
			

제 2336 호

1990.1.16-1.31

경기도공보관실발행

경기도보

경기도청종합발간실

인

쇄

(조 려)

경기도조례 제 2001 호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중 개정조례
제 2002 호 경기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규 칙)

경기도규칙 제 2043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제 2044 호 "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55 호 북부출장소사무위임규정중 개정규정
제 856 호 경기도사무내부위임규정중 개정규정
제 857 호 경기도시군담당지도규정 개정
제 858 호 경기도공무국여행심사위원회규정중 개정규정

(예 규)

경기도예규 제 591 호 경기도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지정 및 변경
기준개정

(고 시)

경기도고시 제 34 호	환지계획인가와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고시
제 35 호	사방지정지해제고시
제 38 호	식품접객업 영업시간의 제한고시
제 39 호	사방지정지해제고시
제 40 호	부천도시계획시설 (오정어린이공원) 사업시행허가 고시
시흥시고시 제 1 호	반월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승인고시
포천군고시 제 2 호	소흘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시행허가고시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0 호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공고
제 23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공고
제 27 호	"
제 28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공고
제 29 호	하천의 금지구역일시해제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 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의정부공고 제 10 호	공인신조공고
부천시공고 제 11 호	"
오산시공고 제 3 호	"
안성군공고 제 90-10 호	"

조 례

경기도 조례 제2001호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중 개정조례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람료 수입금중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도 지정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환경정화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도 지정 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조 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이에 제정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1월 24일

경기도 조례 제2002호

경기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의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체육도장의 출입문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다.

1. 건물의 현면적이 3,300㎡ 이상일 것
2. 체육도장으로 부터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체육도장과 동일층 그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 것
3. 체육도장이 위치한 장소로 부터 수평거리 6m이내에 위치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체육도장과 인접건물의 벽면에 창이 없고 체육도장의 출입구가 인접건물의 출입구와 반대방향이거나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24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정수 및 수납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납부 통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3. 과태료의 부과정수 및 수납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 태 료 처 분 기 준

근거 : 법 제24조 제2항

	위 반 행 위	근 거	과태료금액	비 고
1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아니한 자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300,000원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	법 제24조	200,000	
3	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한 자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200,000	
4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100,000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안전 또는 위생기준의 미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100,000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24조 제1항 제6호	100,000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4조 제1항 제7호	100,000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신고한 내 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자	법 제24조제1항 제8호	100,000	
9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24조제1항 제9호	100,000	
10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4조	200,000	

제 2336 호 경 기 도 (7)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 납부서										제 호 영수필 통지서										제 호 영 수 증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납부 의무자		성명								납부 의무자		성명								납부 의무자		성명								납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관	임	시	적	항	잠	수	목	과	태	관	임	시	적	항	잠	수	목	과	태	관	임	시	적	항	잠	수	목	과	태	관	임	시	적	항	잠	수	목	과	태
세외수입										세외수입										세외수입										세외수입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위의 과태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도(시·군·구)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시·군·구 금고 (인) 귀하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도·시·군·구 금고 (인) 귀하 (납부자용)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 분 내 역	처 분 청		납부통지서번호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귀하				
구비 서류	없음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1월 24일

경기도 규칙 제2043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무원 정원) 제1항 "별표1"중 합계(총괄)의 계난 1,912를 1,915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065를 1,066으로 하며, 6급의 소계 295를 296으로, 지방행정주사 129를 130으로 하고, 7급의 소계 349를 350으로, 지방행정주사보 153을 154로 하며, 8급의 소계 188을 187로, 지방행정서기 67을 66으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674를 676으로 하며, 9등급의 소계 54를 80으로, 운전원 33을 59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545를 521로, 운전원 114를 90으로 한다.

동조 제2항 "별표2" 중 합계(본청)의 계난 1,037을 1,039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691을 692로 하며 6급의 소계 190을 191로, 지방행정주사 88을 89로 하고, 7급의소계 227을 228로, 지방행정주사보 114를 115로 하며, 8급의 소계 112를 111로, 지방행정기 39를 38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304를 305로 하며, 9등급의 소계 24를 39로, 운전원 20을 35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259를 245로, 운전원 31을 17로 하며

지방과의 소계 34를 35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27를 28로 하며, 7급의 소계 16을 17로, 지방행정주사보 15를 16으로 하고

회계과의 기능직난 9등급의 소계 24를 38로, 운전원 20을 34로 하며,

10등급의 소계 61을 47로, 운전원 31을 17로 하고

양정과의 계난 3을 4로 하며 일반직난 다음에 기능직난을 신설하여 소계에 1을, 9등급의 소계에 1을, 운전원 1을 삽입하며

비상대책과의 일반직 6급의 소계 1을 2로, 지방행정주사 1을 2로 하며 8급의 소계 2를 1로, 지방행정서기 2를 1로 한다.

동조 제3항 "별표3" 중 합계(지속기관)의 기능직난 8등급 다음에 9등급난을 신설하여 소계에 5를, 운전원 5를 삽입하고, 10등급의 소계 81을 76으로, 운전원 22를 17로 하며

농촌진흥원의 기능직난 8등급 다음에 9등급난을 신설하여 소계에 5를, 운전원 5를 삽입하며, 10등급의 소계 32를 27로, 운전원 11을 6으로 한다.

동조 제4항 "별표4" 중 합계(사업소)의 계난 653을 654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277을 278로 하며 9등급의 소계 30을 36으로 운전원 13을 19로 하며, 10등급의 소계 205를 200으로, 운전원 61을 56으로 하고

농산물원종장의 기능직난 9등급의 소계 1을 2로, 운전원 1을 2로 하며, 10등급의 소계 9를 8로, 운전원 2를 1로 하며

가축의생시험소의 기능직난 소계 다음에 9등급난을 신설하여 소계에 1을, 운전원 1을 삽입하고, 10등급의 소계 14를 13으로, 운전원 5를 4로 하며, 본소의 기능직난 소계 다음에 9등급난을 신설하여 소계에 1을, 운전원 1을 삽입하며, 10등급의 소계 5를 4로, 운전원 2를 1로 하고

잠종장의 기능직난 6등급 다음에 9등급난을 신설하여 소계에 1을, 운전원 1을 삽입하며, 10등급의 소계 6를 5로, 운전원 2를 1로 하고,

잠업검사소의 기능직난 8등급 다음에 9등급난을 신설하고 소계이 1을, 운전원 1을 삽입하며, 10등급의 소계 6을 5로, 운전원 1을 삭제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직난 9등급의 소계 25를 27로, 운전원 8을 10으로 하며 10등의 소계 59를 57로, 운전원 22를 20으로 하고, 본소의 기능직난 9등급의 소계 25를 27로, 운전원 8을 10으로 하며, 10등급의 소계 47을 45로, 운전원 20을 18로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의 계난 77을 78로 하며 기능직의 소계 19를 20으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19를 20으로, 운전원 7을 8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1월 24일

경기도 규칙 제2044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공무원 정원) 제1항 "별표1"중 합계(총괄)의 일반직난 소계 "1,066"을 "1,067"로 하고, 7급의 소계 "350"을 "351"로, 지방행정주사보 "154"을 "156"으로, 지방전기기사보 "3"을 "2"로 하며, 8급의 지방행정서기 "66"을 "69"로, 지방토목기원 "35"을 "32"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676"을 "675"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521"을 "520"으로, 10등급의

기계원 "32(기계28, 영사4)"를 "31(기계28, 영사3)"로 한다.

동조 제2항 "별표2"중 일반직난 소계 "692"를 "693"으로 하며, 8급의 소계 "111"을 "112"로, 지방행정서기 "38"을 "39"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305"를 "304"로 하며, 10등급 "245"를 "244"로, 10등급의 기계원 "6(기계5, 영사1)"을 "5(기계5)"로 한다.

공보관의 일반직난 소계 "8"을 "9"로 하고, 8급의 소계 "1"을 "2"로, 지방행정서기 "1"을 "2"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5"를 "4"로 하며, 10등급의 소계 "3"을 "2"로, 10등급의 "기계원1(영사1)"를 삭제한다.

동조 제4항 "별표" 중 합계(사업소)의 일반직난 7급 소계 "93"을 "94"로, 지방행정주사보 "24"를 "26"으로, 지방전기기사보 "2"를 "1"로 하며, 8급의 소계 "63"을 "62"로, 지방행정서기 "17"을 "19"로, 지방토목기원 "21"을 "18"로 하며,

공영개발사업단의 일반직난 7급의 소계 "21"을 "22"로, 지방행정주사보 "5"를 "7"로, "지방전기기사보1"를 삭제하고, 8급의 소계 "13"을 "12"로, 지방행정서기 "3"을 "5"로, 지방토목기원 "10"을 "7"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8일 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의 정원은 1990년 12.31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한다.

경기도 훈령 제855호

북부출장소 사무위임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1월 23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북부출장소 사무위임규정중 개정규정

북부출장소 사무위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위임사항) "별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임사무목록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처리부서
기획담당관실	1. 특수지역 개발사업중 지사가 지정하는 도직 영 사업의 현지 추진	개 발 과
	2. 지사가 지시하는 특수 시책사업	"
	3. 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의 확인 평가	"
	4. 접적지역 개발사업 현지 지도감독	"
	5. 기지촌 대책사업 현지 지도감독	"
감사담당관실	1. 북부출장소 관할구역내 감사의 계획과 시행	감 사 과
	2. 북부출장소 관할구역내 시군의 감사업무지도	"
	3. 중앙 및 도 감사의 수감결과 지시의 처리	"
	4. 북부출장소 관할 구역내 도 산하단체,협회, 조합에 대한 감사	"

감 사 과	5. 감사 사항(비위 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 분석 6. 북부출장소 관할 구역내 시군의 회계검사 및 계산증명 감사 7. 망실, 훼손 사고처리 8. 비위예방 대책과 시행 9. 북부출장소 관할구역내 공무원 및 산하단체 직원의 비위조사 보고 10. 주요 정보, 진정 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 및 보고 11. 수시 감사 및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12. 망실, 훼손, 사고조사* 13. 시군 종합감사 지원	감 사 과
총 무 과	1.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포상대상자 조사 및 상선	총 무 과
지 방 과	1. 관할 구역 시군간 5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 교류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구역조정의 승인	지 방 과

	가. 법정리 명칭과 경계 조정	
	나. 행정운영 동 명칭, 관할구역 조정	
	다. 주민조직(통,반)명칭, 관할구역 조정	
	라. 이장 정원조정	
	3. 시·군 구역변경 및 그 폐지 분합에 따른 사무 및 재산의 인계 승인	"
	4.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및 변경승인	"
	5. 행정정보 수집 및 분석	"
	6. 지방여론의 수집 및 분석	"
	7. 공청회 운영	"
세 정 과	1. 도 수입증지	총 무 과
회 계 과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총 무 과
	2. 잡종재산의 대부	"
	3. 중기대여업 주기장 시설 보유 증명서 발급	"
생 활 체 육 과	1.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업 제외)에 관한 사항	총 무 과
	2.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접수 및 지도 감독	"
사 회 과	1. 군 대민 지원사업 조정 협의	보건사회과
	2. 현충탑 및 전적비의 보호유지 관리지도	"
	3. 노사동향 파악	"

	4. 노동쟁의 상황파악 및 지도관리 보고	"
	5. 시·군 노정담당 공무원 교육	"
	6.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	"
	7. 노동단체 지원대책 수립 및 노동관계 행사	"
	지원	"
	8.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및 허가사항 보고	"
	9. 직업소개 종사원 교육	"
	10. 구인·구직의 개척 및 구직의 알선	"
	11. 직업지도	"
	12. 노동시장 조사 및 분석	"
	13.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 및 지원	"
	14. 해외근로자 가족보호	"
	15.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및 관리보고	"
	16. 노동조합 업무지도	"
보 건 과	1. 간호보조원 자격증 교부	총 무 과
	2. 간호보조원, 의류 유사업자 및 안마사의 자	"
	격증 서환 재교부 및 등록대장 정정	
	3. 특정장소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	보건사회과
	4. 한의 마약 제재용 원료마약 사용허가	"
	5. 원료마약 사용허가사항 변경허가	"
	6. 적축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
	7. 적축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
	8. 안마사의 자격증 교부	총 무 과

위 생 과	9. 마약 구입시 용지 교부	"
	10.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 지도감독	보건사회과
	11. 시·군 보건소 지도감독	"
	12. 가족보건 이용 홍보 시술반 운영	"
	1.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증 교부	총 무 과
	2. " 재교부	"
	3. " 서한교부	"
	4. 식품제조업 허가(아이스크림,통·병조림)	보건사회과
	5. 식품제조업 위생검사(아이스크림,통·병조림)	"
	6. " 품목허가(")	"
	7. 식품제조 품목 조건부 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
	8. 식품제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
	9. 식품제조 영업소 상호,주소,성명 변경신고 (")	"
	10. 식품제조 영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11. 식품위생 관리인 선임신고(아이스크림,통·병조림)

"

12. 식품제조 영업허가증 재교부(아이스크림,통·병조림)

"

13.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

14. 무허가 식품업소 지도단속

	15. 환경 접객업소 지도단속	"
	16. 무허가 식품업소 지도단속	"
	17. (삭제)	
	18. 식품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
	19.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 수리	"
	20. 식품제조품목 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
	21. 식품제조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
	22. 식품제조품목 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
	23. 퇴폐·변태업소 지도 단속	"
환경보호담당관	1. 자연보호활동	"
	2. 자연보호 사업추진	"
	3. 자연보호 교육 및 홍보	"
	4.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5. 배출업소 지도단속	"
	6. 대기오염 지도단속	"
	7. 일반 폐기물 처리	"
	8. 오수 분뇨처리	"
	9. 폐기물 불법처리 지도단속	"
가 정 복 지 과	1. 사회복지시설 요보호자 수용	가정복지과
	2. 수용자 동태보고	"
	3. 사후복지시설 운영지도	"

부 녀 복 지 과	4. 노인복지시설 운영지도	"
	5.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
	6. 노인대학(학교) 운영지도	"
	7. 경로주간 행사	"
	8. 경로 우대제도 실시	"
	9. 가출노인 수배 및 보호와 수용	"
	10. 시설아동 보호 및 지원	"
	11.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장사업 추진지도	"
	12. 불우아동 보호 및 지원	"
	13. 소년 소년 가장 세대 및 결함가정 보호와 지원	"
	14. 후원자 결연사업 지원	"
	15. 어린이 놀이터 관리	"
	1. 요 보호 여성 선도사업	"
	2. 여성회관 건립 및 운영지원	"
	3. 가정의례업소 지도 단속	"
	4. 심장병 어린이 돕기 추진	"
	5. 시·군 여성단체 활동 지원	"
	6. 시·군 여성교양 교육지도	"
	7. 미혼모 예방 및 선도사업	"
	8. 저소득 모자세대 자활능력 배양사업	"
	9. 여성자원봉사 인력은행 설치 운영	"

청 소 년 과	10. 시범마을 육성지도	가정복지과
	11. 국민생활 및 가정생활 개선사업 지도	"
	12.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사업 추진지도	"
	13. 동거부부 결혼사업 지도	"
	14. 해외취업자 가족 선도사업 지도	"
	15. 환경미화 및 의식주생활의 합리화 사업지도	"
	16. 재해구호를 위한 민간 자원활동 사업지도	"
	1.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
	2. 청소년 육성계획 조정 및 추진실적보고	"
	3.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지도	"
	4.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지도 감독	"
	5.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지도	"
	6. 청소년 체육문화행사 추진 및 실적보고	"
	7.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추진	"
	8.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	"
	9.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추진 및 기금관리	"
	10. 청소년 후원조직 육성지도 관리	"
	11.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관리	"
	12. 청소년 실태조사	"
	13. 청소년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
	14. 청소년의 육성등을 위한 홍보지도 및 교류	"
	에 관한 사항	

농어촌개발과	1. 농지 불법전용 단속	개 발 과
농 산 과	1. 영농자재 공급(PE필름, 죽골재)	"
	2. 농촌 일손 돕기	"
	3. 농기계 보내기 운동	"
	4. 농기계 사후봉사	"
	5. 비료 생산업 허가	"
	6. 부정비료 유통단속	"
	7. 농경지 이용도 제고	"
	8. 농약 안전사용 지도	"
영 립 과	1. 공유림 영림계획 인가 승인	"
	2. 임산물 반출관리	"
식 수 과	1. 조정사업 지도감독	"
	2. 조림지 사후관리지도	"
	3. 묘목(산림, 가로수, 조경수)생산 지도	"
	4. 가로수 식재 및 관리지도	"
	5. 산림훼손 허가지 지도감독	"
	6. 산림재 토석채취 허가지 지도감독	"
축 정 과	1. 가축인공 수정사 면허증 교부	총 무 과
	2. 가축인공 수정사 면허증·재교부	"
잠 업 특 작 과	1. (제사업, 견방업) 생산시설 개설신고	총 무 과
	2. (제사업, 견방업) 생산시설 준공검사 신청	"
	3. 잠종 생산시설 준공검사	"

	4. 잠전 매매업(주선업)허가	"
	5. 견방업(휴업, 폐업) 신고	"
	6. 제사업 생산시설 증설 허가신청	"
	7. 견방업 생산시설 양도 이전 승인 신청	"
	8. 견방업 생산시설 임대신고	"
	9. 견방업의 생산시설 증설 허가신청	"
	10. 견방업 허가신청	"
	11. 상전조성 및 재상법 개선	"
	12. 상전 비배관리 및 잠업단지 조성	"
	13. 원예작물 지원사업 추진	"
	14. 지역특산물 개발사업	"
지 역 경 제 과	1. 상공회의소 인가	"
상 정 과	1. 계량기 수리점검 (적산식 가솔린 미터)	"
	2. 계량기 사업장의 수리업 승인	"
	3. 부정계량기 단속 및 처벌	"
	4. 계량기 제작(수리)업 허가신청	"
	5. 계량기 제작(수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
	6. 계량기 제작(수리)업 허가증 정정, 승계신고	"
	7. 계량기 제작(수리)업 분공장 설치신고	"
	8. 공장또는 사업장 이전신고	"
	9. 계량기 제작(수리)업 휴업(폐업)신고	"
	10. 계량기사 등의 교체신고	"

관 광 과 교 통 행 정 과	11. 계량기 제작 기호 신고	"
	12. 계량기 자치관리 인정 신청	"
	13. 수출용 원자재 기준 소요량 증명발급 (신설 89. 6.14 훈령 827)	"
	14. 군납업자 등록	"
	15. 군납업자 등록사항 변경	"
	16. 부당경쟁 방지 고발 및 처리	"
	17. 무역업 등록 허가	"
	18. 가스공급 시설 공사계획 승인	"
	19. 실량유표시 상품의 검사	"
	20. 계량기(중유기, LPG충전기)의 검사	"
	1. 관광종사원 자격증 교부·재교부	총 무 과
	1. 관할지역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
	2. (관할지역의 시내, 시외버스, 구역화물, 노선 화물, 특수화물)운송 개시일 연기 또는 기 간의 연장승인	"
	3. 관할 군 지역의 시내버스 운임인가(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4. 운송 약관인가	"
	5. 관할군지역의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운행시간 인가	"
	6.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공동 운수계약 협	"

	정 인가 및 변경인가	"
	7.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	"
	8. 관할 구역의 시내버스사업 개선명령	"
	9.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사업 관리위탁 및 수탁의 허가	"
	10. 관할 구역의 시내버스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
	11.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	"
	12.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자 인 법인 해산 인가	"
	13.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면허취소 처분	개 발 과
	14.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자동차 사용 정지 명령	"
	15.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사업면허 실효확인	"
	16. (비사업용 차량, 사업용 택시, 용달, 시내버 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구역화물, 특수화물) 의 신규 등록	"
	17. (관할 구역의 택시, 용달, 시내버스, 시외버 스, 구역화물, 노선화물, 특수화물) 자동차 등록번호 통지	총 무 과

18. (관할구역의 택시,용달, 시내버스, 구역화물, 노 선화물, 특수화물)자동차 등록번호표의 통지	"
19. (") 자동차 변경등록	"
20. (") 자동차 이전등록	"
21. (") 자동차 이관등록	"
22. (") 자동차 말소등록	"
23. (") 자동차 신규등록용 등본	"
24. (") 자동차등록의 원부등본 발급과 열람	"
25. (") 자동차 압류 등록	"
26. (") 자동차 압류 말소등록	"
27.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변경 등록	"
28. (") 자동차 저당권 설정 이전 등록	"
29. (") 자동차 저당원부 자동차 의 등록 이관	"
30.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말소	"
31. (") 자동차 공동 저당	"
32. 자동차 관계 제증명	"
33. 자동차 차대 및 원동기 각자 지시	"
34. 자동차 신규검사	"
35. 자동차 검사증 재교부	"

36. 자동차 계속 검사	”
37. 자동차 계속 검사 연기허가	”
38. 자동차 임시 검사	”
39. 타관할 관청에 의한 검사	”
40.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지시	”
41. 자동차 검사증 기재사항 변경	”
42.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
43. 자동차 변경사항 기입	”
44. 자동차 검사증 재교부	”
45. 자동차 기관재 사용증명	”
46. 자동차 검사기록부 보관관리 정리	”
47. 자동차 정기점검 기록부 보관관리 정리	”
48. 자동차 정비관리자 채용 및 해임신고 수리 (의정부, 동두천시 소재 제외)	개 발 과
49. 외국인 자동차 등록	총 무 과
50. 외국인 자동차 말소등록	”
51. 시외버스, 구역화물, 노선화물, 특수화물자동차 변경신고	”
52. (관할 구역내) 자가용 자동차 임대허가신청	”
53. 자가용 임대자동차의 반환신고	”
54. (관할 지역내) 자동차 정비사업 면허	개 발 과
55. 동 양도 양수인가 신청	”

주 택 과	56. 동 임원 취임신고	"
	57. 동 정비주임(임·면) 신고	"
	58. (관할 지역내)자동차 정비업체 지도단속	"
	59. 자동차 노후도 검사 신청	"
	1.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개 발 과
	2. 중기조정 면허증 교부	총 무 과
	3. 중기조정 면허증 재교부	"
	4. 중기조정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
	5. 중기조정 면허증 발급사실 확인	"
	6. 중기 신규등록	"
	7. 중기 등록말소	"
	8. 중기 등록사항 변경	"
	9. 중기 저당말소	"
	10. 중기 저당말소	"
	11. 중기 등록원부 등초본 교부	"
	12. 중기 등록원부 열람	"
	13. 중기조정 면허증 갱신 신청	"
	14. 중기조정 면허증 서환 교부	"
	15. 중기 신규 등록 검사	"
	16. 중기등록 번호표 봉인	"
	17.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단속	"

도 로 과	1.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총 무 과
	2. 접도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
지 역 계 획 과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
	2. 토지 거래 신고·허가 현황 및 지가 동향 조사 보고	"
	3. 도시계획구역 위법행위 단속	"
	4.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 도지사 권한 사항	"
도 시 계 획 과	1.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 변경 지도·단속	"
	2.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 민원 처리(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질의조복 등)	"
	3. 도시계획구역내 공공시설 대테승인 및 용도 폐지	"
	4. 도시 통계조사	"
도 시 개 발 담 당 관	1. 국립공원 지정 및 변경승인 신청	"
	2. 국립공원 사업시행 및 관리허가 및 전달	"
	3. 국립공원 개발계획 수립 및 공원사업의 승인 신청	"
	4. 국립공원 점용 사용허가 및 협의 승인	"
	5. 국립공원내 영업시설의 명의변경 및 업종변경	"
	6. 국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
	7. 공원구역내 산림사업 허가	"
	8. 공원구역내 조경사업 승인	"
	9. 공원 특별회계관리	"
소 방 과	1. 방화관리자 수첩교부	총 무 과

경기도 훈령 제856호

경기도 사무 내부위임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1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내부위임규정중 개정규정

제2조 (위임사항) 별표중 체육지원담당관실 및 제1호를 삭제하고 회계과
난 다음에 생활체육과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생활체육과 소관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 기관
1	종합체육시설업 (둘 이상의 신 고체육시설업에 한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등록 ② 체육시설업 등록증 교부 ③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변경 승인 ④ 사업계획 승인 취소 ⑤ 양도,양수 신고수리 ⑥ 법인합병 신고수리 ⑦ 휴,폐업 신고수리 ⑧ 시정명령 ⑨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사업정지명령 ⑩ 시설업자의 청문 ⑪ 이용료 또는 관람료 신고(변경 신고)수리 및 조정 ⑫ 보고, 검사 ⑬ 과태료의 부과 징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 제6조 제1항 동법 제6조 제2항 동법 제7조 제1항 동법 제7조 제2항 동법 제10조 제1항 동법 제10조 제2항 동법 제10조 제3항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 령 제11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12조	시장 군수

2	등록체육시설업 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용료 또는 관람료 신고(변경 신고) 수리 및 조정 ② 이용료 또는 관람료 신고(변경 신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③ 이용료 또는 관람료 신고(변경 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④ 이용료 또는 관람료 신고(변경 신고)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⑤ 이용료 또는 관람료 신고(변경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제2조 제9호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 제24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시장 군수
---	---------------------------	--	---	----------

경기도 훈령 제857호

경기도 시군 담당지도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1월 29일

경기도지사 임사빈

실국장 시·군 지도담당

담당실·국장	담 당 시 · 군
기획관리실장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내 무 국 장	수원시, 오산시, 강화군, 용진군
보건사회국장	성남시, 부천시, 송탄시, 화성군
농 립 국 장	평택시,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식 산 국 장	의정부시,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지역경제국장	양주군, 남양주군, 가평군, 양평군
건 설 국 장	동두천시, 의왕시, 평택군, 안성군
도 시 국 장	과천시, 군포시, 고양군, 김포군
민 방 위 국 장	미금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군

시 군 별	담 당 과 장	시 군 별	담 당 과 장
수 원 시	국민운동지원과장	양 주 군	지역경제과장
성 남 시	사회과장	남양주군	상정과장
의정부시	양정과장	여 주 군	농산과장
안 양 시	감사담당관	평 택 군	도로과장
부 천 시	위생과장	화 성 군	보건과장
광 명 시	전산담당관	파 주 군	수산과장
송 탄 시	환경보호담당관	고 양 군	청소년과장
동두천시	주택과장	광 주 군	소방과장
안 산 시	법무담당관	연 천 군	축정과장
과 천 시	도시계획과장	포 천 군	잠업특작과장
구 리 시	비상대책과장	가 평 군	공업과장
평 택 시	농어촌개발과장	양 평 군	관광과장
미 금 시	문화예술과장	이 천 군	농지과장
오 산 시	세정과장	용 인 군	영림과장
시 흥 시	통계담당관	안 성 군	가정복지과장
군 포 시	도시개발담당관	김 포 군	지역계획과장
의 왕 시	치수과장	강 화 군	회계과장
하 남 시	민방위과장	웅 진 군	민원담당관

경기도 훈령 제858호

경기도 공무국의 여행심사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2월 1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 공무국의 여행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제2항중 총무과장 다음에 "의전담당관"을 삽입하고 간사 "서무과장"을 "국제협력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예규 제591호

경기도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지정 및 변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0년 1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지정 및 변경기준 개정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근무지역 지정"을 "근무지역 지정 또는 근무기관의 지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사 명령) ① ---- "경기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종사

명령을 함에 있어 도지사는 근무지역을 시·군별로 지정한다"를 "경기도에 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정을 함에 있어 도지사는 근무지역을 시·군 또는 기관별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② --- "공중보건의사의 명단과 배치 대상지역을 통보받은 때에는 구체적인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정하여"를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기관을 지정하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근무지역 지정) ① --- "구체적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정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 교육성적, 생활근거지"를 "구체적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 직무교육 성적, 생활근거지"로 한다.

② --- "희망 근무지역에 배치받고자 할 때에는 배치 1주일전까지"로 "희망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이 있을 때에는 근무지정 1주일전까지"로 한다.

③ --- "근무하는 지역의 보건소 관할구역내로 하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지역을"을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시·군 관할구역내로 하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근무지역의 변경) ①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당해 도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경 배치할 수 있

다"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 보건직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당해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② ---- "근무지역"을 "근무기관"으로 한다.

③ ---- "근무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할구역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내에서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④ ---- "근무지역"을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파견근무) ---- "관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에 파견근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도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관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에 2개월의 범위내에서 파견근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거주 의무) ① ----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한"을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② ---- "시장·군수의"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신분증 발급) ---- "근무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배치된"을 "근무

기관에 배치된"으로 한다.

제8조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제 호
신 분 증	
근무기관:	
직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19 . . . - 19 . . .	
위 사실을 증명함.	
19 . . .	
O O 시 장·군 수	

8cm

6 cm

부 칙

이 예규는 1990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현 행

3.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본인 이외에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

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희망 근무지역에 배치받고자 할 때에는 배치 1주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 종합병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제3호의 경우에 한함)

③ 법 제3조 제2항의 "당해 근무지역"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지역의 보건소 관할 구역내로 하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지역의 변경)①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무복무 만료시까지 최초로 지정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당해 도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경 배치할 수 있다.

1. 휴전선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접적지역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2. 육지와 떨어진 도서지역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3.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취약지역으로서 벽지로 인정받은 지역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4. 병원선·교도소·감호소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특수기관에서 1

개 정

3. -----

② ----- "희망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이 있을 때에는 근무지정
1주일전까지" -----

1. -----

2. -----

3. -----

③ -----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시군 관할 구역재로 하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

제5조 (근무지역의 변경)①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
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당해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

2. -----

3. -----

4. -----

현 행

년 이상 근무한 경우

-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변경내용을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된 사유이외에 지역주민과의 불화 또는 의료인력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근무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보건사회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교육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지역 변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 (파견근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재해의 발생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를 관내 다른지역 또는 기관에 파견 근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도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거주 의무) ① 공중보건의사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한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 근무지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응급환자등 발생에 대비하고 사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신분증 발급) 시장·군수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다음 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개 정

② ----- "근무기관" -----

③ -----

-----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내에서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

-----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

제6조 (파견 근무) -----

----- "관내 다른지역 또
는 기관에 2개월의 범위내에서 파견근무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
수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거주 의무) ① ----- (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

②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

제8조 (신분증 발급) ----- "근무기관에 배치된" -----

현 행

발급한다.

사	진	제	호
신 분 증			
근무기관:			
직	명:		
성	명:	(	세)
근무기관 : 19 - 19			
위 사실을 증명함.			
19			
○	○	시 장	· 군 수

6 cm

8cm

개 정

사 진	제 호
신	분 중
근무기관:	
직 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근무기간: 19 - 19	
19	
○ ○	시 장 . 군 수

6 cm

8cm

행 정 사 항

1. 근무지역이라 함은 시·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하며 근무기관이라 함은 근무지역 내의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모자보건센터, 병원선을 말함.
2. 따라서 시·군 지역내에서의 근무기관 지정 및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시장·군수가 행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임.
3. 다만 도단위 기관 및 특수기관(지방공사의료원, 독립정신질환자요양소, 도 이동진료반, OECP차관 지원병원, 적십자병원, 교도소, 경찰대학, 사회단체, 복지시설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직접 근무기관 지정 및 변경을 행할 것임.

경기도 고시제34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송라지구
2. 구 역 : 이천군 대월면 송라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이천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108,746㎡
5. 환 지 내 용 : 송라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1. 23

경 기 도 지 사

고 시

경기도 고시 제35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1 . 23.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 야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지 정 면적	해 제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안성	고잡	기유	산24	임 야 "	Ha 5.60	Ha 0.66	Ha 0.076	농지조성 (과수원)	서울시 도봉 구 번동 434-37번지 안연광	
			"		5.60	2.80	1.187			
			계			3.46	1.263			

2. 해제신청자 : 주소 서울시 도봉구 번동 434-37

성명 : 안연광

경기도 고시 제38호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 1. 31

경기도지사 임 사 빈

식품접객업 영업시간의 제한(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므로써 심야영업으로 인한 퇴폐, 변태, 사치풍락풍조와 과소비 조장을 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종별 제한) 식품접객업 영업시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업 종	영업시간
○ 무도 유흥 접객업(카바레, 디스코장등)	17:00-24:00
○ 대중음식점 (카페등)	05:00-24:00
단, 해장국 판매에 한한 영업	04:00-24:00
○ 일반 유흥 접객업 (요정, 룸싸롱, 스텐드 바, 비어 홀 등)	17:00-24:00
○ 다방 영업	05:00-24:00

제3조 (적용의 제외) 고속도로 및 산업도로 휴게소, 역사내 대중음식점에 한하여 시장, 군수가 주민 편의상 심야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영업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제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때에 시장·군수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 2. 1 부터 시행한다.
2. (폐지) 종전 고시 제391호는 본고시 개정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3. (개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 고시 제391호에 의거 영업시간의 연장 승인을 받은 업소중 고속도로 및 산업도로 휴게소, 역사내의 대중 음식점은 동 고시 제3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는 동 고시 제2조(업종별 제한)의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39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1. 31.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해 제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화성	비봉	양노	160	임야	ha 2.68	ha 0.45	ha 0.30	토속 채취	화성군비봉면양노리 163-1 강대언	
		계				0.45	0.30			

2. 해제신청자 : 주 소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 163-1

성 명 강 대 언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40 호

- 부천 도시계획시설(오정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조성계획을 결정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결정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2. 1.

경 기 도 지 사

- 부천 도시계획시설(오정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조성계획 결정도면 : 도면생략
- 실시계획인가사항
- 승인조건 : 본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않도록 조치 할것이며, 본법외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이행후 사업시행토록 할것. 끝.

실 시 계 획 인 가 사 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천시 중구 오정동 591번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오정 어린이공원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1,423.9㎡(별항)
4. 시행자의 주소, 성명 : 부천시 중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년월일

- 착수예정 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7일 이내

- 준공예정 년월일 : 1990.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소재지 : 부천시 중구 오정동 591번지

- 면 적 : 1,423.9㎡

- 소유자 : 부천시

- 면적 및 규모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	조성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합 계		1423.9	1423.9	40.18	40.18
교통시설	소 계	346.7	346.7		
	도 로	197.7	197.7		
	광 장	149	149		
휴양시설	등의자외 2종				
운동시설	철 봉	144.51	144.51		
유흥시설	조합놀이대 외2종	244.9	244.9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40.18	40.18	40.18	40.18
조경시설	잔 디 수목식재	647.61	647.61		

고 시

시흥시 고시 제 1 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시흥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1. 19

시 흥 시 장

1. 사업명 : 삼보아파트 신축 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성 명 : 삼보주택개발(주) 대표이사 성 백 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44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75의 8필지

•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5,236.94㎡

건축면적 - 4,295.30㎡

연 면 적 - 27,269.01㎡

• 규모 : 지하1층 지상 6층 192세대

4. 사업시행기간 : 90.1.20 - 90. 12. 30

5.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o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제 33조

제4항에 의한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변경

o 변경사항

구분	종별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시점	종점	비고
기 정	소로	2	152	m 8	m 507	m 4,056	중2-107	소2-159	
변 경	소로	2	152	8	183	1,464	중2-107	소2-155	
기 정	소로	1	39	10	300	3,000	중2-107	소1- 37	
변 경	소로	1	39	10	183	1,830	중2-107	소2-155	
기 정	소로	2	152	8	507	4,056	중2-107	소2-159	
변 경	소로	2	187	8	66	528	소2-188	소2-158	
신 설	소로	2	188	8	106	848	소52-155	소1- 37	

고 시

포천군 고시 제2호

소홀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포천군청 건설과 및 소홀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년 1월 15일

포천군수

1. 허가내용

가. 위 치 :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642-2번지의 4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동남중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 명 칭 : 소로1류8호선

다.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동인학원 이사장 목문찬

라. 면 적

구 분	연 장	폭	면 적	비 고
결정	685m	10m	6,850㎡	절개지면적포함
시행	685m	10m	9,027㎡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 1990. 1. 1 - 1990. 3. 31

토 지 조 서

순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비 고
1	492-2	도	185	46	건설부
2	492-8	도	37	6	건설부
3	641-4(가)	구	10,397	45	국
4	641-4(나)	구	10,397	88	국
5	642-2(A)	도	8,486	845	건설부
6	642-2(B)	도	8,486	80	건설부

7	498-1	도	43	43	포천군
	소 계		19,148	1,153	
8	492-4	도	436	436	박영호외 10인
9	492-3	도	89	89	박영호외 10인
10	500-2	도	23	23	최 용 규
11	499-3	도	73	73	김 한 국
12	510-19	도	43	23	김 재 창
13	510-18	도	36	36	주 기 태
14	510-17	도	20	20	주 기 태
15	498-2	도	13	13	김 교 성
16	498-9	도	142	122	김 은 목
17	498-11	도	53	34	이 경 주
18	498-4	도	69	59	노 정 모
19	498-7	도	43	43	전 봉 준
20	510-21	도	23	23	노 정 모
21	499-4	도	40	40	김 한 국
22	509-3	도	73	73	노 동 식
	소 계		1,176	1,107	
23	492-1	전	938	289.5	박용모외 10인
24	492-5	전	294	73	박 진 오
25	492-7	답	212	95	박 진 오
26	499-1	전	2,711	795	김 재 성

27	498-16	전	760	221	김 범 순
28	498-15	전	221	68	이 은 주
29	498-14	전	159	50	임 상 순
30	498-13	전	536	183	전 원 순
31	498-12	전	486	262	김 은 목
32	498-3	전	248	103	전 봉 준
33	513	전	988	39	김 은 목
34	516-2	전	5,124	724	서 충 석
35	500-7	전	600	51	최 용 규
36	498-12	전	188	72	이 봉 주
	소 계		13,465	3,025.50	
37	514-1	대	522	91	김 종 현
38	58-6	임	3,923	354	김장화외2인
39	58-19	임	2,009	102	지기수외2인
40	58-22	임	1,613	1,613	김장화외2인
41	58-23	임	15,489	1,119	서 충 석
42	58-24	임	16,797	267	동 연 학 원
43	58-26	임	8,304	96	서 충 석
	소 계		48,657	3,742	
	총 계		82,446	9,027.50	

공 고

경기도 공고 제20호

비료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 생산업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0. 1. 22.

경기도지사

업 체 명	비 종 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경기화학공업 (주) (부천시옥길동 산103)	o 제2종복비 • 11-10-10 (원예용) • 8-14-12 (대두용) • 13-10-11 (전작용고형) • 8-20-7 (초지용) • 14-10-12 (초지관리용) • 4-19-14 (땅콩용)	수용성붕소 0.3	구용성붕소0.3	수용성붕소 0.3	구용성붕소0.3	품질관리의 효율화
		"	0.3	"	0.3	
		"	0.3	"	0.3	
		"	0.2	"	0.2	
		"	0.2	"	0.2	
		"	0.5	"	0.5	

• 15-10-10 (수도용)	수용성붕소0.2	구용성붕소0.2
• 7-20-7 (마늘용)	" 0.2	" 0.2
• 10-16-11 (고추용)	" 0.3	" 0.3
• 15-0-15 (수도추비용)	" 0.2	" 0.2
• 14-6-9 (뽕나무용)	" 0.2	" 0.2
• 8-13-13 (옥수수.딸기용)	" 0.3	" 0.3
• 7-15-12 (양파용)	" 0.3	" 0.3
• 19-11-5 (숙답간척지수도)	" 0.3	" 0.3
• 13-0-13 (마늘.고추추비)	" 0.3	" 0.3
• 12-10-9 (사과기비용)	" 0.2	" 0.2
• 12-10-10 (단옥수수용)	" 0.2	" 0.2

• 10-5-11 (참깨기비용)	" 0.2	" 0.2	
• 9-9-9 (잔디기비용)	" 0.2	" 0.2	
• 9-18-7 (마늘기비용)	" 0.2	" 0.2	
• 7-7-18 (고구마기비용)	" 0.2	" 0.2	
• 9-14-12 (맥주맥기비용)	" 0.2	" 0.2	
○ 제3종 복비			
• 11-8-8 (복숭아비료)	" 0.2	" 0.2	
• 12-10-8 (배비료)	" 0.2	" 0.2	
• 10-9-10 (단감비료)	" 0.2	" 0.2	
• 11-10-8 (밤비료)	" 0.3	" 0.3	

경기도 공고 제 23 호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 말소 공고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 중 원에 의거 등록 말소 처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25.

경기도지사

아 래

등록 번호	등록 일자	등록 구분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 록 말소일	사 유
'87 -20	'87. 3.28	주택 건설	임당건설 (주)	정범수	의정부시 의정부동 98-2	'90. 1.25	• 원예의합

경기도 공고 제 27 호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 말소 공고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 중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
거 등록말소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30.

경기도지사

사업명	사 업 위 치		사업개요	사 업 시행자
	시 점	종 점		
o 이천-곤 지암간도로 확장및포장 공사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신하리125(답)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153(답)	도로확장및 포장: L= 4.8km	서울지방 국토관리 청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광리496-5(도)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광리386-9(답)	도로확장및 포장: L=0.42km	
o 양평-설 악간도로개 수및포장공 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628(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320-8(답)	도로개수및 포장: L=1.019km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59-2(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408-2(도)	도로개수및 포장: L=2.379km	
o 용문우회 도로개설및 포장공사	경기도 양평군 용문리 다문리1038(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386(답)	도로개설및 포장: L=1.42km	서울지방 국토관리 청
o 용인우회 도로포장 공사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68-5(답)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마평리533-8(답)	도로확장및 포장: L=0.872km	"

o 덕평-양평 간도로개량및 포장공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229-1(답)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85(답)	도로개량및 포장: L=1.6km	"
o I.B.R.6차 차 관 도 로 사 업47 공 구 (신 갈-용인)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34-3(답)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12-2(도)	도로확장및 포장: L=2.86km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리252-1(답)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376-4(도)	도확장및 포장: L=0.98km	
o 곤지암-광 주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187-5(임)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삼리93-4(도)	도로확장및 포장: L=2km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쌍령리495-1(도)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27-38(전)	도로확장및 포장: L=0.842km	

1. 공 램 기 간 : 공고일로부터14일간

2. 공 램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과((02)752-8117)

3. 편입토지조서 : 공람장소에 비치

1990.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아 래

등록 번호	등록 일자	등록 구분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 록 말소일	사유	근거
89- 158	'89. 4.27	주택 건설	(주) 세림건설	유호성	안산시 고잔 동 540- 8번지	'90 1.30	- 고용기술자 - 갑근세 - 미제출 - 대표자변경 - 신고미이행 - 청문불응	- 주택건설 - 촉진법 - 제7조

끝.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28 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
하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31.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제조구분	소재지
아성전자	박표일	3-11-70	전자용용기계기구류	부천 중구 삼정동 18-25
보양전자	김규정	3-5-100	소형단상 변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류	부천 중구 삼정 216-9
		3-12-59	교류용 전기기계 기구류	

끝.

경기도 공고 제 29 호

하천의 금지구역 일시 해제 공고

하천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을 아래와 같이 일시 해제 하였기 공고함.

1. 위 치 : 의정부 시내 중탕천 전 구간
2. 일시해제구간 : 8.5km
3. 일시해제기간 : '90. 2월 - '92. 12월
4. 일시해제목적 : 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토사 제거

1990. 2. 1

경기도지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공고제 5 호

도시 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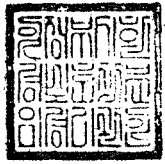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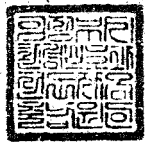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및 동시행령 제27조의 2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 관계서류를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공고 제 10 호

공 고

의정부시 공인조례 제 4 조 및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개각 및 신조사용을 공고합니다.

1. 사용개시일 : 1990. 1. 16 (09:00)
2. 공 인 명 : 아래참조
3. 개각 및 신조사유 : 직제변경 및 신설
4. 개각 및 신조인영

구분		분 입 경 리 관 인	전 도 자 금 출 납 원 인
위 생 과	신 조		
	신 조 인 영		
환 경 보 호 과	폐 기 인 영		

1990. 1. 16.

의 정 부 시 장

부천시공고 제11호

공인사용및폐기인공고

부천시 공연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년 2 월 1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공인신규사용 및 폐기인
2. 사용 및 폐기일자 : 1990년 2월 1일
3. 공고인영

(신규사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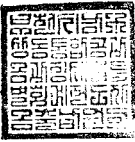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통합공과 금과징사업특별 회계관리자인		부천시통합공과 금과징사업특별 회계기업출납원 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남구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기업출납 원인		부천시중구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기업출 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수입원인		부천시 남구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수입 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자산출납원인		부천시 남구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자산출 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중구통합 공과금과징사업특 별회계자산출납 원인		부천시통합공과 금과징사업특별 회계지출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남구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지출 원인		부천시중구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지출 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인		부천시남구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세입세 출의 현금출납 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현금출납원인		부천시 남구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 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심곡본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남구심곡 1 동 통합공과금과징 사업특별회계전 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소사 1 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남구소사 2 동 통합공과금과징 사업특별회계전 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소사 3 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남구법박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 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역곡 1 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남구역곡 2 동 통합공과금과징 사업특별회계전 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역곡 3 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남구과 안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 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중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남구송내 1 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송내 2 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남구상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중구심곡 2 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중구심곡 3 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중구원미 1 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중구춘의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중구성곡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중구원종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중구고강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중구오정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중구신흥1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중구신흥2동 통합공과금과징 사업특별회계전 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중구도당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중구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 계수입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공업과전도자금 출납원인		부천시 중구원미 2 동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폐 기 인) 부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 계급수과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인		부천시 중구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고

오산시공고 제3호

오산시공인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의거 신조사용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18.

오 산 시 장

다 음

- 사용개시일 : '90. 1. 18
- 신조사용인

오산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분임경리관인



오산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전도자금출납원인



오산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인



공 고

안성군공고 제 90-10 호

안성군공인조례 제 6 조제 1 항 규정에 의거 신조한 수입증지제기
용 공인을 동조 제 9 조 1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가. 사 용 일 : 1990. 1. 22 . 09:00

나. 공인명 및 인영

민원사무전용안성군수인

민원사무전용안성읍장인



1990. 1. 20.

안 성 군 수

공 고

이천군공고 제 8 호

공인개각 및 폐기

이천군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공인사용 및 구공인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2. 1.

이 천 군 수

다 음

1. 공인폐지 및 신공인 사용일시 : 90.2.1. 00:00

2. 신고인 및 폐기인의 인영

○ 신규사용인

공 인 명	공 인 의 모 형
이 천 군 수 인 (민원사무전용)	
이 천 군 계 인 (민원사무전용)	
장 호 원 읍 장 인	

○ 폐 기 인

공 인 명

공 인 의 모 형

이 천 군 수 인
(민원사무전용)



이 천 군 계 인
(민원사무전용)



장 호 원 읍 장 인



제 2337 호 1990. 2. 1 ~ 2.15 경기도공보관실발행	경기도보	경기도청종합발간실 인 쇄
--	-------------	----------------------

(훈 령)

경기도 제858호 경기도 공무원의 여행심사위원회 규정중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895호 경기도 경찰행정 감사규정중 개정규정

제860호 경기도 불법행위 기동단속반 운영규정중 개정규정

(조 례)

경기도 조례 제2003호 경기도 팔당대교 건설사업 2차 지방채 조례

제2004호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

제2005호 "

(규 칙)

경기도 규칙 제2045호 경기도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제2046호 경기도 담당관 및 과 규칙중 개정규칙

제2047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제2048호 경기도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제2049호 경기도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제2050호 경기도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제2051호 경기도 팔당대교 건설사업 2차 지방조례채 조례시행규칙

제2052호 "

제2053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2054호 경기도 사무위임중 규칙중 개정규칙

(고 시)

경기도 고시 제41호 환지계획 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고시

제42호 " "

제43호 " "

제44호 사료성분 등록사항 고시

제45호 "

제46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제47호 안양 도시계획 제8지구(2,3)공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계

획 변경결정 및 시행계획과 환지계획 변경인가 고시

제51호 환지계획 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고시

제52호 " "

제53호 " "

제54호 " "

제55호 " "

제56호 90년도 골재채취 하천 사용료 고시

제57호 환지계획 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고시

제58호 " "

제59호 " "

제60호 도시가스 사용 및 건축물 고시

제63호 사방지정지 해제 고시

김포군 고시 제 3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하남시 고시 제22호 신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교통과장)사업 시행허가
고시

광주군 고시 제 6호 경안 " (동성학원) "

(공 고)

경기도 공고 제30호 K·S표시 허가취소 공고

제31호 안양 도시계획 제8지구(2·3공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
획변경결정 및 시행계획과 환지계획 변경인가 공고

제33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 공고

제34호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 공고

제 35호 " 기간 연장 허가 공고

제36호 어장 개발계획 확정

제38호 K·S표시허가 취소

제47호 공인신조 공고

제49호 "

안양시 공고 제25호 "

화성군 공고 제 6호 "

광주군 공고 제 8호 "

용인군 공고 제16호 "

용인군 공고 제22호 용인 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로 1류 1호선, 중로 1류
4호선)변경결정 공람 공고

경기도 훈령 제858호

경기도 공무국의여행심사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2월 1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 공무국의여행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구성) 제2항중 총무 과장 다음에 "의전 담당관"을 삽입하고 간사 "서무계장"을 "국제협력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과 6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 으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① ----- ----- -----
② 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위 원은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총 무과장, 지방과장이 되며 간사는 서무계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위 원은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총 무과장, 의전담당관, 지방과장이 되며 간사는 국제협력계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기획담당 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

경기도 경찰행정 감사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2월 5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 훈령 제859호

경기도 경찰행정 감사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 경찰행정 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제4조 및 제11조를 개정한다.

제4조 (피감사기관)중 전투경찰대 다음에 "고속도로 순찰대·면허시험장"을 삽입하고,

제11조 (감사관 편성)④항중 수사감사관을 "수사·형사감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 구 대 비 표

현행	개정
제4조(피감사기관)감사대상 기관은 경찰서,지서, 파출소,출장소,기동대, 경비대,전투경찰대로 한다.	제4조(피감사기관)감사대상 기관은 경찰서,지서,파출소,출장소,기동대, 경비대,전투경찰대,고속도로순찰대, 면허시험장으로 한다.
제11조(감사단 편성)④ 감사관은 경찰국은 경위급으로,경찰서는 계장급으로 경력,자질,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업무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하되 이를 경무감사관,보안·교통감사관,경비·작전 통신감사관,수사감사관,정보·대공감사관,회계·장비감사관으로	제11조(감사단 편성)④ 감사관은 경찰국----- ----- ----- ----- ----- ----- -----수사·형사감사관,----- -----으로

경기도 훈령 제860호

경기도 불법행위 기동단속반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2월 12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 불법행위 기동단속반 운영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 불법행위 기동단속반 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②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기동단속반은 총지휘,부지휘,기동단속대,대대,중대로 편성하고,총지휘는 경기도 도시국장,부지휘는 경기도 지역계획과장,기동단속대장은 경기도 지도단속계장,대대장은 경기도 지도단속계 소속 청원경찰(대대장 요원)로 편성하거나 또는 시·군 소속 청원경찰중에서 유능한 자를 지정 편성하고 중대장은 시·군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자를 지정 편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 팔당대교건설사업 2차 지방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2월 6일

경기도 조례 제2003호

경기도 팔당대교 건설사업 2차 지방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팔당대교 건설에 따른 사업비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교부 공채발행에 관리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의 명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의 명칭은 경기도 팔당대교 건설사업 2차 교부 공채(이하 "공채"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공채의 발행한도) 공채의 발행한도 금액은 6,822,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공채의 발행방법) ① 공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공채증권은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다만,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매로써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권면 금액은 지급공사비 범위내로 한다.

제5조 (공채의 발행가액) 공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제6조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① 공채는 팔당대교 건설공사 도급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공채는 공사의 선금급, 기성불 또는 준공불의 지급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제7조 (공채증권 발행) 공채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발행의 목적
4. 수취인 및 공사명
5. 원리금의 상환 방법 및 시기

제8조 (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 ① 공채의 원금상환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일시에 상환한다.

②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이율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단리계산하고 원금상환시 지급한다.

③ 상환만기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까지로 하며 상환만기일이 초과된 기일에 대한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제한) ① 발행된 공채증권은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되었거나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분실, 도난, 멸실, 훼손된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된 공채는 법원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원리금 청구권의 시효) 공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2월 12일

경기도 조례 제2004호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공포일 전일까지 도지사가 한 처분은 시장이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입기관
통계담당관실				
1	상주인구 조사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상주인구조사 지도원 및 조사원 임명 ② 조사원의 훈련	통계법 제6조 9 경기도 상주인구조사 시행규칙 제10조	시장군수
지 방 과				
1	행정서사에 대한 다 음의 권한	① 행정서사업 허가 ② 동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③ 동 허가의 취소 ④ 동 업무의 정지명령 ⑤ 동사무소의 이전 휴업 폐업신고 ⑥ 행정서사업 재개업 신고 ⑦ 행정서사회 보고사항 처리 ⑧ 행정서사 사망신고 처리	행정서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 동법제8조 동령제22조 동법제9조 동령제22조 동법제16조 제1항 동법제1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시장군수
2	소개영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요금의 기준한도의 처리 ② 소개영업의 정지처분 ③ 영업장부 비치 지정	소개영업법제4조 제1항 동법제6조 동법제7조 제1항	
3	(삭제 88.12. 1 조례1827)			
4	시군 실과장 보직 전보권			
5	전공 기념물 관리		(경기도 예규 제297호) 행정지시	
6	행정기구 승인에 관 한 사항(신설88.12.1 조례 1827)	① 시구의 계의 설치·폐지 조정권 (사업소,출장소 포함) ② 읍·면의 계 이하의 기구의 설 치,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지방자치법 지102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인구50만 이 상 의 시장 시장군수

7	지방공무원 정원책 정에 관한 사항(6급 이하) (신설 89. 5.11 조례1905)	③ 시군구의 과내 기능조정의 승 인(사업소,출장소 포함) ④ 읍의 과내 및 과간 기능 조정 의 승인 ⑤ 시군사업소의 과간의 기능 조 정의 승인 ① 기준정원 범위내에서의 정원 상인사무(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② 6급이하 기준정원의 직렬조정 및 감축 ③ 기관간(본청,사무소,구청,출장 소,동)정원조정 ④ 행정직공무원 정원의 기술직공 무원 정원으로의 직렬조정승인 ⑤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고용직공 무원으로의 조정 승인 ⑥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동일등급 내 직렬조정 승인 ⑦ 고용직공무원 정원의 동일직종 내 직명조정 승인 ⑧ 상급기관 정원의 하급기관 정 원으로 이관조정 승인 ⑨ 읍면동 상호간 정원조정 승인 ⑩ 시군 본청의 실국과간의 정원 조정의 승인 ⑪ 시군사업소 상호간의 정원조정 의 승인 ⑫ 시군출장소,사업소,읍의 실과간 의 정원조정의 승인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 무원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6항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03조	시장군수 인구 50만 이상의시장 시장군수
---	--	---	---	---------------------------------

세 정 과			
1	지방세법에 의한 다 음의 권한	① 징수유예 신청 ② 납기한의 연장 ③ 동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 제26조의 2 동법 제29조
회 계 과			
1	도유 잠종재산 대부 (신설 85. 2.14 조례1521)		지방재정법 제57조의 2, 경기도도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2	도유재산관리에 관 한 권한(신설85.8.6 조례1521)	①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처리 ② 도유 잠종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지방재정법 제57조의 11
지 적 과			
1	지적측량 검사		지적사무처리지침 제91조, 제93조
2	지적측량 대행법인 의 지도·감독		동 지침 109조
생 활 체 육 과			
1	직장운동경기부 설 치 폐지·변경보고 및 지도감독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
2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고 체육시설업에 한함)	①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리 ② 체육도장과 인접한 영업소 설 치에 대한 사전 협의 ③ 양도·양수 신고 수리 ④ 법인 합병 신고 수리 ⑤ 휴·폐업 신고 수리 ⑥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⑦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사업정 지명령 ⑧ 이용료 또는 관람료 신고(변경 신고)수리 및 조정 ⑨ 보고, 검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제9조 2항 동법 제10조 1항 동법 제10조 2항 동법 제10조 3항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 제20조

		⑩ 과태료의 부과,징수 ⑪ 시설업자의 청문 ⑫ 체육시설업의 신고필증 교부 및 재교부 ⑬ 신고사항 변경 수리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제8조 2항 "	시장군수
문 화 예 술 과				
1	지방문화재의 가 지정		문화재보호법제16조 동법시행령제20조제1항 제1호	시장군수
2	지방문화재 관리를 위한 경기도지정문 화재 보호조례 제29 조에 의하여 제출하 는 각종 신고처리		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3	지방문화재 관리단 체 지정		문화재보호법제54조의2 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20조	
4	공연장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설치 허가 ② 증·개축 대수선 주요변경 개축 허가 ③ 허가사항 변경허가 ④ 준공검사 ⑤ 양수신고 ⑥ 시설검사 및 명령 ⑦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⑧ 폐장신고 ⑨ 허가증 교부, 재교부 ⑩ 공연장 경영대리인 신고 ⑪ 인검증 발급	공연법제7조 제1항 공연법제7조 제2항 공연법제7조 제4항 동법제7조의 2 동법제7조 제5항 동법제11조 제1항 동법제12조 동법제13조 동시행령 제12조 동시행령 제9조 동시행령 제17조 동법 제18조	

사 회 과			
1	사회복지시설 수혜 자로 부터의 비용수 납의 승인	① 전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비용의 수납 ② 장애인시설 이용자 비용 수납	사회복지법제13조의 2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2조 제2항
2	사회복지시설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시설 설치허가 ② 허가취소,정지 개선명령 ③ 법인의 업무감독 ④ 동 시설의 폐지운영 정지 ⑤ 허가증 교부 ⑥ 시설장 변경허가 ⑦ 명칭 변경허가 ⑧ 사업목적 변경허가 ⑨ 소재지 변경허가 ⑩ 법인 임원의 취임인가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2조 동 규칙 제11조
3	재해비축물자 관리		재해구호법제11조제1항
4	행여사망자 처리		행정 지시
5	노동조합에 관한 다 음의 권한 (신설86. 4. 4 조례1601)	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② 노동조합의 변경신고 ③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④ 규약의 변경·보완명령 및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신설88.10.29 조례1816) ⑤ 임시총회 소집 ⑥ 자료조사 ⑦ 단체협약 ⑧ 노동쟁의 신고수리	노동조합법 제13조 노동조합법 제15조 노동조합법 제31조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제21조 노동조합법제26조 제3항 노동조합법 제30조 노동조합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6	보장구조제·수리업 허가 및 사업정지, 허가취소 (신설88.10.29 조례 1816)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4조 및 제25조

7	의료보호시설의지정 (신설89. 2.10 조례1875호)		의료보호법 제7조	구가설치된 시의 시장
8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에 관한 다음의 권 한(신설89. 3.31 조례1893)	①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설치허가 ②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폐지 ③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유지 ④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지도감독 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허가취소	심신장애자복지법제16조 제2항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시장군수
9	심신장애자 복지지 도원의 임용등	① 입면사항 ② 위촉 또는 해촉		
보 건 과				
1	전염병에 대한 강제 적 건강진단 명령		전염병예방법 제9조	시장군수
2	제1종 전염병 예방 상 필요한 다음의 권한	① 소독설치 명령권 ② 교통차단 ③ 다수인의 집합 또는 제한 ④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색 실시 ⑤ 음식물의 판매검수 기타 조치 ⑥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 건의 소지이동 제한 또는 금지 ⑦ 동 건물의 폐기소각 기타 조치 ⑧ 의사배치 또는 예방시설명령권 ⑨ 소독 기타 필요한 명령 ⑩ 상수하수 우물등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금지 ⑪ 쥐 곤충 기타 전염병 매개 동 물의 구용 또는 구제실시의 설 치 명령권 ⑫ 어로수용 우물사용 제한 또는 금지	전염병제23조 제2항 전염병제39조제1항제1호 동항 제2호 동항 제3호 동항 제4호 동항 제5호 " 동항 제6호 동항 제7호 동호 동항 제8호 동항 제9호	

		⑬ 전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의 포획 또는 생식의 금지 ⑭ 전염병 유행기간중의 의료업자의 동원 ⑮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명령권 ⑯ 콜레라 페스트의 전염병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지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기간 격리시키는 권한	동항 제10호 동항 제11호 동항 제12호 동항 제13호	시장군수
3	제1종 전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동법 제42조	
4	성병에 대한 건강 진단 실시		동법 제8조 제2항	
5	결핵예방에 대한 다 음의 권한	① 결핵접종의 유예신고 ② 예방접종 증명서의 교부	결핵예방법제17조제1항	
6	의료기관에 대한 다 음의 권한	① 의원의 개설신고 ②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신고 ③ 휴폐업 재개업 신고 ④ 의료감시원 임용 ⑤ 의료기관 의료인 감독 ⑥ 의료기관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시정명령 ⑦ 개설장소 이전신고 및 변경신고 ⑧ 의료기관의 구조 및 시설 변경 신고 ⑨ 조산소의 지도의사 신고 ⑩ 의료기관의 개설신고필증 교부	의료법 제30조 제3항 동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동법 제54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시행규칙제22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⑪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취소 의료기관의 폐쇄처분 ⑫ 부정의료업자 단속 ⑬ 의료축적 감독 ⑭ 병원개설허가(치과병원 및 한 방병원) (개정86.10.23 조례1622) ⑮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⑯ 안마사의 지도감독 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허 가 및 지도감독 사무	동법 제51조 제3항 동법 제51조 동법 제62조 의료법 제30조 의료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31조 제4항 제 4조 약사법제16조 제2항 " 동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69조 동법 제68조 동규칙 제5조 동규칙 제9조 동규칙 제10조 " 동법 제21조 제2항 보사부훈령 제261호 " 동규칙 제12조의 5 동규칙 제12조의 6	시장군수 인구 50만 이상의시장 시장군수
7	약국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약국 개설 등록 ② 등록사항 변경등록 ③ 관리약사 승인변경 승인 ④ 약국등록증 교부 재교부 ⑤ 약국의 폐업 휴폐업 재개업 신고 ⑥ 등록취소 영업정지 ⑦ 개설자에 대한 변경명령 ⑧ 등록대장 비치 ⑨ 약국제제업무의 폐지신고 ⑩ 약국제품의 대장비치 ⑪ 약국제제신고증 교부		
8	약국 이외에서의 조제승인			
9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의약품등의 검인 ② 동 제조업무 폐지신고 ③ 영업소 등록 ④ 동 등록대장 비치 및 등록증 교부		

10	의약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허가사항 변경허가 ② 동 영업소의 이전허가 ③ 도매상 폐업등 신고 (신설86.4.4 조례1601)	약사법 제12조의 제3항 동법제42조 제1항 약사법제35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4항	시장군수
11	약국개설자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판매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판매업 등록(약국제외) ② 변경등록(약국제외) ③ 등록증 교부등록 대장비치 (약국제외) ④ 보고와 감사 ⑤ 영업폐지 명령 ⑥ 영업시설 개수 사용금지명령	약사법 제42조 제1항 동조 제2항 동규칙 제30조 동법 제64조 제1항 동법 제65조 제1항 동법 제67조 동법제64조,제65조	
12	불량약품 폐지처분 및 부정업자 단속			
13	의약사 감시원증 발급		동법 제70조	
14	약국판매업 영업소 한약업소의 등록 또는 허가증인 개시		동법 제71조의 2 동규칙 제30조	
15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88.3.21 조례 1754)	① 등록·허가 ② 등록·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③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④ 시설개수 사용금지 명령 ⑤ 용기포장 교체명령 ⑥ 등록·허가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및 독극물의 수거 ⑦ 등록·허가증 교부대장 비치 ⑧ 판매업 이전등록 및 관리자 변경신고 ⑨ 등록·허가사항 변경등록 및 허가 ⑩ 등록·허가증 재교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12조,13조 동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2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제7조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24조의 2	

16	향정신성 의약품	① 지정 및 변경지정 ② 동 지정서 교부 재교부 ③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④ 영업정지 지정취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5조	시장군수
17	의약품 취급자의 업무소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권한	① 시설의 검사 ② 보고 성취	동법 제32조 제1항 동법 제33조	
18	불량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명령		동법 제34조 제1항	
19	소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무 지정의 갱신		동법 제27조	
20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무 지정의 갱신		동법 제8조	
21	향정신성의약품 양도 양수 승인		동법시행규칙 제28조	
22	물수 의약품 관리		동법 제42조	
23	향정신성의약품 약품감시원 임명		동법 제32조제	
24	마약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약취급 면허 ② 면허증 교부명령 작성교부 ③ 마약취급업무 폐지신고 ④ 사망 무능자가 된때의 신고 ⑤ 면허취소 업무정지 ⑥ 명부의 등록말소 ⑦ 사고마약 보고처리 ⑧ 자격상실자 마약 양도양수신고 ⑨ 보고명령	마약법 제7조 마약법 제8조 제1항 마약법 제10조 제2항 동조 제3항 동법 제53조 제1항 동법 제11조 제1항 동법 제15조 동법 제16조 제1항 동법 제52조	
25	마약에 관련된 다음의 권한	① 마약중독자의 단속과 조치 ② 마약 감시(임검 수거) ③ 부정마약의 압류 또는 처분	동법 제50조 제1항 동법 제54조 동법 제54조	

		④ 마약감시원 임명	동법 제55조	시장군수
26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	① 취급자의 지정	약사법 부칙 제6조	
		② 동 대리인 신고	"	
		③ 취급자 대리인 변경신고	"	
27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유사업자 시술소의 개설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② 시술소의 이전신고	동 22조 제2항	
		③ 조사와 보고사항 처리	"	
		④ 의료유사업자 시술행위의 정지 처분 및 단속	의료법 제51조	
		⑤ 동 시술인가증 대장등록 말소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	
		⑥ 동 설비의 개대체 명령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⑦ 동 시술소 폐지신고	"	
		⑧ 의료유사업자 지도·감독	의료법 제60조	
28	독·극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독·극물 감시원 임명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 제27조	
		② 독·극물 감시원증 발급	"	
			시행규칙 제23조	
29	한약업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한약업사 허가	약사법 제35조, 37조	
		② 영업소 이전	약사법시행규칙 제21, 22, 24조	
		③ 허가증 교부		
30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83.12.30 개정)	① 의약품 도매상 허가	약사법 제35조, 37조	
		② 허가사항 변경허가	약사법 제35조	
		③ 관리약사 승인전경 승인	약사법 제37조	
		④ 허가증 교부	약사법시행규칙 제26조	
31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에 관한 권한 (신설 85. 8. 6 조제 1544)	① 공사립 병원을 격리병사 또는 진료소로 대용 지정하는 권한	전염병예방법 제25조	
32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 (신설 86. 4. 4 조제1601)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제7조	

33	공중보건의 복무감독 및 근무지 이탈 허가(신설88.10.29 조례1816)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3조	시장군수
34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농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인구 50만 이상의시장
35	소독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독업허가 및 변경허가(신설88.10.29 조례1816) ② 소독업 영업의 휴업,재개업 폐업신고 수리(신설88.11.30 조례1825) ③ 소독업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④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동법 제40조의 4 동법 제40조의 8 소독관리업무처리규정(보사부훈령)제6조	시장군수
36	의료보호시설(제1차 진료기관)지정 및 지정취소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위 생 과				
1	식품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식육제품제조업)에 관한 사무	① 허가 및 변경허가 ② 동 사무의 시정명령 ③ 폐기처분 ④ 시설의 개수명령 ⑤ 허가취소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55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58조	인구 50만 이상의시장
2	식품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두부류 제조영업허가 및 품목허가 ② 어육연제품 영업허가 및 품목허가 ③ 동 영업에 대한 임점·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허가의 취소등) ④ 식품·첨가물·용기·기구 및 포장에 의한 사망자의 사체 해부	식품위생법 제22조 " 동법 제17조, 제55조 내지 제58조 동법 제68조	시장군수
2	(삭제89. 5.11 조례1905)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 의 (신 설 88.10.29 조례1816)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시장·군수
환경보호담당관				
1	산업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산업폐기물처리 신고수리 ② (삭제89. 5.11 조례1905) ③ 산업폐기물 배출업자 신고수리 (신설 89. 5.11조례1905) ④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 고 수리 및 관리 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시 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21조 제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 2항 동법 제17조 제4항	시장군수 인구 50만 이상의시장
가 정 복 지 과				
1	의례식장등(결혼예 식장·장례식장·장의 사·결혼상담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허가 ② 동 영업의 허가사항 변경 ③ 동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④ 동 영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 지명령 ⑤ 동 영업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 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시장군수
2	노인복지시설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시설의 설치허가 ②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③ 시설의 지도감독 ④ 시설의 허가취소등 ⑤ 비용의 수납 승인	노인복지법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7조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1조 제2항	
3	아동복지지도원 임 명 또는 아동위원 위촉등	① 아동복지 지도원 임명 및 해임	아동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② 아동위원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장군수
		③ 아동위원의 직무감독	아동복지법 제7조 동법 제15조	
4	친권상실 신고의 청 구			
5	아동의 후견인 선· 해임 청구		동법 제16조	
6	아동복지시설(아동 상담소를 포함한다) 에 관한 다음의 권 한	① 시설의 설치인가 ② 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명칭 소재지·대표자의 변경 신고 수리 ③ 시설의 지도 감독 ④ 시설의 인가취소와 사업정지등 ⑤ 비용의 수납 ⑥ 시설의 수용정원 변경인가	동법제8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18조 동법제26조 제1항 동법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7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분묘에 대한 매장· 화장 일제 신고 ② 공·사설묘지, 공·사설 화장장, 공·사설 납골당 설치허가 ③ 묘지의 구역, 화장장 또는 납골 당의 시설변경 허가 ④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폐지 ⑤ 관리인 보고 및 변경사항 보고 ⑥ 시설의 검사 및 보고처리 ⑦ 시설의 이전, 시설의 개수 및 사용금지 명령 ⑧ 시설의 허가취소 ⑨ 무연분묘 유골의 집단 안치 ⑩ 분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 당의 이전명령에 따른 비용 및 손실보상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동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9조 동법 제9조 동법제10조제2항및제3항 동법제14조 제1항 동법제15조 동법제15조 동법제15조의2 제2항 동법제15조의3	

		⑪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개장명령 ⑫ 동 조치후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⑬ 시체 운반업 허가 ⑭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사용료등의 최고한도액 고시	동법제16조 제1항 동법제16조 제2항 동법제17조 동법제8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2	시장군수
농어촌개발과				
1	종묘관리에 대한 다 음의 권한	① 종묘상의 등록 ② 등록취소 ③ 종묘 생산지역의 지정 고시 ④ 종묘재배금지 및 제거명령	종묘관리법 제3조 제2항 동법제15조 동법제5조 제1항 " " "	시장군수
농 산 과				
1	주요 농작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종자생산 포장지정	주요농작물종자법제4조	시장군수
2	비료판매업자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개정78. 1.16 조제869)	① 비료판매 등록 ② 비료판매업 등록취소 ③ 비료판매업 등록의 제한 ④ 비료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휴업, 폐업신고 ⑤ 비료판매등록 및 취소의 고시	비료관리법제13조제1항 비료관리법제14조 비료관리법제15조 비료관리법시행령제16조 제2항및 제3항 " 제7조	
3	공동방제비용 부담 명령서 교부		식물방역법제23조의 3	
4	농약판매업에 관한 사항	① 농약판매업 등록 ② 농약판매업의 폐업, 휴업재개업 신고(신설85.2.14조제1521) ③ 농약판매업자의 보고명령(신설 85.2.14조제1521) ④ 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등	농약관리법제10조 제1항 농약관리법제10조제1항 농약관리법제20조제1항 농약관리법제13조제1항 제2항	

농 지 과			
1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소유자 농지개량사업의 기본계획 및 설계승인 ② 동 인가의 고시 ③ 동 사업계획 및 규약 ④ 동 준공보고 처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5조 동법제96조 동법제101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2 동시행령제71조 방조제관리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
2	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시설물의 등록(개정82.1.30)	방조제 관리	
3	방조제 사업시행의 인가등(방조제관리법시행령제5조 규정에 의한 비방자치단에관리 방조제의 사업 시행인가등(신 설 88.9.5 조 례 제 1805호)		
4	소규모(10ha미만)개발계획고시(농지확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 해당지역 제외)(신 설 88.10.29 조 례181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영 립 과			
1	산림해충의 구제에 방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화전신고 ② 화전 실태조사 ③ 정리에정지 고시 및 통지	산림법시행규칙제104조 시장군수
2	부정임산물 운송차량의 운전면허증 회수		산림법제94조 동법시행령제94조
3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의 권한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제5조 동법 제7조 제1항

		④ 화전정리 명령서 교부 ⑤ 화전정리 미이행자의 집행 ⑥ 화전정리 완료신고 ⑦ 화전정리 구역내의 건물 공작 물의 이전 및 철거명령 ⑧ 화전정리의 자경신고 ⑨ 화전정리된 토지의 대가 상환 전의 권리양도 및 사용목적 변 경허가 ⑩ 동 상환완료	동법제9조 제1항 " 제2항 동법시행령제14조 제1항 동법시행령제9조 제4항 동법제11조 제2항 동법제17조 동법제13조	시장군수
식 수 과				
1	산림소유자 산림조 합에 대한 영림기술 자 고용 명령		산림법제10조	시장군수
2	묘포지 적부판정		행정지시(종묘사업 실시 요령)	
3	종·묘판매업의 등록 (85.12.31 조례제 1594)	① 종묘판매업의 등록	산림법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9조	
축 정 과				
1	종축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종축검사 실시 ② 종축증명서 발급 ③ 수정의 제한 ④ 후보 종축 지정 ⑤ 불량묘축의 거세명령 ⑥ 종축의 내역 ⑦ 종축업의 등록 ⑧ 종축업 영업의 양도,임대,등록 사항변경,폐업,휴업 재개업 신고수리	축산법 제4조 동법제6조 동법제7조 동법제8조 동법제11조 동법제12조 축산법제13조 제1항 축산법제13조 제3항 및 제5항	시장군수
2	가축 예탁에 관한 사항		경기도종축예탁조례	종축장장
3	부화 및 종계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종계업등록 및 취소 ② 부화업허가 및 취소영업정지	축산법제13조 제1항 동법제13조 제2항	시장군수

		③ 종계업과 부화업의 감독 ④ 종계장과 부화장의 정기검사	동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동물약품등 취급규칙	시장군수
4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 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매상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 ② 허가증 재교부 ③ 허가증반납 및 폐업신고 ④ 관리약사 변경신고 ⑤ 수의약사 감시원 임명	동물약품등 취급규칙 " 제18조 " 제19조 및 제32조 동물약품등 제21조 약사법 제70조 동물약품등 취급규칙 제27조	
5	수의사법에 의한 다 음의 권한	① 동물병원 개설등록 ② 수의사 지도감독 ③ 공수의 위촉(신설89. 5.11 조례1905) ④ 공수의 업무지도 감독	수의사법 제17조 동법 제30조 수의사법 제21조	
6	도축장 이외에서의 도살 해체 승인		동법제21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제10조	
7	가축방역에 대한 음 의 권한	① 가축방역관 임명 ② 축견의 억류조치 ③ 가축의 사체소각 및 매몰 발굴지 중지 ④ 전염병 이환축의 살처분 명령 ⑤ 소독방법기준의 예외규정사항 승인 ⑥ 광견병 이환축의 조치 ⑦ 검사주사, 약용 또는 투약의 실시	가축전염예방법제30조 동시행령제4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0조 동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8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가축의 도살처분명 령 또는 도살처분		동법 제10조	

9	초지전용허가(전용 대상자가 2개이상 시·군에 걸치는 경 우와 시·군이 직접 조성한 초지의 전용 은 제외함) (신설'88. 6.25조례 1798호)		초지법 제23조 제1항	시장·군수
10	축산업에 대한 다음 의 권한	① 축산업의 등록(신설'88.10.29 조례1816호) ② 축산업 영업의 양도,임대,등록 사항변경,폐업·휴업,재개신고 수리('88.11.30조례1825호)	축산법제13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제20조의 2 축산법제13조의 2 제3항 및 제4항	
11	사료판매업신고 및 변경 신고(신설'88. 10.29조례1816호)		사료관리법 제10조	
12	축산업자 및 종축업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신설'88.11.30 조례1825호)	① 사육가축 감축명령 ② 초과사육 부과금 납부명령 ③ 감축명령 불이행에 따른 등록 취소 ④ 지도감독	축산법 제15조 축산법 제15조	
잠입특작과				
1	잠입지도원의 임명		행정 지시	시장·군수
수 산 과				
1	보호수면에 대한 다음 의 권한	① 지정 신청 ② 등 수면의 관리	수산업법 제63조의 2 " 3	시장·군수
2	보호구역내의 어업 허가		수산업법제25조 제1,2항	
3	제2종 어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유지관리 감독 ② 사용료 징수 ③ 어항시설 상용	어업법 제6조 동법 제20조 허가·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4	어항어업 기본시설 의 관리지도감독		수산시설관리규정	

5	소규모 수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업지구 선정 ② 조사 측량 설계 ③ 사업발주 및 공사감독 ④ 공사지불 및 준공검사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집행지침	시장군수
6	수산시설에 대한 다 음의 관리사항	① 내수면 개발 사후관리 ② 증식사업 사후관리 ③ 수산시설물 사후관리 ④ 천해간석지 사후관리 ⑤ 수산시장 관리사항 조사 ⑥ 어류보호시설 및 방항 치어 사후관리	수산시설관리규정	
7	어구 대체검사			
8	어선건조 및 시설 개량검사			
9	수산장비 개량에 관 한 지도 및 검사			
10	다음 시설 또는 사 업에 대한 준공검사	① 수산증식시설 및 준공검사 ② 해태 용수시설사업 ③ 위판장 보수확장시설사업 ④ 수산물 전시장 시설사업 ⑤ 해태가공 및 화입시설사업 ⑥ 창고 및 해태사업 사장 ⑦ 해태 절단기		
11	다음 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② 증식시설 ③ 보관 및 처리가공시설 ④ 어업개설 개량사업		
12	어항수출 조사측량 설계심사 및 공사감 독 지도			
13	어류보호시설 설계 심사 및 공사감독			

14	각종 수산시설 피해 복구		수산시설관리규정	시장군수
15	치어인수 및 방양 확인			
16	어업용 자재수요자 증명		행정 지시	
17	수산시설에 대한 다 음의 권한	① 관리사항 조사 ② 관리부 작성 비치 ③ 관리사항 보고 ④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 처분	수산시설관리규정	
18	어항법시행령의 다 음의 권한(개정78. 1.16 조례869)	① 어항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단속에 관한 사 항 ② 어항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③ 어항법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교통의 제한사항	어항법시행령제3조 어항시설관리규정제11조 제2항	
19	어항시설 관리의 다 음의 권한	① 어항시설관리 대행사 업무감독	어항시설관리규정	
20	입어료 징수인가	① 입어료 징수인가 ② 공동어장 사후관리	수산청훈령제271호 수산업법 제4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21	지구별 조합의 감독 상 필요자료 요구 (신설88. 3.21조례 1754)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 칙 제22조	
22	수산등식물 채포금 지 해제허가(양식어 업,1종 공동어업용 종묘)(신 설 88.10.29 조례1816)		수산자원보호령제15조 제1항 제1호	

상 정 과			
1	시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개설 허가의 ② 관리자의 지정 ③ 개설자등에 대한 권고등 ④ 개업등의 신고수리 ⑤ 양도의 승인 및 승계신고수리 ⑥ 허가의 취소 ⑦ 과징금의 처분 ⑧ 보고 및 검사	도·소매업진흥법제1항 및 제3,4,5항 동법제7조 제1항 제1호 동법제9조 제1,2항 동법제10조 동법제11조 제2,3항 동법제12조 동법제23조 동법제50조 2,3항
2	대규모 소매점(매장 면적 2,000㎡ 미만)에 한함)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개설허가 ② 개업등의 신고수리 ③ 양도의 승인 및 승계신고 수리 ④ 허가의 취소 ⑤ 과징금의 처분 ⑥ 과징금의 처분	도·소매업진흥법제15조 제1항 및 제3,4항 동법 제17조 " " 동법 제23조 동법 제50조 2항
3	계량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판매업,계량증명법의 등록 (개정85. 2.14 조제15240) ② 등 변경등록 (개정85. 2.14 조제1521) ③ 등록취소 또는 사업중지 (개정85. 2.14 조제1521) ④ 계량기의 검정사무 · 전 계량기의 검정 · 저울,수도미터,택시미터 (개정86.4.4.조제1601호) ⑤ 계량기의 정기검사 (일반계량기) ⑥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 단속 ⑦ 보고 및 검사	계량법제15조 제1항 " " 동법 제37조 계량법제24조 제2항 동법제30조 제1항 동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제33조,제35조

시장군수

인구 50만
이상의시장
시장군수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89. 3.31 조례1893)	①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변경 허가(전제조업) - 고압가스 일반제조(자가소비 및 내용적 2ℓ 이하의 용기 충전) - 고압가스 냉동제조 ②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 설비의 제조허가 및 변경허가 ③ 동 사업자등의 사업의 개시·휴지·폐지 신고수리 및 휴지한 사업의 재개신고 수리 ④ 동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⑤ 동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지도단속·점검등) ⑥ 동 사업자등의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신고 수리 ⑦ 동 사업자등에 대한 위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⑧ 동 사업자등에 대한 각종 보고, 검사등 ⑨ 동 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인구 50만 이상의시 시장군수
5	시범상점 지정감독		동법 제5조	
6	연탄수급 배정		동법 제7조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89. 3.31 조례 1893)	① 액화석유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동차충전, 자가소비, 내용적 2ℓ 이하의 용기 충전)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가스용품 제조사업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43조	
			행정 지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8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 동 사업자등의 사업의 개시 · 휴지,폐지 신고수리 및 휴지한 사업의 재개신고 수리 ③ 동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④ 동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지도단 속 점검등) ⑤ 동 사업자등의 안전관리자 채 용·해임 신고수리 ⑥ 가스용품 수집검사 및 회수 명 령 ⑦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 의 공급규정 승인 및 변경승인 과 변경명령 ⑧ 동 사업자등에 대한 위해방지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⑨ 동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⑩ 동 사업자등에 대한 각종 보고 ·검사등 ⑪ 동 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처 분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14조 동법 제22조 동법제26조 제27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48조	시장군수
		① 특정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채용·해임 신고수리 ②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위해예방 에 필요한 일반 도시가스 사업 자의 가스공급 중지 신고 수리 ③ 특정가스 사용자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 ④ 특정가스 사용자에 대한 처분 및 사후관리(지도감독·단속등) ⑤ 특정가스 사용자에 대한 과태 료 처분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동법 제28조 제3항 동법 제28조 제3항 동법 제50조 제52조 동법 제54조	

		⑥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인구 50만 이상의시장
공 업 과				
1	공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등록 ② 생산신고필 증명 ③ 휴업·폐업 증명 ④ 시설보유 증명	행정 지시 " " "	시장군수
2	전기사업상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취하 는 권한	① 타인의 토지등 일시 사용허가 ② 타인의 토지등 출입허가 ③ 장애식물의 이식벌채 허가 ④ 전기사업자의 타인소유 토지의 공간, 지하사용 허가 (신설88.3.21 조례1754)	전기사업법제60조제2항 동법 제1항 전기사업법 제64조	
3	광산물 생산보고 정 취 및 실적 증명		광업법 제68조	
4	품질표시 상품종 다 음의 권한	① 품질표시 상품단속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5조	
5	중소기업 증명원		행정 지시	
6	실수요자 증명원		"	
7	영세기업자금에 대 한 다음의 권한	① 융자 추천 ② 자금 사후관리	행정 지시 "	
8	수출지정업체 지정		경기도 고시 제351호	
9	이전축진지역 및 제 한정비지역안의 기 존 공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설88.10. 29 조례1816)		공업배치법 제14조	
관 광 과				
1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88. 3. 21조제1754)	① 조성사업의 시행허가(지정된 관광지내 건축허가)	관광진흥법제25조제2항	시장군수
2	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신설88. 10.29조제1816)		관광진흥법제36조	

교통행정과				
1	자동차 운수사업자와의 경미한 사고 보고처리	① 사고발생 보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	시장군수
2	운전사 취업관리 지도감독	① 운전사 취업관리 지도감독	동법 제23조	
3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 및 시외버스정류장 운행질서 지도감독	①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 및 시외버스 정류장 운행 질서 지도감독	자동차정류장법제16조	
4	정류장 사용명령	① 정류장 사용명령	동법 제12조	
5	시내 운송사업의 교통량 조사	① 시내버스 운송차량의 교통량 조사	행정 지시	
6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기타 운송시설의 위치변경	동법 제13조	
7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	①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의 면허 ② 사업면허의 취소	동법 제49조	
주 택 과				
1	삭제(85. 7.25 조례1539)			
2	주택사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영주택 관리검사 ② 아파트 건립 개량검사 ③ 국민주택 준공검사 및 감독	공영주택 시행요강 " "	
3	기계식 노외주차장 인정(신설88.10.29 조례1816)		주차장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치 수 과				
1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양수 양도의 허가 ② 동 상속 신고 ③ 관리인으로 부터의 승계신고 처리 ④ 합병으로 인한 승계	하천법시행령제2조제1항 동령 제3조 제2항 동령 제4조 제2항	시장군수
2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하천 부속물의 공사 및 유지명령	동법 제5조 제2항	

3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② 타공작물공사 및 유지명령	동법 제19조	시장군수
		③ 공사 원인자의 공사시행 명령	동법 제20조	
		④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동법 제23조	
		⑤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준공 신고	동법 제23조	
		⑥ 하천공사 준공신고	동법시행령 제15조	
		① 유지 점용허가	하천법제25조제1항제1호	
		② 토지 점용허가	"	
		③ 하천부속물 점용허가	동법 제3호	
		④ 동 공작물 신·개축 변경제거	동법 제4호	
		⑤ 토지 굴착 성토 점토등 현상변경	동법 제5호	
		⑥ 토석사력등 하천 산출물 채취	동법 제6조	
		⑦ 스케이트장 유선장 기타 하천 점용	동법 제7호	
		⑧ 동식물의 재식	동법 제8호	
4	제3호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하천명령을 위반하였을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⑨ 하수물을 이용하는 축목의 운반 선박 운항	하천법제26조제1항 제2항	
		⑩ 하천의 현저한 오염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	
		⑪ 하천의 인접지역에서 수량의 영향을 끼칠 유수 채취	제2호	
		⑫ 하천의 인접지역에서 수량의 영향을 끼칠 유수 채취	동법제25조 제2항	
		① 허가의 취소	동조 제4항	
		② 허가의 효력 정지처분	동법제67조 제1항	
		③ 공사 중지명령	하천법 제67조 제1항	
		④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명령	"	
		⑤ 이전 및 제거명령	"	
		⑥ 허가효력이 상실되었을때에의 회복조치	"	
			동법제70조 제1항	

5	제3호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신축·개축 공작물의 준공검사 ② 하천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③ 점용료 사용료의 감면 ④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⑤ 필요한 보고의 징취 및 검사	하천법 제31조 제1항 동법 제32조 제1항 동법 제34조 제1항 동법 제35조 제2항 동법 제76조 제1항	시장군수
6	제3호에 의한 유수 점용에 있어서의 다음의 권한	① 수리권 행사 신청 ② 수리권의 조정 제한	동법 제29조 "	
7	제3호에 의한 하천의 하천점용에 있어서의 다음의 권한		동법 제32조	
8	지방준용하천 관리를 위한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허가		동법 제43조 제2항	
9	제3호에 의한 점용과 사용에 대한 공익을 위한 조치		동법 제68조 제1항	
10	제3호에 의한 하천의 경미한 보수		동법 제16조 제32조	
11	제3호에 의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공사비 부과징수		동법 제58조	
12	제3호에 의한 하천 부담금 및 점용료 사용료 강제징수		하천법 제66조	
13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있어서의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허가 ③ 점속토지의 수면 이하로 위 굴착허가 ④ 준설 굴착허가 ⑤ 인구 및 주수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3호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동 제4호 동 제3호 동 제4호	

		⑥ 토석 사리채취 식물재배 허가 ⑦ 수질오염 및 유해행위 허가 ⑧ 토석전개등의 투기허가 ⑨ 호안제방등의 시설물 점용허가 ⑩ 기타 점용허가 ⑪ 동 허가의 공고	동 제5호 동 제6호 동 제7호 동 제8호 동 제9호 동법 제6조 제1항	시장군수
14	제13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②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면제 ③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④ 원상회복 의무명령 면제승인	공유수면관리법제7조1항 " 동조 제3항 동법 제11조 제1항	
15	제3호의 허가에 따르는 다음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②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상속 신고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의 처리 ④ 성명,주소 변경 등재신고 처리 ⑤ 허가기간 연장허가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 동령 제6조 동령 제7조 제8조 동령 제10조 제11조 동령 제14조	
16	제13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효력의 정지처분 ③ 공작물등의 개축허가 등	동령 제15조 " "	
17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동령제16조 제1항	
18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0조	
19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동법 제12조 제2항	
20	제13호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및 변경 취소		동법 제12조 제2항	
21	지방항만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시설사용 및 이용허가 ② 사용료 부과징수 ③ 사용료 면제	항만법 제15조 제1항 동조 제3항 동조 제15조	

		④ 동 항만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항만 공사의 실행명령 ⑤ 항만내에서의 비상재해시의 조치 ⑥ 항만내의 인허가시에 대한 명령위반자의 처분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동조 제10조 항만법 제19조 항만법 제33조 제1항 "	시장군수
22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응급대책을 위한 공사명령 ② 응급대책을 위한 시설물자의 관리수용	풍수해대책법제37조 동법 제38조	
23	하천편입사유 토지 동기 말소 및 관리청 명령 참가(신설88. 10.29조제1816)		하천법시행령 제11조의 2	
24	지방·준용하천내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하천법 제30조의 2	
25	지방·준용하천 연안 구역내에서의 다음의 권한	① 지방,준용하천 연안구역내의 행위허가 ② 지방,준용하천 연안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의 부담	하천법 제45조 하천법 제46조	
26	도선 운임의 승인		유선 및 도선업법제24조	
도 로 과				
1	도로의 점용허가. 다만,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74.9.10 조제618)		도로법제40조 제1항	시장군수
2	전호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원상회복 의무면제 승인 ② 권리의무의 양수도 허가 ③ 권리의무 상속신고 ④ 회사 발기인으로 부터 권리의무 승계신고	동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령 제3조 동령 제4조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 승계신고	동령 제5조	시장군수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위반 을 하였을 때에 다 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취소 ② 허가효력의 정지 ③ 허가조건의 변경 ④ 공사의 중지 ⑤ 공작물의 개축 ⑥ 건물의 이전명령	동법 제74조 제1항 " " " " "	
4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 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		동법 제75조	
5	지방도가 다른 공작 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 사 및 유지를 취하 게 하는 권한		도로법 제9조	
6	지방도로에 대한 도 로공사 이외의 공사 로 인한 도로행위자 에게 작물도로공사 를 하게 하는 조치		동법 제31조	
7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동법 제50조 제4항	
8	지방도 접도구역 안 에서 다음의 허가	① 토지형질 변경허가 ②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개축 중축 건물의 부가중치 허가 ③ 축목의 제식 벌채허가	동법 제1호 동법 제2호 동법 제3호	
9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 음의 권한	① 도로구조나 교통안전과 위협의 예방을 위한 조치 ② 도로의 시설인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색도 통행료 징수	법 제50조 제1항 도로법 제35조	

		③ 도선장 설치허가 ④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⑤ 수선 및 유지업무 ⑥ 구조 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⑦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금의 강제징수 ⑧ 점용자의 점용공사의 준공검사	법 제2조 제2항 법 제67조 제1항 법 제24조 법 제54조의 6 법 제78조 동령 제52조 도로법 제52조 동법 제50조	시장군수
10	도로표지 정비			
11	도로 환경정비			
지역계획과				
1	토지등의 거래계약 신고의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85.7.25조제1539)	①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수리 ② 토지등의 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한 조치의 권고 및 보고 접수 ③ 토지등의 거래계약 신고 토지 등에 대한 선매자 지정 및 통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21조의 8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21조의 7제1항과 동법 제21조의 14 제1항 및 제2항	
2	토지등의 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88. 3.17 조제1753)	① 토지등의 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② 계약예정 금액의 조정 권고 ③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5항 동법 제21조의 4 제2항 동법 제21조의 14	
도시개발담당관실				
1	국·도립 공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② 비공원 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2,5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자연공원법 제17조 동법 제22조	시장군수 시장군수

		③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시장군수
		④ 공원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동법 제24조	
		⑤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와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동법 제25조	
		⑥ 공원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동법 제26조	
		⑦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동법 제26조	
		⑧ 공원점용료등의 징수	동법 제27조	
		⑨ 원인자 부담금 징수	동법 제32조	
		⑩ 수익자 부담금 징수	동법 제38조	
		⑪ 청소구역의 결정	동법 제45조	
		⑫ 사범경찰 관리의 지명 제청	동법 제45조	
		⑬ 허가에 관한 협의 (단,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는 제외)	동법 제50조	
		⑭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중에 관한 사항	동법 제51조	
		⑮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에 관한 사항	동법 제52조	
		⑯ 착공 보고의 수리	동법시행령 제19조	
2	군립공원에 대한 다	① 군립공원 계획의 승인	동법 제12조	
	음의 권한			
3	수질보호구역 지정		수도법 제3조	
	공고			
4	하수도 설치인가 사		하수도법 제16조	
	무			
5	토지구획 정리사업	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 (신설89.2.10조례 1875)	제47조	구가설치된 시의 시장
6	택지개발사업	① 택지개발사업 시행 관련 분묘 등의 정리	택지개발촉진법 제15조	

7	온천수 사무중 다음의 권한 (개정88.4.15조제1762)	① 굴착허가 ② 동력장치 허가 ③ 온천이용 허가	온천법 제5조 온천법 제8조 온천법 제11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구가설치된 시의 시장 시장군수
8	개발지구안에서의 공장입지 지정 (신설 88.10.29 조례 1816)			
9	도시재개발사업 (신설 88. 2.10조제 1875)	①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②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 도시재개발법 제61조 및 제62조 제2항	

민 방 위 과

1	민방위대 동원권	① 민방위대 동원권	민방위기본법 제22조 제1항	시장군수
2	민방위대 유예권	② 민방위대 유예권	동법제22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3	민방위대 준비명령 권한 (개정 77. 5.21 조례84)	① 대피로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②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③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내무부 훈령 제501조 민방위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	

소 방 과

1	위험물제조소등 허가	① 위험물 주요취급소 허가 및 행정처분 ② 위험물 일반취급소(취급,저장,운반,시설)허가 및 행정처분 ③ 위험물 판매취급소(1종,2종)허가 및 행정처분	소방법 제15조,제23조 " "	시장군수 군 수 소 방 서 장
2	위험물제조소등의 예방규정 인가	① 위험물제조소등 예방규정 인가 및 행정처분	소방법제20조,23조	
3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판매업의 신고	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의 신고행정 처분	소방법제35조,37조	시장군수

4	소방설비공사업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86.4.4 조제 1601)	① 소방설비업 면허변경 신고 ② 소방설비 기사의 신고	소방법제42조의 3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소방법제42조의 12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소방서장 (소방서가 없는지역은 시장군수)
5	방염처리자의 지정	① 방염처리자의 지정 및 행정 처분	소방법시행규칙제26조	시장군수
6	소방관 채용시험 심 사관 중 자동차 운 전면허 소지자를 지 방소방사 (소방차 운전원)로 특별채용 하는 시험시행 권한		소방공무원법제15조제2 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	수입기관
지방과	(신설)		지방과	6. 행정기구승 인에 관한 사항	① (신설)시구의 계의 설치·폐지조정권(사 업소·출장소 포함)	지방자치법 제102조	인구 50 만 이상의 시장
	(신설)			7. 지방공무원 정원확정에 관한사항(6 급 이하)	① (신설)기준정원의 범위내에서의 정원 승인사무(일반직,6 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제7 조 6항	
					② (신설) 6급이하 기 준정원 직렬조정 및 감축	"	
					③ (신설)기관간 (본 청,동사무소,출장소, 등 정원조정	"	
			지적과 (신설)	1. 지적 측량 검사		지적사무처리 지침 제91조, 제93조	
				2. 지적 측량 대한 법인의 지도감독		" 제109조	
사회과	(신설)		사회과	1. 사회복지시 설 수혜자로 부터의 비용 의 수납	① (신설)전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비용의 수납	사회복지법 제133의 2	
보건과	(신설)		보건과	6. 의료기관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신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사무	의료법제30조 제4항 제4조	
				34.공중보건의 지도감독(신 설)		농어촌보건의 료를 위한 특 별조치법제13 조	
환경 위생과	(신설)		위생과 (신설)	식품위생업(유 가공품제조업) 에 관한 사무 (신설)	① 허가 및 변경허가 ② 동사무소의 지정 명령 ③ 폐기처분 ④ 시설의 개수명령 ⑤ 허가취소	식품위생법제 22조,동법시행 령제10조,11조 식품위생법 제55조 동법제56조 동법제57조 동법제58조	

환 경 위생과	(신설)	환경보호 담당관 (신설)	1.산업폐기물 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④ (신설)산업폐기물 재생 이용업자의 신 고수리 및 관리 ⑤ (신설)축산폐수 정 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의 등록 및 지도·감 독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동법제17조 제4항	
상정과	(신설)	상정과	3.계량법에 의 한 다음의 권한 4.고압가스안 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8.도시가스사 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 계량기의 검정사무 (전 계량기) ① 고압가스제조허가 및 변경허가(전제조 업) ⑥ (신설)도시가스 공 급시설의 설치공사계 획 승인 및 변경승인	계량법제24조 제2항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제4조 도시가스사업 법제11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2월 12일

경기도 조례 제2005호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 중 문화예술과란의 "제5호 내지 제6호"를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사회과란중 "제5호 ⑤"를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에 "⑨ 내지 ⑮"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보건과란중 제5호에 "②"를 삭제하고 "③" 내지 "④"를, 제34호에 "⑤"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36호 및 제37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위생과란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환경보호담당관중 "제2호"를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가정복지과란 다음에 "부녀복지과란" 및 "청소년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농산과란에 "제5호"를,농지과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영림과란에 "제4호 내지 제9호"를, 식수과란에 "제4호"를, 축정과란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수산과란에 "제23호 및 제24호"를, 상정과란 제8호에 "⑦"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동란에 "제9호 및 제10호"를, 공업과란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관광과란에 "제3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운수과란중 "제8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주택과란에 "제4호 내지 제15호"를, 치수과란에 "제27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도시개발담당관실란 제5호중 "③"을 별지와 같이 하며 제9호 다음에 "제10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0년 2월 1일부터 이 조례 공포일 전일까지 도지사가 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위 임 사 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시관
(문화예술과)				
5	문화재 매매대장의 검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5조 1항	시장군수
6	지방문화재 판람료 인가		문화재보호법제55조 5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5조	
(사 회 과)				
5	노동조합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⑤ 임시총회의 소집 ⑨ 직장폐쇄 신고수리 ⑩ 노동쟁의 행위신고 ⑪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결과 보고(2개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외) ⑫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 결과보고(2개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외) ⑬ 노동조합의 지역적 구속력(2개 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 외) ⑭ 노동조합총회 소집신고(2개 시 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 외) ⑮ 중재 개시	노동조합법제26조 제3항 제4항 노동조합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법시행령 제15조 노동조합법 제39조 노동조합법 제38조 노동조합법시행령 제14조 노동쟁의조정법제30조	시장군수

보 건 과				
5	결핵예방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③ 예방접종의 공고 및 접종유예·접종증명서 교부, 접종에 관한 기록작성보존 및 보고 ④ 전염성 결핵환자의 진료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동법 제29조	시장군수
34	소독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⑤ 소독실적 보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 7	
36	안마사 자격증 교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37	적축물통 처리에 관한 권한	① 적축물 처리업자의 지정 ② 휴업·폐업 장소이전 명의변경 및 준수사항 ③ 처리비용 ④ 지정 취소등	의료법제17조 제1항 보사부령제821호(적축물통처리규칙제3조제1항) 적축물통처리규칙 제6조 동 규칙 제8조 동 규칙 제9조	
위 생 과				
4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장군수
5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공중위생법제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제17조	
6	간이급수시설 폐쇄 승인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1항	
환경보호담당관실				
2	소음규제 고시지역 내의 다음의 권한	① 소음규제 고시지역내에서 특정 공사 시행시 사전 보고 ② 특정공사로 인한 소음이 소음규제기준 초과시 작업시간의 조정 방지시설의 설치등 조치	환경보전법 제35조 "	시장군수
부녀복지과				
1	모자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설치허가 ② 폐지 또는 휴지 신고 ③ 허가취소	모자복지법 제20조 2항 모자복지법 제21조 모자복지법 제24조	시장군수

6	조수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조수의 수출입 허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시장군수
7	명예조수보호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수입조수의 양도 신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13조	
8	학술연구용,종조수용 포획허가,조수의 확인 및 표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	
9	수입조수 폐사신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식 수 과				
4	보안림 또는 보안림에 정지구내에서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림 기타 원상복구에 필요한 명령과 조림대행자의 지정비용 부담명령		산림법 제65조	시장군수
축 정 과				
13	축사 내외부 소독시설		가축전염병예방방법제6조 가축전염병예방방법제7조	시장군수
14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설치 명령			
수 산 과				
23	어업면허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업면허 ②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③ 면허어업의 제한·정지·면허취소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동시행령 제8조 수산업법제26조 제2항 수산업법 제41조	시장군수

24	수산업법 제8조 변 허어업에 대한 행정 처분	④ 입어의 제한·정지·금지 ⑤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 ⑥ 어업권의 취소등 ⑦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 ⑧ 휴업의 신고수리 ⑨ 신청자의 변경신고 수리 ⑩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⑪ 어업면허장 교부 및 재교부 ⑫ 어업면허 공고 ⑬ 어업권의 등록 ⑭ 기타 어업면허의 관리	수산업법 제42조 수산업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3조,제35조 수산업법 제18조,제19조, 제21조,제34조,제37조,제 3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0조 수산업법시행령 제37조 수산업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수산업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수산업법시행령 제18조 제25조 수산업법시행령 제10조 제16조 수산업법 제43조 어업등록령 제2조 수산업법 제32조,제54조, 제55조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17조 수산업법 제20조 1항 4 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등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 조	시장군수
----	--------------------------------	---	---	------

상 정 과				
8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⑦ 도시가스회사 소유의 본관 및 공급관 공사계획 승인을 제외 한 공사계획 승인(특정가스사 용시설 및 일반가스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시장군수
9	에너지 이용에 관한 검사대상기기 사용 정지명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10	에너지관리 대상자 의 에너지관리사(전 기관리사)채용,해임, 퇴직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제2항	
공 업 과				
10	공장정비 명령등		공업배치법 제24조	시장군수
11	공장이전명령의 위 반에 대한 조치		공업배치법 제29조	
관 광 과				
3	관광지 또는 관광단 지 조성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조성계획,수립 ② 조성계획 시행 ③ 관광단지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관광진흥법 제24조 관광진흥법 제25조 관광진흥법 제35조	시장군수
교통행정과				
8	운수업체 교육훈련 담당자 선·해임 신 고수리 및 복무지 도,감독(고속,시의버 스,노선화물 제외)		자동차운수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	시장군수
주 택 과				
4	중기조종사 면허		중기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 42조	시장군수
5	중기조종사 신고의 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중기관리법 제23조 제35 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	

6	중기점사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부관리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중기관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0조의 2	시장군수
7	중기정비명령		중기관리법제12조제4항	
8	중기등록명령		중기관리법 제5조	
9	중기조종사 면허행정처분		중기관리법 제21조	
10	중기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1	중기소유자등의 조사		중기관리법 제28조	
12	중기종사 면허증의 반납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13	중기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지연 또는 과태료 부과징수		중기관리법 제35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48조	
14	중기조종사 면허대장관리 및 중기조종사 신상변동신고		중기관리법 제19조 제23조	
15	적성검사		중기관리법 제22조	
치 수 과				
27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내의 공유수면을 해수욕장으로 사용하는 구역의 지정고시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조례 제8조 제1항	시장군수
28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의 부지에 대한 점용료의 결정		동 조례 제8조 6항	
29	하천부속물 관리		하천법 제14조	
30	하천감시		하천법 제71조	

도시개발담당관실				
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시장군수
10	도립공원 관리에 관 한 사무	① 공원관리를 위한 영업행위의 제한·금지 ② 공원대장의 작성·보관 ③ 공원내 법령위반자에 대한 단 속 및 고발 ④ 도립공원의 무허가 점용 및 사 용에 관한 단속 ⑤ 공익을 위한 도립공원내에 있 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수 ·철거 ⑥ 명예관리인 지정	자연공원법 제37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36조의 2	

경기도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사빈

1990년 2월 1일

경기도 규칙 제 2045 호

경기도직제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 조(도시국) 제3항중 “제 5 호 그밖에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 7 호”로 하고 “제 5 호”및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택지소유 상환제 운용. 지도감독

6. 개발이익 환수제 운용. 지도감독

부 칙

이 규칙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담당관 및 과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사빈

1990년 2월 1일

경기도 규칙 제 2046 호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담당관 및 과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계의 분장사무) “별표1”중 도식국 지역계획과 소관사무의 분장사무 중 “토지관리계”난에 제6호”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택지소유상환제 운용. 지도감독

7. 개발이익 환수제 운용. 지도감독

8. 개별 필지의 지가 조사업무 지원 조정

9. 지가 조사결과 취합보고

부 칙

이 규칙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사빈

1990년 2월 1일

경기도 규칙 제 2047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무원정원) 제1항 “별표1”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총괄)의 계난 1,915를 1,916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067을 1,068로 하며, 6급의 소계 296을 297로, 지방토목기사 33을 34로 하고 7급의 지방행정주사보 156을 157로, 지방토목기사보 48을 47로 한다.

동조 제2항 “별표2”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본청)의 계난 1,039를 1,040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693을 694로 하며, 6급의 소계 191을 192로, 지방토목기사 18을 19로 하고, 7급의 지방행정주사보 115를 116으로, 지방토목기사보 30을 31로 하며, 지역계획과의 계난 28을 29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9를 20으로 하며, 6급의 소계 5를 6으로, 지방토목기사 2를 3으로 하고, 7급의 지방행정주사보 2를 3으로, 지방토목기사보 3을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사빈

1990년 2월 5일

경기도 규칙 제 2048호

경기도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경찰서 조직규칙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경찰지서등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별표2의 경기도 경찰지서, 경찰관 파출소, 경찰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표중

- 수원경찰서, 성남경찰서, 부천경찰서의 파출소 명칭, 위치및 관할 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며,
- 안양경찰서 란중 중앙파출소 다음에 양지파출소를, 관악파출소 다음에 충훈파출소를, 운곡파출소 다음에 동안파출소를, 부림지서 다음에 중부지서를, 군포지서 다음에 당정지서를, 산본지서 다음에 금정지서를, 관양파출소 다음에 내손지서를, 의왕지서 다음에 부곡지서를 삽입하고,
- 광명경찰서 란중 소래지서 다음에 은행지서를, 광명파출소 다음에 광일파출소를, 광북파출소 다음에 광동파출소를, 철산파출소 다음에 신철파출소를 삽입하고,
- 안산경찰서 란중 원곡파출소 다음에 선부파출소를, 원선파출소 다음에 초지파출소를, 고잔파출소 다음에 성포파출소를 삽입하고,
- 의정부경찰소 회천지서 다음에 덕계지서를, 평택경찰서 성동파출소 다음에 동부파출소를, 남양주경찰서 퇴계원지서 다음에 별내지서를, 화성경찰서 태안지서 다음에 태장지서를, 용인경찰서 신갈지서 다음에 고매지서를, 고양경찰서 지도지서 다음에 행신지서를, 이천경찰서 부발지서 다음에 아미지서를, 여주경찰서 금사지서 다음에 산북지서를 각각 삽입하고 신설 파출소의 위치와 관할구역 및 기존 지파출소와,

안양경찰서 과천시서, 광명경찰서 광일, 하안파출소, 안산경찰서 공단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며,

- 파주경찰서 운천지서의 위치를 “파주군 문산읍 운천리 51-106”으로,
파평지서의 위치를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303-1”로, 김포경찰서 검
단지서의 위치를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245-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하되, 1989년 12월 15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2) 경기도 경찰지서, 경찰관파출소, 경찰관출장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표

경찰서명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수 원 경찰서	종로파출소	수원시장안구신평동 232-1	수원시신평동, 장안동, 북수동, 남 창동, 팔당로 1, 2가, 남수동 105, 107, 111-115, 117, 120, 122- 124, 138, 139, 140-143, 152- 156, 158, 159, 161-168
	중동파출소	장안구중동 22-1	중동, 구천동, 영동, 팔달로3가, 교동
	북문파출소	장안구 조원동 660-5	호매실동(1,2,3통), 조원동, 영화동 1-299, 송죽동
	서문파출소	장안구 화서동 444-4	화서1동, 화서2동 2의4, 3-4의 65, 산5-50, 215-233의 3-10, 224, 226의 10-14, 227-283, 285- 330, 344, 352-353, 355
	영화파출소	장안구 영화동 351-2	화서2동 2의3, 330의2, 345, 346의 6, 348-351, 394의6 영화동 210의1, 305-306, 308, 310-311, 319-322, 325-343,

			345-347, 349, 350-365, 368, 371-374, 376, 387-446 정자동 3, 4, 18, 83
정자파출소	장안구 정자동 30-1		정자동 1-16, 18-19, 23-25, 27-33, 35-46, 48-51, 60, 64-74, 76, 79-82, 91-96, 99, 105, 109, 111, 118-127, 129-134, 183, 185, 197-8, 202-203, 207, 211-212, 216, 229, 237, 240, 254-256, 343, 343-1, 353, 680-681, 685-686, 698-701, 709-710, 712, 713, 717, 720, 722, 725, 729-731, 756, 760, 769, 778, 782, 784-792, 825-835 영화동 305, 345-347, 350-352, 387-412 화서2동 223의1-2, 226의1-9, 284, 354, 356-460
동부파출소	장안구지만인계지구 94브럭 22롯트		지동 15-23, 29-32, 60-65, 70-76, 84, 88, 103, 105, 106, 108-118, 121-123, 125, 126, 128, 133, 138, 159-173, 175-177, 180, 182-187, 189, 195-197, 320-344, 346-351, 354-356, 360-375, 377, 378, 380-384, 388-390, 392-397, 400, 402, 404, 406, 412, 420-427 우만동 15-42, 51, 110-115, 117-119, 120, 128, 130, 134-138, 141, 149, 151, 163, 산31
동문파출소	장안구 연무동 산21-1		매향동, 남수동 2, 3, 11, 16, 24, 26, 28, 50, 51, 54-59, 61-63, 66-69, 72, 76-104, 산11 지동 127-135, 143-147, 212,

			216, 217, 241, 244, 246, 253, 254, 247, 354, 357 우만동 산1, 219, 240, 243, 252, 255, 262, 275-277, 291, 292, 295, 296, 298-300, 320, 331-337, 354-357, 401-406
연무파출소	장안구연무동 170	연무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여의동	
파정파출소	장안구 파정동 166-7	파장동, 이목동, 정자동 103, 136-137, 139, 143, 152, 154-156, 164, 166, 170, 172, 177, 184, 186, 187, 190-196, 219-228, 247, 248, 250-253, 257-272, 274-276, 354-16, 344-352, 354-378, 380-426, 428-430, 432-445, 447-528, 530-549, 563-584, 586-590, 593, 600, 610, 615, 618, 620-639, 640-642, 645-675, 683, 691, 693, 695, 743, 752-755, 762, 764, 776, 781, 783, 795, 797, 801, 807, 809-811, 813-817, 820, 822, 824, 840	
울전파출소	장안구울전동497	울전동, 천천동 1-263, 265의9-11-268의 1, 269-382, 457, 460	
매산파출소	권선구매산로1가18	매산로 1, 2, 3가	
서호파출소	권선구서둔동 207	서둔동, 탑동, 구운동, 화서동436, 금곡동	
인계파출소	권선구인계동 909-47	인계동 147-198, 202-223, 229, 232-282, 452-506, 513-521, 548-566, 573-577, 613의1-617, 736-737, 740-780, 800-928, 930, 934-935번지	

			인계동 32, 34-70, 103-105, 107, 109-111, 113-136, 139-141브럭
매탄파출소	권선구인계동1117		매탄동 139-141, 153, 154, 157-164, 168-173, 176, 181, 194, 195, 245-247, 436, 658, 659, 662, 679, 680, 682, 683, 685, 687, 688, 691-699, 701-712, 713-715, 717-723, 725-730, 733-749, 752, 753, 755-762, 764, 771, 773-798, 800, 802, 803, 814, 815, 841, 849-855, 857, 864, 896, 923, 946, 960, 966-968, 972, 979, 987, 990, 994, 1026, 1028, 1030-1032, 1034-1040, 1052, 1085(53-57호), 1085(62-63호) 인계동 1114-1117, 1119-1124
권선파출소	권선구 권선동 153브럭7로트		권선동 1-162의1, 163의1-163의2, 163의5-163의6, 281-345, 388-432번지 권선동 71-119, 135-192브럭 인계동 521-537, 587-613, 618-671, 1004-1064, 1118, 1125-1133번지
고등파출소	권선구 고등동 263-4		고등동
세류파출소	권선구 세류2동 949		대황교동, 장지동, 곡반정동, 세류2동, 456, 457, 504, 509-512, 514, 517, 527, 529, 530, 532, 533, 535-541, 544, 555, 562-565, 585, 586, 588, 591, 580, 850, 854, 855, 943, 949, 950, 981, 984, 986, 987, 990, 992-994, 1001, 1004, 1005, 1011, 1012, 1016, 1018, 세류2동 225-

		239브럭 권선동 162의2-162의6, 163의3-163의4, 171-280, 346-387, 841, 851-859, 877-909번지 권선동 288브럭
유천파출소	권선구 세류2동 476-13	세류2동 121-126, 128, 134-137, 141-149, 151-153, 156, 158, 160, 164, 166, 470, 473-482, 484, 488-495, 497-523, 538, 823-831, 836, 837, 848, 851, 852, 855, 856, 866, 867, 870-872
원천파출소	권선구 원천동 127	원천동, 하동, 매탄동 1, 3-27, 47-49, 57-79, 81, 82, 86-89, 248-250, 254, 256-262, 264, 267-315, 318, 322, 324, 330, 347, 349-359, 361, 363-367, 371-376, 378, 383-385, 393-411, 413, 414, 416, 436, 437, 456, 457, 459-464, 469, 470, 472-490, 492-509, 511-537, 539-567, 569, 649, 1085(1-30호), 1085(37-39호), 1105
고색파출소	권선구 고색동 38	고색동, 평동, 오목천동, 호매실동 (4, 5통)
세곡파출소	군선구 세류1동 260	세류1동, 세류2동 80, 91, 92, 96, 97, 190, 194, 195, 202, 419, 430, 432, 434, 437, 439, 440, 457, 504, 547, 548, 554, 555, 558, 617, 639-641, 645, 647, 649-656, 660, 668, 671-680, 684, 1035
호송경찰관 출 장 소	권선구원천동산80 (수원지방검찰청구내)	

안 양 경찰서	중앙파출소	안양시 안양4동 711-12	안양4동, 안양3동 710, 716-723, 734-738, 740, 742-748, 750- 752, 755-757, 759, 762, 773, 774, 1023-1026, 산 86
	양지파출소	안양시 안양3동 900-30	안양3동 595, 695, 773, 774, 784, 871, 873, 885, 888, 889, 897, 899, 900, 903, 908, 908-4, 911, 911- 1, 911-4, 913, 914, 916-919, 935, 936, 945-947, 949, 950, 952, 953, 955-957, 959, 961-963, 966, 969, 971-974, 991, 992, 994, 995, 1003, 1004, 1007-1009, 1012, 1014, 1017, 1019, 1020, 1029, 1031-1039, 1052-1055, 1059, 1060, 1085, 1088, 1098- 1100, 1103, 1104, 1111, 1145, 1152, 1195, 산29, 산34, 산39-40, 산44, 산45-1, 산48, 산53, 산66- 6, 산80
	관악파출소	안양시 석수2동 266-13	석수2동, 안양2동 817, 819
	충훈파출소	안양시 석수3동 785-28	수3동
	운곡파출소	안양시 비산2동 190-1	비산2동 12, 14, 25, 35, 44, 127, 129, 145, 155, 159, 162, 174, 176, 185, 196, 200, 210, 232, 241, 265, 278, 280-282, 305, 306, 313, 319, 320, 325, 327, 329, 330, 337, 338, 345, 354, 374, 376, 378, 462, 506, 618, 692, 760, 산50, 산77, 산80 관양동 318, 563, 599, 600, 603, 605, 608, 609, 612, 614, 615, 622 -626, 629, 634, 640, 642, 653,

			656, 658, 661, 668-674, 684-699, 703, 704, 706, 709, 711, 1155, 산127, 산135, 산139, 산140, 산143(신번지 : 124브락-157브락)
동안파출소	안양시 관양동 69브락 7롯데		관양동 1-102, 114, 117-128, 285-311, 313, 316-320, 322, 324, 326, 329, 331, 336, 342, 344, 353-358, 360-368, 372, 378, 381, 382, 388, 400, 429, 430, 453-455, 472, 488, 489, 528-531, 535, 536, 538, 540-543, 548, 550, 552, 570, 573-580, 585, 588, 590-593, 618-620, 633-638, 744, 746, 748, 749, 751, 755-752, 760, 763, 산29, 산33, 산36, 산44, 산51, 산63, 산65, 산75, 산85 (신번지:40-123브락)
부림지서	과천시 부림동44		부림동, 별양동 3, 6, 52, 문원동 15, 89, 90, 107, 110, 113-115, 144, 155, 173, 174, 187, 산 157
중부지서	과천시 관문동107		중앙동, 관문동 산1-27, 산71, 산 72-5
과천지서	과천시 별양동1		갈현동, 별양동 1, 2, 4, 5, 7-50, 문원동 1-14, 16-88, 91-106, 108, 109, 111, 112, 116-143, 145-154, 156-158, 160-172, 175-186, 188-554, 900-1020
군포지서	군포시 당동 360-5		군포1동, 군포2동
당정지서	군포시 당정동359		당정동

성 남 경찰서	금정지서	군포시 금정동755	금정동
	산본지서	군포시산본동90-1	산본1동, 산본2동
	관양파출소	안양시 관양동 168-1	평촌동, 관양동 132, 149, 162, 163, 167, 168, 173-176, 181, 182, 186, 187, 217, 219, 232, 236, 237, 239, 244, 245, 249, 252, 256, 258, 259, 260, 273, 265-279, 800, 810, 813, 880, 835, 836, 839, 840, 842, 843, 859, 864, 878, 884, 886, 900, 922, 933, 938, 950, 951, 954, 963, 975, 1023, 1307 (신번지:1-39브럭)
	내손지서	의왕시 내손동 638	의왕시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의왕지서	의왕시 고천동 236-2	고천동, 오전동
	부곡지서	의왕시 부곡동 192	부곡동
	신홍파출소	성남시 수정구 신홍동 1986	성남시 신홍1동 272-288, 291- 293-9
	신일파출소	수정구 신홍1동 5976	신홍1동
	수정파출소	수정구 신홍2동 10-4	신홍2동 241, 242, 249, 250, 252- 254, 260, 261, 265, 267-271
	성남파출소	수정구 신홍3동 3775	신홍3동
	수진파출소	수정구 태평1동	수진2동 30-37, 45-51, 59-62,

		68-71, 75-79, 85-90
성남파출소	수정구 태평2동 3309-218	태평2동 131-134, 138, 140-143, 148-153, 158-163, 168-172, 174-176
중앙파출소	수정구 태평2동 129-1	태평2동 129, 130, 135-137, 144 -147, 154-157, 164-165, 167, 173
태삼파출소	수정구 태평3동 3752	태평3동 72-74, 80-84, 91-95, 100-104, 107-111, 113-115, 117-118, 120
남중파출소	수정구 수진1동 1973	수진1동
북정파출소	수정구 북정동563	북정동, 창곡동, 태평1동 92, 96- 99, 105, 106, 112, 116
남부파출소	수정구 성남동373	수진2동 1-4, 11, 16-19, 21, 22, 326, 373 성남동 1-27, 31-52
고등파출소	수정구 고등동409	고등동, 상적동, 둔전동, 신촌동, 오 야동, 심곡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 동
북부파출소	수정구 단대동 5338	단대1동 666-671, 676-683, 705 -709, 716
금광파출소	수정구 단대1동 3697	단대1동, 금광2동 568-574
산성파출소	수정구 은행동138	은행동 612-1, 612-2, 614, 614- 1, 618, 623, 626-634, 636-638, 730-749

단대파출소	중원구 중동 3	중동A지구 1-9, C지구 1-3, H지구 1-5, 가지구 1-11, 296 금광1동 504, 507, 490-495, 297, 298, 475-479, 482
동부파출소	중원구 금광1동 1944	은행1동, 금광1동 472, 473, 483, 484, 486-489, 500-503
금동파출소	중원구 금광2동 3657	금광2동 510-517, 526-536, 545-556, 565, 566
상 대 원 파 출 소	중원구 상대원2동 3154	상대원2동 307-311-1, 317-348
대원파출소	중원구 상대원1동 1437	상대원2동 349-354 상대원1동 367-371, 373-375, 377-388, 391, 407
공단파출소	중원구 상대원1동 353-81	상대원1동 406단지
상원파출소	중원구 상대원3동 2253	상대원 3동
하 대 원 파 출 소	중원구 하대원동 118-2	하대원동 9-10, 28-30, 56-58, 70, 75, 104, 106, 108-124, 126, 130-151, 360, 산1-산19
성호파출소	중원구 성남동79-7	성남동 36-101, 중동F지구 1-231, E지구 1-386, G지구 1-118, 138-255, 신지구 1-625
은행파출소	중원구 은행동 1025-5	은행동 586-593, 596-599, 603-612-2, 721, 738

부 천 경찰서	여수파출소	중원구 여수동559	이매동, 야탑동,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
	낙생파출소	중원구 판교동263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구미동, 운중동, 석운동, 하산운동, 대장동
	들마파출소	중원구 분당동240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 서현동
	심곡파출소	부천시남구심곡1동 554-14	부천시 심곡1동
	심일파출소	남구 심곡본동 678-32	심곡본동
	송내파출소	남구 송내동 352-1	송내1동
	송이파출소	남구 송내2동 612-2	송내2동
	상동파출소	남구 상동 242-18	상동
	소사파출소	남구 소사1동 143-7	소사1동
	소삼파출소	남구 소사3동 194-7	소사3동
	역삼파출소	남구 역곡3동 114-1	역곡3동, 옥길동 53, 191-208, 449-446-1, 672-676, 678, 694, 산46-76
	괴안파출소	남구 괴안동 71-24	괴안동

소이파출소	남구 소사2동50	소사2동
역곡파출소	남구 역곡동 68브릭 5롯트	역곡1동, 역곡2동
범박파출소	남구 범박동 산17-4	범박동, 계수동, 옥길동419-448, 662-668, 산76일부, 산13-44, 산 122의1-3
중동파출소	남구 중동 61브릭 3롯트	중동 84, 91-103, 170, 174, 175, 179-443, 453-479, 491, 1000
북부파출소	중구 심곡2동 639-11	심곡2동
심삼파출소	중구 심곡3동 428-5	심곡3동
춘의파출소	중구 춘의동167	춘의동
원미파출소	중구 원미동57	원미동
내동파출소	중구 내동 232-26	내동 10-176, 190-380, 약대동 1-109, 181-192, 중동 143-155, 159-183 삼정동 36, 64, 66, 82, 94-99, 107-111, 186, 187, 193-226, 261 -350
오정파출소	중구 오정동 194-6	오정동, 대장동, 내동 7-35, 38, 53, 203-231 삼저아동 1-47, 68-85, 105-113
원종파출소	중구 원종동 275-53	원종동 80-345, 산1-55
고강파출소	중구 고강동389	고강동

광 명 경찰서	성곡파출소	중구 성곡동 359-21	여월동, 작동, 원중동 346-388, 산 58-78
	도당파출소	중구 약대동97-1	도당동
	약대파출소	중구 약대동97-1	약대동 111-178, 중동 1-19, 27 -29, 31-79, 104-108, 121-142
	소래지서	시흥시 신청동 308-29	시흥시 신청동 산6, 산12, 산14, 산 15, 산17, 산19, 산21, 284, 288, 290-305, 307-315, 317, 318, 321 -322, 329, 332의1, 334의4, 335- 347, 349의1, 594, 599-600, 609번 지, 50브럭, 56-57브럭, 64-66브 럭, 69-75브럭, 77-81브럭, 대야 동, 계수동, 안현동, 무지동, 과림동
	은행지서	시흥시 신청동 132브럭 16롯데	시흥신 신청동 1-27,,30-33, 37, 41, 47, 산10, 63, 66, 69의1, 81- 88, 91-98, 101, 104, 106, 107, 110, 116, 117, 120, 121, 125, 128, 141, 143, 146, 153, 156, 158, 165, 180, 183, 186, 195, 196, 198, 200 -202, 229, 247, 266, 268-277, 280, 286-288, 322-334, 347의3, 347의4, 348-402, 422, 433, 439, 442, 443, 451, 452, 461-468, 473, 501, 523, 532, 545, 551, 554, 556, 563, 570, 581, 586, 643, 652-653, 668, 683번지, 51의4브럭, 88-104브럭, 106-17 브럭, 119-122브럭, 126-127브럭, 129-134브럭, 방산동, 포동, 미산동, 은행동, 매화 동, 도창동, 금이동

광명파출소	광명시 광명동 158-834	광명시 광명동 40, 44-47, 50-60, 78-97, 102-106, 108-114, 116, 117, 122, 123, 132-136, 141, 142, 146-148, 154, 157, 158,(1-235, 501-536, 543-564, 647-687, 729-973호), 163-167
광남파출소	광명시 광명동345	광명시 광명동 159-165, 168- 189, 206-208, 211-294, 346(2, 8, 13-16, 18-23호), 347, 350, 352(14, 21호), 산98 옥길동
광일파출소	광명시 광명동 325-5	광명시 광명동 240(4, 7, 10호), 241(23호), 242(3, 5, 8, 10, 13, 14, 21, 22호), 243(9, 57호), 244 (12, 14, 18-20, 22, 23, 25, 26 호), 245(2, 3, 7호), 305(1, 3, 5, 7 -16, 53-58, 64호), 316(3, 7- 16, 19호), 320, 322-331, 333, 337-339, 341, 342, 346(1, 11호), 360, 361, 365, 366, 367(13호), 368-371, 374-379, 411-422, 산 98 노은사동, 가학동
광북파출소	광명시 철산동56	광명시 철산동 9, 15, 39-44, 47- 49, 51, 52,54-57, 116-123, 262, 285, 311-337, 산1, 산4, 산5 광명동 1-7, 9-12, 16-23, 39, 64-77
광동파출소	광명시 철산동155	광명시 철산동 63, 64, 66, 69, 70, 72, 74-77, 81-84, 131, 137, 142, 143, 159, 160, 163, 164, 166, 168, 169, 171

안 산 경 찰 서	철산파출소	광명시 철산동227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1단지, 2단지, 4단지, 7단지, 12단지, 13단지, 산1(1-3), 산4, 산4-1, 산31-1, 산31-17, 산36, 산39, 산57, 산58
	신철파출소	광명시 철산동 주공5단지 라상가	광명시 철산도 349, 350, 357, 358, 363-365, 464-467, 469, 471, 473, 484-490, 492, 493, 495, 496, 498-500, 509, 510, 517-519, 563-566, 산65-2, 산68, 산72-산74 철산주공5단지
	하안파출소	광명시 하안동764	광명시 한안동
	원곡파출소	안산시 원곡동753	원곡동 1-3, 5-37, 39-58, 169-214, 306, 313, 317-319의 20, 314-7, 325-10, 340-3, 342-5, 343-5, 344-1, 344-10, 345-3, 349-3, 374의3-4, 375의4-5, 377-1, 377-4, 378-3, 390-1, 391의3-5, 399-1, 400-2, 400-4, 400의5-6, 401-2, 401-7, 419의3-4, 418, 421-3, 421-5, 424, 741-809, 822-827, 944-965, 995-997, 산1의1-산79
	선부파출소	안산시 선부동 54브릭 1-4	선부동 102, 104, 106, 108, 109, 111, 112, 127, 129, 131, 135-137, 1003, 1004브릭, 54의1-4브릭, 1-436, 961, 963-975, 977-979, 981-990, 993-999, 1001-1023, 1067, 1082, 1083번지
	원선파출소	안산시 원곡동821	원곡동 1-3, 5-37, 39-58, 169-214, 306, 313, 317-319의20, 324-7, 325-10, 340-3, 342-5, 343-5, 344-1, 344-10, 345-3,

			349-3, 374의3-4, 375의4-5, 377-1, 377-4, 378-3, 390-1, 391의3-5, 399-1, 499-2, 400-4, 400의5-6, 401-2, 401-7, 419의3-4, 418, 421-3, 421-5, 424, 741-809, 822-827, 940-965, 995-997, 산1의1-산79
	초지파출소	안산시 선부동 89-8의1	초지동 산4-5, 82-84, 89-3의1, 389, 590, 590-2, 591, 591의1-3, 592, 592의2-4, 593-1, 594, 59401, 595-595의5, 603-608의3, 971-975, 977-115, 993의1-994의15, 1001의8-1001의22, 1003-1003의12 선부동 953, 954, 959, 960
	고잔파출소	안산시 고잔동515	고잔동, 와동
	성포파출소	안산시 성포동 199-1	성포동, 양상동, 북곡동, 월피동
	공단파출소	안산시 원시동773	원시동, 목내동, 성곡동, 초지동산1, 35, 42, 162-412, 305, 618-626, 644-659, 신길동 1048의2-1122
의정부 경찰서	회천지서	양주군회천면덕정리 132	회천면 덕정리, 봉양리, 회암리, 울정리, 옥점리, 고암리
	덕계지서	양주군회천읍덕계리 681-6	회천면 덕계리, 회정리
평택 경찰서	성동파출소	평택시 비전동576	비전1동 309-7, 비전2동 760, 평택동 1-299, 합정동 727-762

	동부파출소	평택시 비전2동 772-2	비전1동 309-6, 비전2동 762-766 의4, 합정동 775, 소사동, 용이동, 죽백동, 청용동, 월곡동
남양주 경찰서	퇴계원지서	남양주군 퇴계원면 퇴계원리 266	퇴계원면 퇴계원1리-11리
	별내지서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114-10	별내면 청학리, 광전리, 덕송리, 화 접리, 용암리
화 성 경찰서	태안지서	화성군 태안읍 진안2리 525	태안읍 진안리, 병점리, 능리, 황계 리, 송산리, 안녕리, 배양리, 기안리
	태장지서	화성군 태안읍 신1리398-19	태안읍 영통리, 망포리, 신리, 반정 리, 반월리, 기산리
용인 경찰서	신갈지서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469-10	기흥읍, 신갈리, 구갈리, 상갈리, 하 갈리, 보라리, 사천리, 영덕리
	고매지서	용인군 기흥읍 고매리725-4	기흥읍 고매리, 공세리, 농서리, 지 곡리
고 양 경찰서	지도지서	고양군 지도읍 토당리 333	지도읍 토당리, 대장리, 화정리, 내 곡리, 행주내리, 행주외리, 신평리
	행신지서	고양군 지도읍 행신리 산101-5	지도읍, 행신리, 강매리
이 천 경찰서	부발지서	이천군 부발읍 무촌리 204	부발읍 무촌리, 신원리, 고백리, 대 판리, 죽당리, 마암리, 아미2리
	아미지서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744-5	부발읍 아미1리, 아미2리, 가좌리, 신하리, 수정리, 송온리, 가산리, 용 암리
여 주 경찰서	금사지서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197	금사면 이포리, 궁리, 도곡리, 장흥 리, 상호리, 하호리, 누유리, 금사리

	산북지서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256-4	외평리, 전북리, 주노리 금사면 상품리, 하품리, 송현리, 후 리, 백자리, 용담리
--	------	----------------------	--

경기도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사빈

1990년 2월 5일

경기도 규칙 제 2049 호

경기도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규칙중 8조 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면허시험 위원회의 구성) ②항의 “시험위원장은 경찰국 보안과장
이 되고 …”를 “시험위원장은 경찰국 교통과장이 되고 …”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사무처리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사빈

1990년 2월 5일

경기도 규칙 제 2050 호

경기도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사무처리규칙중 (별표2)와 (별표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일련번호 2의 내용란중 “(혈액 1밀리리
터에 알콜 0.5밀리그램, 호흡 1리터에 알콜 0.25밀리그램이상)”을 “(혈중
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혈액 1밀리리터에 알콜 1밀리그램, 호

흡 1리터에 알콜 0.5밀리그램이상)을 “(혈중 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으로 하고 (별표3)의 (2)즉심회부항목 일련번호 1의 내용란중 “혈액 1밀리터에 대하여 0.5밀리그램 또는 호흡 1리터에 0.25밀리그램이상”을 “혈중 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2차지방채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1990년 2월 6일

경기도규칙 제 2051 호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2차지방채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팔당대교건설사업 2차 지방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채증권의 조제) 공채증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다만, 도 안방법과 수량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공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공채증권은 사업시행 부서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보관 및 관리한다.

② 사업단장은 미발행 공채증권을 필요시 계약된 금융기관(금고)에 위탁 보관할 수 있다.

제 4 조(공채증권의 효력) ① 공채증권은 도지사의 관인 날인이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공채증권에 도지사의 관인 날인은 공채발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

사업단장의 요구에 의하여 날인한다.

제 2 장 발 행 업 무

제 5 조(공채발행 부서의 지정) 공채의 발행업무는 사업단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취급한다.

제 6 조(공채의 발행일) 공채의 발행일은 지출결의서상 지급명령 발행부 등기일을 실제 발행일로 하여 교부한다.

제 7 조(공채원부의 비치) 공채발행부서의 장은 업무취급 요령에 의하여 공채원부를 비치하고 공채발행시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채의 번호, 액면금액, 이율, 발행일
2. 원리금 상환일
3. 매입자의 성명
4.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제 8 조(공채의 양도양수) ① 기 발행된 공채는 발행부서의 장에게 사전 신고후 양도양수 할수있다.

② 공채의 양도양수를 신고할 때에는 발행된 공채증권의 후면에 양도양수 사실을 기재하고 사업단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9 조(기재사항의 정정금지) ① 공채증권의 기재사항은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 공채증권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서손처리하고 재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채이면의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정정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공채의 발행상화 통보) 공채 발행 부서의 장은 공채발행 경과를 경기도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양도양수시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상 환 업 무

제 11 조(공채의 조기상환) 공채는 상환일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상환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공채상환의 통지) 공채원리금의 상환은 매상환개시 10일전에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인에게 통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3 조(공채증권의 재교부) ① 공채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등 사고의 경우에는 공채증권을 재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오손 마멸되었거나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채증권을 재 교부할 경우 회수된 공채증권은 미 발행된 공채증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14 조(공채증권의 보존) 미 발행된 공채증권은 본 사업이 준공되고 최종 발행 공채의 상환 완료후 일정한 절차에 의거 소각 처리하며, 원리금 상환으로 회수된 공채증권은 상환 완료 표시를 명기하여 관계 지출증빙서에 첨부 관리한다.

제 15 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취급요령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교 부 공 채)

전 1 면



일련번호

경 기 도

팔당대교 건설사업 2차교부공채

수취인 : 주소 _____ 상호 _____ 대표자 _____

발행액 : 일금 _____ 원정 _____

이중권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경기도पाल당대교 건설 사업2차 지방채조례에 의하여 후면 기재조건으로 발행한다.

19 年 月 日

경 기 도 지 사 (인)

후 日

1. 이증권은 경기도 팔당대교건설 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2. 이증권은 기명식 권면기재 금액으로 발행하며 발행부서의 장에게 사전 신고후 양도양수 할수있다.
3. 이증권의 원리금 상환은 발행이로 부터 1년으로 하며 이자는 발행이로 부터 기산하여 액면금액의 100분의10으로 단리계산하되 상환만기일이 초과된 기일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이증권은 분실하였을때에는 재교부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5. 이증권은 경기도지사가 상환한다.
6. 기공채의 기재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팔당대교건설 사업2차 지방채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양도양수사항

[illegible]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사빈

1990년 2월 12일

경기도 규칙 제 2052호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위임사항) “별표”중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0년 1월1일부터 이규칙 공포일 전일까지 도지사가 한 처분은 시장이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공 보 관 실				
1	출판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등 록 ② 등록종교부, 재 교부 ③ 등록사항 변경 ④ 등 폐업 신고처리 ⑤ 등록취소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 록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 " 동법 제5조 동법 제5조의 2	시장·군수 " " " " " " " "
2	인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등 록 ② 등록종교부 재교부 ③ 등록사항 변경 ④ 등 폐업 신고처리 ⑤ 등록 취소	동법 제3조 " " " " 동법 제5조 동법 제5조의 2	" " " " " " " " " "
3	간행물의 납본		동법 제4조	"

4	유선방송 수신사업 에 대한 다음의 권 한(삭제 89. 3. 31 규칙 1965)			
총 무 과				
1	연구, 지도 및 의료 직 공무원의 임용등 에 관한 규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다 음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다음 의 권한	① 연구사, 지도사의 임용 ② 연구사, 지도사의 전직시험 ③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정기 승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24조 제 10항 및 제4조 규정	농촌진흥 원 장
2	시군에 배치한 국가 공무원에 대한 다음 의 권한	① 6급내지 9급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6급이하 수의직 포함) ② 6급내지 9급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기승급 (6급이하 수의직 포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35조 제11항 및 제4조 규정	시장·군수
1	소속공무원의 임용 에 관한 다음의 권 한(개정 89. 3. 31 규칙 1965)	① 지방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직위부여)권 ②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 (직위부여)권 ③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	북부출장소 장, 지방공 무원교육원 장 5급이상 의 청및 사업 소의 장(연 구직 소장 포함) " 출장소장 시장·군수 소방서장
4	2급, 3급비밀 취급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2항	

지 방 과			
1	조직관리 권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삭제 88. 12. 31 규칙 1935)		
2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5조	인구 50 만 이상의 시 장
국 민 운 동 지 원 과			
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정 86. 4. 4. 규칙 1744)	① 새마을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② 새마을금고의 정관병경 인가 ③ 새마을금고의 합병 또는 분할 승인 ④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및 검사 ⑤ 새마을금고에 대한 명령	새마을금고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0조 제5항 새마을 금고법 제20조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34조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34조 제3항 내지 제5항
			시장·군수 " " "
회 계 과			
1	총괄청소관 국유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중 다음사무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국유 재산법 제33조 제2항	"
2	국유재산대장등 공부의 작성 관리	동법 제46조	"
3	국유재산의 등기, 등록 기타 관리보전에 관한 사무	동법 제11조	"
4	국유재산의 실탁조사 및 공부기재누락 불명 재산의 색출에 관한 사무	동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9조	

5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매각의 경우 면적 1,653㎡ 이상 재산가액 5천만원 이상, 대부분의 경우 다른법령에 매각을 전제로 한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 관리처분한다)		동법 제3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동법 제33조 제2항 동법 제46조	"
6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동법 제3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32 제2항 동법 제332 제2항 동법 제46조	
지 적 과				
1	토지의지적경정승인		지적법 제42 제2항	인 구 50 만 이상의 시 장
2	지적공부의 반출승인사무		동법 제8조 제3항	
3	측정변경 승인사무		동법 제27조 제1항	
문 화 예 술 과				
1	공연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연자의 등록 ② 등록종교부 재교부 ③ 등록사항 변경신고 ④ 폐업신고의 처리 ⑤ 등록위 취소 ⑥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공연법 제32 제1항 동법 제4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시장·군수 " " " " "
2	공연 및 공연장 경영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각본대본의 심사 ② 실연의 심사 ③ 감독상 필요한 명령	동령 제14조의2 동령 제14조의2 동령 제24조 제1항	" " "
3	공연자등록증 공연대상의 지역이 도내에 국한되는 공연자 등록		공연법시행령 제37조	"

4	사회단체에 대한 다 음의 권한	① 등록(시군단위에 한함) ② 등록증 교부 재교부 ③ 변경등록 ④ 정기보고 처리 ⑤ 해산신고 ⑥ 등 등록의 취소 ⑦ 등록대장의 작성비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법 제42 제1항 제5조 동법 제5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제1항 동령 제9조 제1항	시장·군수 " " " " " " "
5	음반판매업자에 대 한 다음의 권한	① 등록 ② 등록증의 재교부 ③ 등록의 취소 및 정지 ④ 등록의 변경등록 ⑤ 폐업신고 ⑥ 감독 ⑦ 음반의 판매 또는 배포자에 대 한 업무보고 ⑧ 사용동이 금지된 음반의 건포 수거, 음반의 판매 또는 배포 에 관련된 검사 ⑨ 위법 음반에 판매, 배포금지 명령 ⑩ 위법 음반의 봉인	음반에 관한 법률 제7조 의2및 시행령 제7조 " 시행령 제11조 음반에 관한법률 제7조 음반에 관한법률 제7조2 및 시행령 제9조 " " 제10조 " 제11조 " " "	" " " " " " " " " " "
6	불교단체등록 및 사 찰재산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불교단체등록 및 대표임원 등록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및 제9조	"
7	문화재 매매업 허가		문화재 보호법 제56조의2	"
8	문화재 매매업 허가 변동신고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

9	문화재 매매업 휴폐업 신고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시장·군수
10	불교단체(사찰)의 재산처분 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찰경내 건물 또는 경내지의 사용폐지 허가 ② 사찰의 예산범위내에서의 차입 (당해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은 제외한다) 및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 허가 ③ 사찰경내 건물 및 경내지의 용도변경의 그 용도를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목적 이외에 제공하는 허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
사 회 과				
1	사회복지 법인 이외의 법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		사회복지법 제22조 제2호 단서	"
2	사회복지 법인정관 및 기본재산 대체 허가		사회복지 사업법 제20조	"
3	사회복지법인 임시 이사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4	기중물품의 용도중명 발급		관세법 제28조 제6호	"
5	유료직업소개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규 89. 6. 26 규칙 1996)	① 유료직업소개업의 신규허가 ② 유료직업소개업의 변경허가 및 갱신허가 ③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④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한 보고와 감사	직업안정법 제10조 직업안정법 제10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5조	" " " "
6	노인복지시설의 검사 감독		노인복지법 제17조	"

7	의료보험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채납처 분송인 권한 (지역의료보험에 한함)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 항 및 동법시행령 제68 조 제1항 및 제3항	보험료납부 의 무 자 의 거 주 지 들 관 할 하 는 시 장 · 군 수 (다만, 보 험료 납부 의 무 자 가 당해 조합 관할 지역 외로 퇴거 한 경우에 는 보험료 납부의무자 가 퇴거할 당시의 거 주지를 관 할하는 시 장 · 군수)
---	---------------------	---	---	--

보 건 과

1	치과 기공소에 관한 사항	① 치과 기공소 인정 ② 치과 기공소 변경 및 양수신고 (신설 85. 2. 14 규칙 1640) ③ 치과기공서 감독 및 행정처분 (신설 85. 2. 14 규칙 1640)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 13조 및 제14조	시 장 군 수
2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신설 85. 7.25 규칙 1675)	① 항정신성 의약품의 원료 사용 승인	항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3	예방접종약등의 용 도 변경 및 폐기처 분(신설 85. 2. 14 규칙 1640)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 4조의2 동법시행 규칙 제8조 제 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4	특수장소에서 의 약품 취급 지정 및 취소(개정 86. 4. 4 규칙 1744)		위탁에 관한규정 제42조 제7항 제4호 약사법 부칙 제6조 (법률 제1491호)	시 장 군 수
위 생 과				
1	이. 미용사법에 의 한 다음의 권한 (삭제 89. 5. 7 규칙 1984)			
2	식품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삭제 89. 5. 11 규칙 1984) ② 식품첨가물, 용기, 기구 및 포 장에 기인한 사망자의 사체 해부	식품위생법 제68조	" "
3	공중목욕장업에 대 한 다음의 권한 (삭제 89. 5. 11 규칙 1984)			
4	숙박업에 대한 다음 의 권한(삭제 89. 5. 11 규칙 1984)			
환 경 보 호 담 당 관				
1	오물청소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삭제 89. 5. 11 규칙 1984)			
2	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86. 4. 4 규칙 1744)	① 생활소음 지도단속 ②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환경청 소관 제의)	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의 제13 호 환경보존법 제26조의2	" "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인구50만 이상의 시) (신설 88. 3. 21 규칙 1874) ④ 비산분진 시설의 개선명령 ⑤ 사업의 중지, 시설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동법 제15조 환경보전법 제26조의2 제2항 동법 제26조의 2 제3항	" 인 구 50 만 이상의 시 장 "
가 정 복 지 과				
1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인가 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7항 제13호	"
2	사회복지법인 정관 및 기본 재산 대체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
3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4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삭제 89. 3. 31 규칙 1965)			"
부 녀 복 지 과				
1	가정의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86.4.4 규칙 1744)	① 허례허식 행위 금지의 적용이 제외되는 상례의 승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
농 어 촌 개 발 과				
1	단위농협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관정성 예외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의 인가	농협협동조합법 제16조 제3항	"

		②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동법 제38조 제2항	시 장 군 수
		③ 해산 의결에 대한 인가	농업협동조합법 제79조 제2항	"
		④ 청산인의 선임과 청산사무의 감독	동법 제81조 제2항 4항	"
		⑤ 해산 등기의 촉탁	동법 제92조 제4항	"
		⑥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	동법 제164조 제1항	"
		⑦ 위법 또는 부당의결 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동법 제167조	"
		⑧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동법 제161조	"
		⑨ 해산명령	동법 제172조	"
		⑩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필요한 사항 보고	동법시행령 제8조	"
		⑪ 조합원의 검사청구 검사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2	군조합 및 특수조합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보고서 정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② 행정처분에 대한 위반 및 부당한 사항의 지정명령	동법규칙 제10조 제2항	"
3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농지의 형질변경협의(다만, 상대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①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 : 1,000㎡ 이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② 농업용 시설 • 고정식 비닐하우스와 망실 3,300㎡ 이하 • 기타 농업시설 : 600㎡ 이하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다목	"
		③ 하천관리 시설(면적범위 없음)		
4	농지전용허가 (1,000㎡ 미만)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구 50 만 이상의 시 장

5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협의)(개정 86. 4.4 규칙 1744)	①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 및 도시 계획구역내에서의 농지 일시전용협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2호 다목과 3호 라목	시 장 군 수
6	다년생 식물의 재배 허가 승인(신설 89. 2. 22 규칙 1950)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농 산 과				
1	종자판매업 허가(신설 89. 2. 22 규칙 1950)		주요농작물 종자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
농 지 과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발사업 중 다음 사항	① 자치단체 농지개발사업 중 농업용수개발사업 계속지구의 시행 및 설계승인 (제:신규계획 중요계획 변경) ② 농업용수개발 개보수사업 시행 및 설계승인 ③ 농업용수개발 개보수 수해복구 사업시행 및 설계승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 동시행령 제71조 " 동법 제96조 동법 제99조	" " "
2	농지개발계의 경비 부과 인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3	"
3	법 제5조 1,2항의 규정에 의한 10ha미만의 개발대상지역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61조 제2항	"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중소규모(10ha미만)		"	"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의 양도등의 허가와의 상속의 신고수리중 소규모(10ha미만)에 관한사항	"	"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 허가의 취소 중소규모(10ha 미만)에 관한 사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3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 61 조 제 2 항	"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중 소규모(10ha미만)에 관한 사항	"	"
8	농지개발 개간지역 보조금 정지, 용자금대출정지 및 회수(신설 85. 2.14 규칙 164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 50조	"
9	지력증진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신설 85. 2. 14 규칙 1640)	동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
10	국공유 개발농지의 매도전 영농관리(신설 85. 2. 14 규칙 1640)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
11	대집행에 의한 개간허가의 고시(신설 85. 2. 14	동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6호	"

12	규칙 1640) 토지등의 수용 사용 승인 (신설 85.2.14 규칙 164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 2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
13	10ha미만 개간지의 환지계획인가 및 환 지계획 정정 또는 변경 인가(신설 85. 2.14 규칙 164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14	개발농지의 용도변 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설 86.6.12 규칙 1755)	① 개발농지의 용도변경 승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 54조 및 제6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 1항	"
영 립 과				
1	국유림 대부 사용허 가	① 대 부 ② 사용허가 ③ 대부사용기간 연기허가 ④ 대부, 사용허가의 신청 (명의변경, 면적변경) ⑤ 대부, 사용허가의 취소 ⑥ 대부림 및 대부료등이 반환 조치권 ⑦ 대부료 사정지수 ⑧ 성림의 인정 ⑨ 국유림 치수인의 권리 이전등 에 관한 허가	산림법 제75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산림법 시행규칙 제76조 " 제77조	" " " " " "
2	국유림.분수림 설정	① 국유림 분수림 설정 ② 분수림 설정의 취소 ③ 분수림 설정 권리의 양도 및 담보제공 허가	" 제88조 " 제89조	" "

3	임산물의 사용	① 임산물의 생산지 수요자의 지정	산림법 제54조 제1항 동 법시행령 제49조 1항	"
4	제재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 및 감독	① 제재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 명령 및 처분등	산림법 제55조	"
5	국유림의 연대보호	① 국유림 연대보호의 명령 또는 위탁과 산물의 양여	산림법 제74조	"
6	조림명령		산림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7	국유림 매각	① 국유림 또는 그 임산물 매각 ② 매각계약의 해제 ③ 국유임산물 연기매각 ④ 사업계획 및 설비변경 승인 ⑤ 국유임산물의 반출 및 채취기 간의 연기허가	동시행규칙 제80조 동시행규칙 제82조 동시행규칙 제86조 동시행규칙 제83조 동시행규칙 제85조	" " " " "
8	산림조합 산림계 지도감독	① 조합, 계의정기, 수시감사권 ② 조합, 계에 대한 감독상 필요 한 서류제출 요구 ③ 조합, 계에대한 회계 기타 업 무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된 경우 그 시정 명령		
9	산림청 이외의 관리 청 또는 치수인이 작성한 국유림 영림 계획 승인 또는 동 의권		산림법 제73조 제3항	"
10	산림청 이외의 관리 청 또는 치수인이 작성한 국유림 영림 계획사업 신고필증 교부		산림법 제73조 제4항	"

11	국유림내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산림법 제87조 제1항	시 장 군 수
12	불요존 국유림 및 산림청 이외의 관리청 또는 치수인이 임목죽을 벌채하고자 할 때의 승인 또는 동의권		산림법 제73조 제2항	"
13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국유임산물의 무상 양여권		산림법 제79조	"
14	임업승인변경 및 취소(도내 거주인에 한함)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15	천연 보호림등에 관한 사항(신설 85.2.14 규칙 1640)	① 천연 보호림등의 관리 ② 천연보호림내의 행위 제한	산림법 제68조 산림법 제70조	" "
16	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1조	"
17	보전임지전용허가권 중 다음의 권한(신설 86.6.12 규칙 1755)	① 산림법 제16조 제1호 마후의 보전임지중 10ha미만의 다음의 사업 가. 농공지구 조성사업 나. 초지 조성사업 다. 농지 조성사업 ② 보전임지중 1ha 이하의 전용허가(신설 88.12.7 규칙 1931)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산림청 고시 제7호 산림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제2호	" "
18	국유림교환 및 매수(신설 87.7.1 규칙 1825)	국유림교환 및 매수	산림법 제18조	"

식 수 과				
1	조립의 반환	① 조립비 반환조치	산림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시 장 군 수
2	보안림에 관한사항 (개정 85.2.14 규칙 1640)	① 보안림의 지정 ② 보안림의 해제 ③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 및 해제 ④ 보안림 예정지에서의 제한 ⑤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⑥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법 제56조 산림법 제57조 산림법 제58조 산림법 제59조 산림법 제61조	" " " " "
3	중.요 판매업에 관 한 다음의 권한 (1986. 1. 25 규칙 173)	① 산림용 중.요점사 및 판매 금지, 소독, 폐기등의 조치 ② 중.요 판매업의 등록 취소	산림법 제47조 제2항 산림법 제48조	" "
양 정 과				
1	양곡 매매업의 허가	① 도매업 허가 ② 소매업 허가 ③ 중개업 허가 ④ 시설양도 및 임대변경 승인 ⑤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와 영업 정지 처분 ⑥ 폐지신고	양곡관리법제15조제3항 양곡관리법 제37조 양곡관리법 제22조	" " " " "
2	양곡의 수납 및 체 납처분(개정 85.2.14 규칙 1640)	① 양곡의 수납 및 체납처분 (예매양곡,교환양곡,대여양곡)	양곡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
3	양곡가공의 허가 (대규모 공장 제외)	① 양곡가공업의 허가 ② 양도, 임대변경(이설을 포함) 승인 ③ 폐지신고 ④ 위반업소에 대한 허가 또는 등 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명령(대 규모 제분업 및 제조업의 영업 정지와 허가취소권한 정부관리 양곡 도정업의 허가취소권은	양곡관리법 제16조 동법 제22조 양곡관리법 제22조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 "

		제외) (신설 86.2.14 규칙 1640)		
4	양곡관리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도 명령		양곡관리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8호	"
5	양곡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공무원중의 발행		양곡관리법 제19조	"
6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 양곡도정업. 대규모 제분업 또는 제조업의 시설변경상황 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시설변경 상황확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7	도정업자 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85.7.25 규칙 1675)	① 도정업자 지정 및 취소	미강착장려법 제3조	"
8	양곡소유자, 매매업자, 가공업자, 수송업자 및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신설 85. 2. 14 규칙 1640)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
9	감중가공업에 관한 사무 (정부관리 양곡도정업) (신설 89.2.22 규칙 1950)	① 가공업의 시설변경 승인 ② 가공업의 양도 승인 ③ 가공업의 휴.폐업 신고 수리	양곡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8조	"

측 정 과			
1	자금지원으로 조성된 초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정 86.4.4 규칙 1744)	① 보조 및 용자로 조성된 초지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2개 시군이상에 걸친 경우는 제외)	보조금관리법 제23조 초지법 제11조
수 산 과			
1	수산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관리자 변경승인	수산시설관리규정 제7조
2	어획물 양육 및 전 재 허가		수자원보호령 제19조 제1항
3	어획물과 그제품차 양육지역 및 판매장소 지정		수자원 보호령 제19조 제1항
4	어선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어선등록 ② 어선신호부자 부여 ③ 어선적량 측정 및 개측 (총톤수 5톤 미만) ④ 등록사항 변경 ⑤ 어선등록의 취소 ⑥ 어선원부의 등본사본과 열람등	어선법 제9조 등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어선법시행규칙 제12조 어선법 제13조 어선법 제14조 등법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어선법 제15조
5	수산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지사 허가어업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에 대한 건조개조 발주허가		어선법 제5조
6	현장확인 업무		어선법 제8조
7	선박 국적증서등의 검인		어선법 제10조, 등법시행규칙 제27조

8	어선의 종업제한 결정(제1종 및 제2종 종업제한대항 업종 중 총톤수 20톤 미만어선)		어선법시행령 제13조	시 장 군 수
9	소유자가 불명한 어선등의 관리	소유자가 불명한 어선등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명령	어선법 제27조	"
10	영역서 교부	어선법 시행규칙 제33조	"	
11	항행 외 신고		어선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12	임시항행 신고		어선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13	수산물표생산업 (육상)허가		수산업법 제12조 제86조	"
14	어촌계의 설립, 해산, 분할, 합병등의 인가 및 감독(법인 은 제외) (신설 88. 3.21 규칙 187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
상 정 과				
1	석유 판매업서에 대한 검사 및 신고	① 석유판매업소(부판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② 석유판매소(부판점)에 대한 신고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
2	수입계량기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신설 85.2.14 규칙 1640)		계량법 제15조 제2항 동법 제37조	"

3	에너지 사용자의 사 용량 신고처리(신 설 85.2.14 규칙 164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시 장 군 수
4	에너지 관리 대상자 의 지정 및 취소(신 설 85.2.14 규칙 1640)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0조 제2항 동법 제12 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 항 제1호	"
5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 및 취 소(신설 85.2.14 규 칙 1640)		동법 제27조,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4조	"
6	석유판매업자(주유 소)의 사업의 휴지, 폐지 및 재개신고 수리(신설 85.2.14 규칙 1640)		석유사업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
7	석유판매업(용제판 미소)허가 (신설 87.2.8 규칙 1807)	①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허가 ②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변경 및 승계신고 ③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거래 상황 기록부 징구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 "
8	석유판매업에(주유 소)관한 사무중 다 음의 권한	① 허가, 신고수리 ②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③ 보고 및 검사	석유사업법 제12조 동법 제13조 제3항 동법 제20조 제1항	" " "
9	상품권 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설 88.3.21 규칙 1874)	① 상품권 발행등록 ② 상품권발행공탁 및 공탁의 신고, 공탁물 반환 ③ 상품권발행자에 대한 명령, 월보, 지도감독 및 보고검사	상품권법 제1조의3 동법 제2조, 제4조 제5조 동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 " " "

10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설 88.12.31 규칙 1935)	①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②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지위 승계 신고 ③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휴.폐지, 재개신고 ④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한 보고징수 및 검사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 제23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3조	시 장 군 수 " " "
공 업 과				
1	일반용 전기공작물 (80.4.7 규칙 1189)	① 일반용 전기공작물 유지관리 ② 수용자 개수명령 ③ 개수명령 불이행 수용가 조치	전기사업법 제44조	"
2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의 보안담당자 선임(수전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에 한함) (신설 80.11.22 규칙 1230)	① 보안담당자 선택임 신고 ② 보안담당자 겸임 승인신청 ③ 보안담당자 대행승인 신청 ④ 보안담당자 선임 허가신청	전기사업법 제49조 제3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전기사업법 제4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 " " "
3	자가용 전기공작물 사용 개시 신고(수전전압 20kv)미만으로서 최대전력 300KW미만의 수용설비에 한함) (80.11.22)	① 전기공작물 사용개시 신고	전기사업법 제50조	"
4	보안규정(변경)신고(수전전압 10KV미만의 수전설비에 한함)		전기사업법 제5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9조	"

	(개정 86.4.4 규칙 1744)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9호	
5	자가용 전기공작물 기술기준 적합명령 (수전전합 10KV미 만으로 최대전력 300kw미만의 수용 설비에 한함)(개정 86.4.4 규칙 1744)	①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유지 관리 ② 기술수준 적합	동법 제5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7조	시 장 군 수
6	자가용 전기공작물 입회점사(신설 87.2. 28 규칙 1807)		전기사업법 제74조 제3항	"
7	제2종전기공사업 변 허기제 사항 변경신 고 (80. 11. 22)	①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신고 ② 상호 또는 명칭 변경 신고 ③ 대표자 또는 임원변경신고 ④ 자본금 또는 재산액 변경 신고 ⑤ 전기기술자 변경신고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제 1항, 동 시행규칙 제112	" " "
8	제2종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① 제2종 전기공사업체 사후 관리	전기공사업법 제33조	"
9	공업배치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공장설치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② 입지 변경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③ 조정명령등에 관한사항 ④ 공장설치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⑤ 공장 이전의 신고 수리 ⑥ 보고의 정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⑦ 협의에 관한 사항	공업배치법 제7조 공업배치법 제8조 공업배치법 제9조 공업배치법 제13조 제2항 공업배치법 제25조 공업배치법 제32조 공업배치법 제34조 제1항	" " " " " " "

10	염관리법에 의한 다 음의 권한(개정 86. 4. 4 규칙 1744)	⑧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 (신설 89. 2. 22 규칙 1950) ① 염(합수)제조허가(제제염, 가공업에 한함) ②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③ 허가사항의 승계신고 ④ 허가사항의 폐지신고 ⑤ 염(합수)의 제조허가 (신설 89.2.22 규칙 1950)	공업배치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염관리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4조, 5조 염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염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 " " " " " " " " " " " " "
11	(삭제 85. 2. 14 규칙 1640)			
12	기계공업 등록	① 기계공업등록 및 취소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	"
13	공산품 품질표시명 령(신설 85.2.14 규칙 1640)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4 조 제1항	"
14	공산품 판매 및 진 열금지명령 (신설 85. 2. 14 규칙 1640)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6 조 제2항	"
15	공산품 판매 및 진 열금지 해제(신설 85.2.14 규칙 1640)		공산품 품질관리법 시행 령 제5조	"
16	검사미필상품의 파 기 또는 수거명령 (신설 85.2.14 규칙 1640)		동법 제6조 제3항	"
17	검사지정상품(사전 검사 및 사후검사 지정상품)제조업자 와 판매업자로 부터 의 조사보고(신설 85.2.14 규칙 1640)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1조 제11항	"

18	공산품 지도단속 (신설 85.2.14 규칙 1640)		동법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
19	불법(불량)전기용품 단속 (신설 85.2.14 규칙 164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2조	"
20	전기용품의 수거,파 기명령(신설 85.2.14 규칙 1640)		동법 제23조	"
29	KS표시 명령 위반 단속 및 처벌과 수 거, 파기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4 제3항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
관 광 과				
1	관광용 기자재의 반 입증명 및 용도증명 (개정 87.12.14 규칙 185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7항 제23호	"
2	관광숙박업명의 이 용허가, 이용요금 및 약관신고와 수리		관광진흥법 제11조 제1항 동법 제15조	"
3	관광숙박업 및 관광 객 이용시설업에 관 한 보고 및 검사		동법 제51조	"
4	관광객 이용시설업 (외국인전용 음식 점)등록 및 등록 변 경		동법 제4조	"
5	삭도. 궤도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신설 88.3.21 규칙 1874)	① 삭도, 궤도사업면허 및 관리 (관광지 및 관광사업지구 에 한함)	삭도, 궤도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6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음식점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신설 89.2.22 규칙 1950)	① 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및 등록증 교부 재교부 ② 개선명령 ③ 양도, 양수, 합병, 휴업, 폐업 신고수리 ④ 약관의 신고수리 ⑤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명령	관광진흥법 제4조 제12 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교통행정과				
1	용달화물 자동차 운 송 사업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운송사업면허(신설 85.2.14 규칙 1640) ② 시설확인 및 운송개시일의 연 기 또는 기간신장의 승인 ③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및 요율은 제외) ④ 운송약관의 인가 ⑤ 사업계획 변경인가(중차를 수 반하는 인가사항 제외) ⑥ 공동우수계약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 ⑦ 사고보고 처리 ⑧ (삭 제) ⑨ 사업 개선명령 ⑩ 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의 허가 ⑪ 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 합병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령 제9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송사업법 제7조 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 자동차운송사업법 제9조 자동차운송사업법 제1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시장·군수. 북부출장 소자(북부 출장소 관 할군에 한 함)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정 86. 4. 4 규칙 1744)	⑫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시 장 군 수
		⑬ 법인의 해산허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
		⑭ (삭 제)		
		⑮ 자동차 사용정지의 용달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⑯ 용달화물 운송사업 상속인가 (신설 85.7.25 규칙 167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2	"
		⑰ 사업면허 실효확인	" 제33조	"
		⑱ 다른도에서 사업면허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보고 검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
		⑲ 인허가 사항의 여행신고 수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
		㉔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신설 88.9.5 규칙 1910)	시행규칙 제9조	"
		① 운송사업 면허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② 임원 또는 정관변경 신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
		③ 택시운송사업 상속인가 (신설 85.7.25 규칙 167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2	"
		④ 택시 타인 운전의 신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⑤ 시설확인 및 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
		⑥ 운임과 요금의 인가 (기준 및 요금은 제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
		⑦ 운송 약관의 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
		⑧ 사업계획 변경인가 (중차돌 수반하는 인가상항 제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⑨ 공동 운수계약 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3	시내버스 운송(개정 86.4.4 규칙 1744)	⑩ 사전 보고처리	" 제7조	시장·군수
		⑪ 사업 개선 명령	" 제25조	"
		⑫ 사업판리의 위탁 및 수탁의 허가	" 제27조	"
		⑬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 합병 인가	" 제28조	"
		⑭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 제29조	"
		⑮ 법인의 해산인가	" 제30조	"
		⑯ 자동차 사용정지의명령	" 제32조	"
		⑰ 사업면허 실효확인	" 제33조	"
		⑱ 다른도에서 사업면허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보고 검사	" 제70조	"
		⑲ 인허가 사항의 이행신고 수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
		⑳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신설 88.9.5 규칙 1910)	시행규칙 제9조	"
		① 운송사업면허 (신설 85.2.14 규칙 1640)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시장·군수. 북부출장 소장(북부 출장소 관 할군에 한 함)
		② 운송개시 이용신고	" 제30조 제1항	시 장 군 수
		③ 사업의 양수도 이행신고	"	"
		④ 법인의 합병, 해산 이행 신고	" 제30조 제1항	"
		⑤ 시내버스 운송사업 상속인가 (신설 85.7.25 규칙 167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2	"
		⑥ 임원 또는 정관의 변경신고	" 제30조 제5항	"

		② 사업의 양수, 도이행 신고	"	시 장 군 수
		③ 법인의 합병 해산 이행 신고	"	"
		④ 사업계획의 변경 이행 신고	"	"
		⑤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신고	"	"
		⑥ 임원 또는 정관 변경 신고	"	"
		⑦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이하신설 88.12.31 규칙 1935)	" 제9조	"
		⑧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⑨ 운송시설확인과 운송개시 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 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
		⑩ 운임요금의 신고	" 제8조	"
		⑪ 운송약관의 인가	" 제9조	"
		⑫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 제13조	"
		⑬ 공동 운수계약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인가	" 제14조	"
		⑭ 사업개선명령	" 제14조	"
		⑮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 제28조	"
		⑯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수리	" 제29조	"
		⑰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 제31조	"
6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업의 양수,도 이행 신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30조 제1항	"
		② 법인의 합병, 해산이행신고	"	"

7	자동차운송 알선사 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개정 88.3.21 규칙 1874)	③ 사업계획의 변경이행 신고	"	시장·군수
		④ 임원 또는 정관변경 신고	"	"
			"	"
			제5항	
		⑤ 개선명령 이행신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 조, 시행규칙 제30조 제 3항	"
		⑥ 운송부대시설의 증축 및 위치 변경(동일 시·군구역내)	"	"
			제25조	
		⑦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설 88.3.21 규칙 1874)	동법 제4조	"
		① 운임과 요금의 인가	"	"
			제50조	
		② 알선약관의 인가	"	"
			제51조	
		③ 적합화물 운송허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2조	"
		④ 사업계획의 변경·사업의 휴지, 폐지 또는 양도와 법인의 해산 신고	"	"
			제53조	
		⑤ 사업개선명령 및 사업의 정치 처분(사업면허의 취소는 제외 한다)	"	"
			제55조	
		⑥ 운송알선사업의 등록	동법 제49조	"
		⑦ 운송알선사업의 개선명령	동법 제25조 제1항	"
		⑧ 운송알선사업의 상속인가	동법 제28조의2	"
		⑨ 운송알선사업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동법 제31조	"
		⑩ 운송알선사업에 대한 과징금 부 과징수	동법 제32조의 2	"
		⑪ 적합화물의 운송허가	동법 제52조	"

8	자가용 자동차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88.3.21 규칙 1874)	① 자가용 자동차 사용의 신고, 사용폐지의 신고 ② 자가용 자동차 유상임대 허가 (자가용 구급차 포함) ③ 자가용 자동차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 ④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⑤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금지, 폐지신고 사항 변경등 ⑥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사후관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3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9조 동법 제58조	시 장 군 수 " " " " " "
9	자동차 정류장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86.4.4 규칙 1744)	① 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 ② 자동차 정류장 시설공사 시행의 인가, 자동차정류장 시설공사 완공검사 및 합격처분 검사 신청기간의 지정과 자동차정류장의 공용개시의 신고 ③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약관의 인가, 사용요금의 인가(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및 이용 규정의 인가 ④ 자동차정류장의 관리 감독, 자동차정류장 사업에 대한 금지행위의 중지명령 ⑤ 정류장 명칭변경의 신고 위치, 규모, 구조 및 설비의 변경인가와 사업의 개선명령 ⑥ 공용자동차 정류장의 사용 명령, 정류장의 사업의 양도양수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자동차정류장법 제7조 " " 자동차정류장법 제14조 및 제16조 자동차정류장법 제17조 및 제20조 " 제21조내지 제25조	" " " " " " "

		인가사업자 법인의 합병 및 해산의 인가, 상속의 신고처리, 휴지 및 폐지의 허가, 사업면허의 취소		
		⑦ 전용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 정류장의 위치 및 규모등의 변경인가 정류장의 구조 및 설비의 검사	자동차정류장법 제25조 및 제28조	시 장 군 수
		⑧ 전용자동차정류장의 공동사용 명령	" 제29조	"
		⑨ 버스정류장의 설치명령 자동차정류장 사업자에 대한 보고 청구 및 검사와 도시계획 구역 또는 접도구역내에서의 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등에 대한 협의	" 제31조 내지 제32조 제33조	"
10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에 관한 행정처분	① 사업일부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자동차운수사업법	"
11	창고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창고업의 허가(임항창고의 경우 제외)	창고업법 제3조	"
		② 관할구역내의 창고임차 약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창고 임차 약관의 변경명령	창고업법 제7조	"
		③ 요금기준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창고업 제9조	"
		④ 해당 관할구역내의 창고의 위치등 변경의 허가	창고업법 제12조	"
		⑤ 당해 관할구역의 창고의 구조설비등의 유지를 위한 수리, 개조 또는 보관물건 종류 변경명령	창고업법 제13조	"

		⑥ 당해 관할구역내 창고업자의 상호변경의 신고	창고업법 제14조	"
		⑦ 당해 관할구역내 창고업자의 사업정지 폐업신고	" 제15조	"
		⑧ 창고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 제18조	"
		⑨ 당해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의 상속의 신고	" 제19조	"
		⑩ 당해관할구역내의 창고업의 영업정지명령 및 허가의 취소	" 제20조	"
		⑪ 당해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의 영업상태의 보고명령 및 영업소 창고동의 검사	" 제21조	"
12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설 86. 4. 4 규칙 1744)	① 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13	복수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설 86. 4. 4 규칙 1744)	① 과징금의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고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
14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자동차를 제외한 운송 부대 시설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소, 영업소,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확인 ② 위1항의 계획변경 인가 ③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인가 및 그 변경인가 ④ 운송시설의 확인(신설 88.3.21 규칙 187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7조 제1항	" " " "
15	자동차대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자동차 대여 사업에 관한 영업소의 개선명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7	"

16	노선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노선화물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화물취급소)	동법 제13조	시 장 군 수
17	중고자동차의 매매 업무에 관한 사항	① 허가 및 사업장의 이전허가 ② 사업개시,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③ 사업의 양수, 양도인가 ④ 법인의 합병허가 및 상속 신고 ⑤ 매매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⑥ 매매업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 지 명령 ⑦ 매매자동차의 성능점검요원 및 시설설비 신고 ⑧ 중고자동차 제시, 매도신고 및 차량의 상품표지판 부착 ⑨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영업 실 적보고 검사 ⑩ 무허가 매매행위의 단속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동법 제60조 동법 제55조 동법 제5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50조 동법시행규칙 제149조	" " " " " " " " " "
18	폐차사업등에 관한 업무	① 폐차사업의 허가 및 사업장 이 전허가 ② 폐차사업개시 신고 ③ 폐차사업의 양도 및 양수인가 ④ 폐차사업 법인의 합병 및 상속 허가 ⑤ 폐차사업 법인의 사업개선 명령 ⑥ 폐차사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⑦ 자동차의 강제처분 ⑧ 폐차사업의 휴지, 폐지와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동법 제60조 동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43조	" " " " " " " " "

19	항공에 관한 사무중	① 항공장애등 설치심사 및 사후 관리(지상고 60m이상의 건물 시설물)	항공법 제4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7항 37호	시 장 군 수
20	자동차의 등록 및 검사 업무	① 자동차등록 원부 등초본 발급 (개정 89.2.10 규칙 1946)	자동차관리법 제6조	수 원 시 장 (수원, 오 산, 화성, 용 인지역)
		②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등록 거부	동법 제7조 및 제8조	성 남 시 장 (성남, 하 남, 광주, 이 천, 여주, 양 평지역)
		③ 자동차등록 번호의 통지	" 제9조	부 천 시 장 (부천, 광명, 김포, 강 화, 용진지역)
		④ 자동차등록번호표 봉인영치, 탈착 허가	" 제10조	안 양 시 장 (안양, 시 흥, 과천, 안 산, 군포, 의 왕지역)
		⑤ 자동차 변경등록	" 제11조	평 렵 시 장 (평택, 송 탄, 평택, 안 성지역)
		⑥ 자동차 이전등록	동법 제12조	시 장 · 군 수
		⑦ 자동차 말소 등록	동법 제13조	"
		⑧ 자동차 등록사항 확인	동법 제14조	"
		⑨ 자동차 각자도말 허가	동법 제20조	"
		⑩ 자동차 각자등의 명령	동법 제21조	"
		⑪ 자동차 등록이의 신청처리	동법 제27조	"
		⑫ 자동차구조변경 및 장치 변경 승인	동법 제33조	"

		⑬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1조	시 장 · 군 수 북부출 장소(북부 관 할 지역 에 한함)
21	이륜자동차의 관리 업무	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변경폐 지, 신고수리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시 장 군 수
22	등록번호표 교부 대 행자에 대한 개선명 령		" 제18조	"
23	자동차에 대한 개선 명령		" 제23조	"
24	자동차의 강제거리		" 제25조	"
25	자동차의 일시 운행 허가		" 제26조	"
26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사용정지 명령		" 제35조	"
27	정비관리자 선임신 고 수리		자동차관리법 제36조	"
28	차고시설 확보 신고 수리		" 제37조	"
29	자동차관리 사업자 의 신고수리(중고 자동차 매매업, 자 동차 폐차업에 한 함)		자동차관리법 51조	"
30	자동차리사업의 개 선 명령(중고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폐 차업에 한함)		" 53조	"
31	보고, 검사		" 66조	"
32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 75조	"

주 택 과				
1	주택자재 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① 등록 ② 등록의 취소 ③ 영업의 정지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 제5호	시 장 군 수
2	건설부소관 국유재 산 용도폐지(도로, 구거에 한함)	도시계획구역내 건설부소관 국유 재산(도로·구거)용도 폐지 및 인 계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 (건설부훈령 제452호)	"
3	주택사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신설 88. 3. 21 규칙 1874)	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행위에 대한 허가 ②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 시설 행위 허가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 "	" "
4	문화재보호구역 경 계 100m 이내에 건 축하는 건축물의 건 축허가 사전승인(신 설 89.2.10 규칙 1946)		건축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호	수원·성남, 안양,부천, 의정부,안 산,과천,송 탄,광명시 장,화성군 수
5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권한 (신설 89.2.22 규칙 1950)	① 300세대 이하의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 (다만, 지방자치단체 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500세대 이하의 주택거나설 사 업계획 승인 (다만, 지방자치 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사 업은 제외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5호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5호	시장·군 수 (구가설치 된 시의 시 장제외) 구가 설치 된 시의 시장

④ 스케이트장, 유선자의 설치등을 위한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시 장 군 수
⑤ 식물의 재식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 제8호	"
⑥ 하수물 이용하는 죽목등의 유송 또는 선박의 운항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 제9호	"
⑦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 제10호	"
⑧ 하천점용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법 제32조	"
⑨ 원상회복의 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및 부속 공작물등의 국유화 조치(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
⑩ 토지의 외출입 및 그 사용등을 위한 처분(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43조	"
⑪ 죽목의 재식 벌채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⑫ 토지의 굴착, 정토 또는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하천법 제45조 제1항 제 호	"
⑬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징수(도지사가 시행한 공사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법 제58조	"
⑭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등 감독의 처분(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67조	"

3	국유재산 용도 폐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설 88.7.23 규칙 제1906호)	⑮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68조	시 장 군 수
		⑯ 효력회복 조치등(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7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
		⑰ 하천 감시원의 명과 그로하여금 법령등의 위반상태를 시정하게 하는 조치	법 제71조 제1항	"
		⑱ 보고의 수리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72조	"
		⑲ 하천구역의 지정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하천법 제74조	"
도시계획 구역의 건설부 소관국유 재산(구거)의 용도폐지 및 인계				
			국유재산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
도 로 과				
1	국유재산용도폐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시계획구역의 건설부소관 국유 재산(도로·구거)의 용도 및 폐지 및 인계	국유재산법제30조 동법시행령제32조	"
2	청원경찰에관한 청원주의 권한	① 청원경찰의 임용 ② 배치 및 이동 ③ 교 육 ④ 배치의 폐지 ⑤ 직권면직 ⑥ 정 계 ⑦ 감 독	청원경찰법 제5조 동시행령 제4조 동시행령 제7조 동시행령 제13조 동시행령 제16조 동시행령 제17조 동시행령 제9조의 3 제1항	" " " " " " "

지 역 계 획 과				
1	공공시설업지승인 (부지 면적 1,000㎡ 미만)(신설 89.2.22 규칙 1950)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시 장 군 수
도 시 계 획 과				
1	도시계획사업에 관 한 다음의 권한 (신 설 86.4.4 규칙 1744)	①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 계획사업 시행허가의 승인 ②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 실시계획 인가 ③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④ 도시계획의지적승인사무	도시계획법제10조 제24조 제2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5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도시계획법 제13조	" 인 구 50 만 이 상 시 의 시 장
2	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86.4.4 규칙 1744)	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회를 위한 승인	학교시설사업추진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5조	"
3	도시계획사업에 관 한 권한(신설 87.12. 31 규칙 1859)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건설부 및 도시행사업은 제외	도시계획법 제85조	"

도 시 개 발 담 당 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입 기관
1	공공하수도 간선 관거 설치인가 권한과 공사의 중지등 조치와 시설 개선 명령에 관한 권한 간선관거 결정기준		①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폐지 인가	하수도법 시 행령 제22조	시장 군수
	1. 합류식의 경우		② 공공하수도 공사의 중지변경		
	예정처리구역 면적(ha)	간 선 관 거	기타 필요한 조 치 명령		
	500미만인 경우	내경 90mm 또는 단면적이 600,000mm ² 미만인 하수관거			
	500이상 1,000미만인 경우	내경 1,000mm 또는 통수 단면적이 800,000mm ² 미만인 하수관거			
	1,000이상 3,000미만인 경우	내경 1,200mm 또는 통수 단면적이 1,100,000 mm ² 미만인 하수관거			
	2,000이상 3,000미만인 경우	내경이 1,400mm 또는 통수 단면적이 1,500,000mm ² 미만인 하수 관거			
	3,000이상	내역 1,700mm 또는 통수 단면적이 2,300,000mm ² 미만인 하수관거			
	2. 분류식의 경우				
	가. 오수관거				
	3,000미만	내경 350mm 또는 통수 단면적이 100,000mm ² 미만인 하수관거			
	3,000이상	내경 500mm 또는 통수 단면적이 200,000mm ² 미만인 하수관거			
	나. 하수관거				
	50미만	내경 900mm 또는 통수 단면적이 600,000mm ² 미만인 하수관거			

예정배수구역 면적(ha)		간 선 관 거			
50이상—	100미만	내경 1,000mm 또는 통수단면적이 800,000mm ² 미만인 하수관거			
100이상—	100미만	내경 1,200mm 또는 통수단면적이 1,100,000mm ² 미만인 하수관거			
200이상—	300미만	내경 1,300mm 또는 통수단면적이 1,300,000mm ² 미만인 하수관거			
300이상	300이상	내경 1,500mm 또는 통수단면적이 1,800,000mm ² 미만인 하수관거			
2 전용 상수도 준공검사			전용 상수도 준 공 검사	수도법 제27 조 동법시행 령 제9조	시장 군수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 거	수입 기관
지방과(신설)			지방과	2.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		지방전문직공무원규 정 제5조	인 구 50 만 이 상 의 시 장
			지적과 (신설)	1. 토지의 지적경정 승인 2.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 사무 3. 축척변경승인사무		지적법 제4조 제2항 동법 제8조 제3항 동법 제27조 제1항	" " "

환경위생과 (신설)	환경보호 담당관 (신설)	2. 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④ 비산분진시설의 개선명령 ⑤ 사업의 중지, 시설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명령	환경보전법 제26조의 2 제2항 동법 제26조의 제3항	"
농어촌개발과 (신설)	농어촌개발과	4. 농지전용허가 (1,000m 이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도시계획과 (신설)	도시계획과	1.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실시 계획 인가 ③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④ 도시계획의 지적 승인 사무	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도시계획법 제13조	"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사빈

1990년 2월 12일

경기도 규칙 제 2053 호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별표중 상정과 소관업무 제9호를 제10호로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9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9	석유판매업소(주유소, 용제 판매, 일반판매)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과태료 부과 ② 과태료 징수	석유사업법 제28조	시장·군수
---	-------------------------------------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0년 2월1일부터 이 규칙 공포일 전일까지 도지사가 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사빈

1990년 2월 12월

경기도규칙 제 2054 호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총무과란 제3호 제3목 다음에 제4목 및 제5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총 무 과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3	소속공무원의 임 용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④ 6급이하 국가 공무원(수의 직 제외)에 대한전 보(직위부여)권 ⑤ 기증직 국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 정 제4조 및 제 24조 제10항 제1 호 "	5급이상 외청 및 사업소의 장(연 구직소장 포함) "

경기도 고시 제 41 호

경지정리 환지 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설문 지구
2. 구 역 : 고양군 벽제면 설문 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고양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33,920㎡
5. 환 지 내 용 : 설문지구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 3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 제 42 호

경지정리 환지 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개곡지구
2. 구 역 : 김포군 월곶, 통진면 개곡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한강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1,454,444㎡
5. 환 지 내 용 : 개곡지구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 3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제 43 호

경지정리 환지 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마조지구
2. 구 역 : 김포군 하성면 마조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한강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2,033,985㎡
5. 환 지 내 용 : 마조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3.

경 기 도 지 사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44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사료 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90. 2. 3.

경기도지사

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

- 공장명 : 승화기업
- 소재지 :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418-2
- 대표자 : 백연수

구분	사 료			등록 번호	사 료 성 분 등 록 내 역					
	종류	명칭	용도		칼륨(K) %이상					
등록	단 미 사 료	광 물 질 첨 가 물 염 화 칼 륨 (kcl)	배 합 사 료 원 료 용	9 5- 11	50.0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45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고시
한다.

1990년 2. 3 .

경 기 도 지 사

배 합 사 료 성 분 등 록 내 역

구분	사 료 공 장			사 료			등 록 번 호	등 록 내 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 칭	용 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선탄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두산곡산 (주)	부천시중구 삼 정동 15-6	안기영	배합 사료	임신돈	임신기간중	17-18-1	13.0	2.5	0.5	0.4	10.0	10.0
	한일사료 (주)	용인군기흥읍 하갈리 213	최병덕	"	고기소특 수사료	비육우용	15-37-1	14.0	2.0	2.0	0.6	5.0	30.0

제 2337 호

경 기 도 보

(129)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 46 호

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의 2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제5항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함.

1990. 2. 5

경 기 도 지 사

1. 공 사 명 : 공유수면 매립공사
2. 피 면 허 인 : 안양시 박달동 120번지
만도기계(주) 대표이사 정몽원
3. 매 립 목 적 : 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 부지 조성
4. 위치및면적 :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 343-1 번지선 230,000㎡
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 부터 3년

고 시

경기도 고시 제47호

안양 도시계획 제8지구(2,3공구)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 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5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변경 결정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8지구	계	1,681,825	증17,85.50	169,676.50	
2공구	안양시 호계동, 군포시 산본금정일원	446,553	증12,657.40	459,210.40	안산선 전철로 인한 면적 증가
3공구	군포시 산본, 금정 당리 일원	1,235,272	증5,194.10	1,240,446.10	지구계분할로 인한 면적 증가

1. 공원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공구	어린이공원	210브럭	640.80		640.80	확정측량결과에따른변경
3공구	"	153	2,454.40	증 0.80	2,546.20	
"	"	129	1,500	증 4.10	1,504.20	
"	"	143	1,500	감14.20	1,485.80	
"	"	159	1,500	감11.70	1,488.30	
"	"	111	2,500	증 1.80	2,501.80	
"	"	156	2,500	감12.20	2,487.80	
"	"	102	1,500	증90.00	1,590.00	
"	"	92	1,500	증 0.80	1,500.80	
"	"	83	1,500	감18.40	1,481.60	
"	"	67	1,260.20	증 1.40	1,261.60	
"	"	61	1,500	감 9.60	1,490.40	

"	"	54	1,000	감 3.50	996.50	"
"	"	41	1,500	증 0.80	1,500.80	"
"	"	45	1,500	감 4.20	1,495.80	"
"	"	24	1,500	증 14.80	1,514.80	"
"	"	22	1,600	감 2.60	1,597.40	"
"	"	18	1,000	감 15.10	984.90	"
"	"	3	1,600	감 2.80	1,597.20	"
"	"	77	9,689.70	감 20.20	9,669.50	"
"	소계		39,336.10		39,336.10	"

2.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가로번호			폭원	연장	면적	시점	종점	변경사유
	등급	류별	호수						
기정	대로	2	4	30m	556 m	19,490㎡	증3-8	지구계	안산선전철건설
변경	"	2*	4	30	677	23,695	증3-8	"	에따른변경
기정	"	3	6	25	1,578	39,450	지구계	지구계	당초연장산정오
변경	"	3	6	25	1,206	30,150	"	"	기에따른변경
기정	"	2	4	30	1,108.20	33,240	"	대2-4	897m증 173m는
변경	"	2	2	30	606	18,186	"	"	폭16.5m만 지구
변경	"	2	4	30	897	24,388	증2-14	지구계	내
기정	중로	2	14	15	662	9,930	대2-4	지구계	
변경	"	2	14	15	289	4,335	지구계	대2-4	
기정	"	3	8	12	1,339	16,068	대2-4	대3-6	안산선전철건설
변경	"	3	8	12	1,339	16,068	"	"	에따른위치변경

3. 학교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국민학교	2	23,367.10	감100.60	23,266.50	기존
"	"	140	13,531.70	감 31.50	13,500.20	신설
"	중학교	64	17,842	증 81.60	17,924.40	신설
	계		54,741.60	감 50.50	54,691.10	

4. 시장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면 적	변경후	
변경	소매시장	38	1,500	증 0.9	1,500.90	신설시장
"	"	49	2,000	감 3.20	1,996.80	"
"	"	55	6,233.30	증238.80	6,561.10	기존시장
"	"	56	9,307.90	감 21.20	9,286.780	"
"	"	82	2,800	감 5.20	2,794.80	신설시장
	계		23,580.20	증210.10	23,790.30	

5. 수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지방하천	안 양 시	59,427.40	증5,209	64,636.40	당초면적계 산착오
계			59,427.40	증5,209	64,636.40	

6. 관용지(공용의 청사)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읍사무소) 군포시청	32	2,450	감261.50	2,188.50	명칭변경
"	(동사무소) 우체국	10	400	증 0.70	400.70	"
"	파출소	33	250	증132.80	382.80	
"	우체국	55	277.40	감277.40	0	우체국이전으로폐지
	계		3377.40	감405.40	2,972	

가. 사업지구 지적 승인조서

지구명	공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결 정	지적승인	
계			1,699,676.50	1,699,676.50	
제8지구	2공구	안양시호계동군포시 산본 금정	459,210.40	459,210.40	
	3공구	군포시산본금정당동	1,240,466.10	1,240,466.10	

나. 도시 계획 시설 지적 승인 조서

1)공원 지적 승인 조서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결 정	지 적 승 인	
어린이공원	210브럭	640.80㎡	640.80㎡	
"	153	2,546.20	2,546.20	
"	129	1,504.20	1,504.10	
"	143	1,485.80	1,485.80	
"	159	1,488.30	1,488.30	

"	111	2,501.80	2,501.80	
"	156	2,487.80	2,487.80	
"	102	1,590	1,590	
"	92	1,500.80	1,500.80	
"	832	1,481.60	1,481.60	
"	67	1,261.60	1,261.60	
"	61	1,490.40	1,490.40	
"	41	1,500.80	1,500.80	
"	45	1,495.80	1,495.80	
"	24	1,514.80	1,597.40	
"	22	1,597.40	1,597.40	
"	18	984.90	984.90	
"	3	1,597.20	1,597.20	
"	77	9,669.50	9,699.50	
계		39,336.10	39,336.10	

2) 도로 지적 승인 조서

가로번호			폭원	연장	면적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대로	2	4	30m	677m	23,965㎡	중3-8	지구계	2공구
"	3	6	25	1,206	30,150	지구계	"	"
"	2	2	30	606	18,186	"	대2-4	3공구
"	2	4	30	897	24,388	중2-14	지구계	"
중로	2	14	15	289	4,335	지구계	대2-4	"
"	3	8	12	1,339	16,068	대2-4	대3-6	2공구
	계			5,014	117,092			

3) 학교 지적 승인 조서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결 정	지적승인	
국민학교	2브럭	23,226.50	23,226.50	
"	140	13,500.20	13,500.20	
중학교	64	17,924.40	17,924.40	
		54,691.10	54,691.10	

4) 시장 지적 승인 조서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결 정	지적승인	
소매시장	38브럭	1,500.90	1,500.90	신설
"	49	1,996.80	1,996.80	"
"	55	6,561.10	6,561.10	기존
"	56	9,286.70	9,286.70	"
"	82	2,794.80	2,794.80	신설
계		23,790.30	23,790.30	

5. 수로 지적 승인 조서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결 정	지적승인	
제방하천	2공구	64,636.40	64,636.40	
계		64,636.40	64,636.40	

6. 관용지 지적 승인 조서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결 정	지적승인	
군 포 시 청	32	2,188.50	2,188.50	
우 체 국	10	400.70	400.70	
파 출 소	33	382.80	382.80	
계		2,972	2,972	

경기도 고시 제 51 호

경지정리 환지 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주곡지구
2. 구 역 : 화성군 우정면 주곡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평택농지개발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206,677㎡
5. 환 지 내 용 : 주곡지구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2. 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 제 52 호

경지정리 환지 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율북지구
2. 구 역 : 평택군 청북면 율북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평택중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452,127㎡
5. 환 지 내 용 : 울복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 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 제 53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장안지구
2. 구 역 : 화성군 장안면 장안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평택중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245,204㎡
5. 환 지 내 용 : 장안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2 . 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 제 54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대양지구
2. 구 역 : 화성, 평택군 양감, 청북면 대양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평택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1,542,576㎡

5. 환 지 내 용 : 대양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 제 55 호

경지정리환지 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신당지구

2. 구 역 : 강화군 송해면 신당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강화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100,388㎡

5. 환 지 내 용 : 신당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 제 56 호

경기도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별표1의 점. 사용료 산
정기준표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 구역 및 팔당호준설
구역내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2. 8.

경기도지사

단위:원/m³			
구 역	품 명	하천점.사용료	비 고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 사업 구역내	원 석	2,900	
팔당호 준설사업 구역내	"	1,350	

경기도 고시 제 57 호

경지정리 환지 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양거지구
2. 구 역 : 여주군 능서면 양거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여주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599,368㎡
5. 환 지 내 용 : 양거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1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 제 58 호

경지정리 환지 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마래지구
2. 구 역 : 여주군 능서면 마래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여주 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1,373,931㎡
5. 환 지 내 용 : 마래지구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 1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 제 59 호

경지정리 환지 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지내지구
2. 구 역 : 여주군 북내면 지내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여주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1,650,879㎡
5. 환 지 내 용 : 지내지구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 1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 제 60 호

환경보전법 제2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
업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가스공급시
설)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용 의무화 지역 및 건축물을 고시합니다.

1990. 2. 14.

경기도지사 인사빈

도시가스 사용지역 및 건축물 고시

1. 지정(변경)한 연료 : 도시가스(L.N.G)또는 유황함량 0.4%이하의 유류
2. 용 도 : 취사용 및 냉, 난방용
3. 대상지역 및 건축물
가. 대상지역 - 18개 시·군

시 군 별	대 상 지 역
수 원 시	전 역
성 남 시	태평동, 신흥동, 상대원동, 은행동, 단대동, 중동, 성남동, 수진동, 여수동, 분당동, 이매동, 금곡동, 판교동
의 정 부 시	의정부동, 호원동, 장곡동
안 양 시	전 역
부 천 시	전 역
광 명 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안 산 시	전 역
과 천 시	중앙동, 별양동
구 리 시	교문동, 수택동, 수평동
미 금 시	평내동, 금곡동

시	홍 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안산동
군	포 시	군포동, 당정동, 산본동, 금정동
의	왕 시	고천동, 부곡동, 내손동
하	남 시	천연동, 신장동, 풍산동, 감북동, 초이동, 춘궁동
남	양 주 군	와부읍, 벌내면, 화도면
고	양 군	지도읍, 원당읍, 신도읍, 화전읍, 인산읍, 벽제읍, 송포면
광	주 군	광주읍
김	포 군	김포읍, 고촌면, 검단면

나. 대상건축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건축물
- 업무용시설, 위탁시설,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숙박시설 (여인숙제외), 목욕탕, 관람집회시설, 운수시설(화물자동차 터미널제외)의 료시설 (의원포함)로서 열공급시설의 용량합이 0.5Ton/hr이상인 대형 건축물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의거 사업승인을 득하여 신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평균 전용면적이 82.6㎡ (25평)이상인 신축 아파트
- 도시가스 배관이 단지내에 매설되어있는 지역으로서 100세대 이상 규모의 기존 공동주택
- 위 대상건축물로서 취사 및 냉·난방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교체를 요하는 건축물

다. 사용연료 및 시행시기			
대 상 시 설		사용연료	시행시기
업무용시설	126만kcal/hr(2Ton/hr)이상보일러	L.N.G	91.9.1
	30만kcal/hr(0.5Ton/hr)이상	L.N.G 또는 유황	92.9.1
	126만kcal/hr(2Ton/hr)미만의 보일러	합량 0.4%이하의 유류	
아 파 트	o 기존아파트		
	전용면적 평균 35평 이상	L. N. G	91.9.1
	전용면적 평균 30평 이상	"	92.9.1
	전용면적 평균 25평 이상	"	93.9.1
	o 신축아파트		
트	평균전용면적 14평이상 25평 미만 평균전용면적 25평 이상	L.N.G또는 경유	91.1.1
		L. N. G	91.1.1
4. 기 타			
o 해당지역내에서 대상건물의 신축시에는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다만, 도시가스공급이 불요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면 제외될 수 있다).			
o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는 본고시 세부시행일부서는 LNG도시가스 사용 의무화 건축물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 용기를 공급할수 없다.			
o 대상지역은 1/25,000 또는 1/5,000 도면에 표시하여 도청 상정곡에 보관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o 도시가스배관 확장으로 공급지역이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한다.

○ 기타 상세한 내역은 도청 지역경제국 상정과 (42-2346)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본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최근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경과조치):본고시의 대상지역내에서 L.N.G를 사용하여야 하는 평균 전용면적 82.6㎡ (25평) 이상의 아파트중 88. 1. 1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92. 8. 31 까지는 LNG 또는 유황 함량 0.4% 이하의 유류도 사용할수 있으나 1992. 9. 1부터는 LNG로 사용연료를 전환하여야 한다.
3. (L.N.G 배관망 미설치지역에 대한 경과조치):이고시 규정에 의거 L.N.G만을 사용하여야하는 지역의 건축물로서 이고시 세부시행 적용일까지 L.N.G배관망이 미설치된경우, 배관망이 완료되어 L.N.G공급이 가능한 날로부터 3개월 까지는 본고시의 적용을 유보하되 공급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사용연료를 L.N.G로 전환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본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최근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경과조치):본고시의 대상지역내에서 L.N.G를 사용하여야하는 평균 전용면적 82.6㎡ (25평) 이상의 아파트중 88. 1. 1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92. 8. 31까지는 LNG 또는 유황 함량 0.4%이하의 유류도 사용할수 있으나 1992. 9. 1 부터는 LNG로 사용연료를 전환하여야 한다.

3. (L.N.G배관망 미설치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규정에 의거 L.N.G만을 사용하여야하는 지역의 건축물로서 이고시 세부시행 적용일까
지 L.N.G배관망이 미설치된경우, 배관망이 완료되어 L.N.G공급이 가능
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본고시의 적용을 유보하되 공급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사용연료를 L.N.G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63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
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2. 16.

경 기 도 시 자

김포군 고시 제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주
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 25

김 포 군 수

아 래

1. 사 업 명 : (주) 동문주택목화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20번지
(주) 동문주택 대표 윤 문 섭
3. 위 치 :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827, 690-108, 690-123, 690-194,
690-233.
4. 규 모
 - 대 지 면 적 : 12,069평방메타
 - 건 축 면 적 : 4,308.47 평방메타
 - 건축연면적 : 22,928.74 평방메타
 - 층수및동수 : 지하1층, 지상5층 (아파트4동, 노인정1동, 근린생활시
설1동, 화장실1동)
 - 세 대 수 : 299세대
5. 변경내용

일부형별면적,부대복리시설 변경(우리군 건설과에변경도면 비치)
6. 사업시행기간 : 89. 11. 6 - 90. 10
7. 관계법률에 의한고시사항

건축법제5조에 의한 허가, 동법제47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84-0682)로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고시 제22호

고 시

신장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교통광장)사업에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허가 하고 같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고시 제14호 ('89. 6. 8)호로 고시하였으나,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조서가 누락되어 재고시 합니다. 관계 도서를 하남시청 도시과 및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부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89. 11. 17

하 남 시 장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57-23번지
- 종점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37-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로 및 교통광장 건설공사
- 명칭 :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건설공사 (대로3류 10호선, 대로3류 11호선, 서부 및 신장교통광장)

다. 면적 및 규모

- 도로-대로3류 10호선, 폭 24.4~44.0m 연장 5,640m
-대로3류 11호선, 폭 24.4m, 연장 120m
- 광장-서부 교통광장 : 101,471㎡
-신장 교통광장 : 168,45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도로공사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번지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시행허가일로부터 91.12.31까지

2. 허가조건 : 생략

입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 적 (㎡)	면적지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경기도 하남시 갑일동	376-45	잡	331	331	김 정 식	영등포구 사당동 95-107	강은희	은평구 진관외동 271-18
2		376-43	잡	331	331	최 경 순	도봉구 미아동 834-10		
3		376-44	잡	331	331	송 재 영	용산구 후암동 142		
4		376-42	잡	331	331	김 객 규	은평구 대조동 31-4		
5		376-89	전	414	414	김 한	강동구 잠실동 44 ㉠ 402동 508호		
6		376-88	전	824	178.6	김 석 봉	강동구 가락동 현대㉠ 24-1401		
7		440	구	4,383	192.5		국		
8		442	도	215	171.9		"		
9		376-72	도	60	46	안세열외1인	성동구 신당동 367-12		
10		376-38	잡	271	210.6	"	"		
11		산59-33	수	198	198	능성구씨 직장종파종중	갑일리 295		
12		376-39	잡	595	334.6	이종현외1인	부산시 영도구 영전동 4가 104		
13		376-64	대	129	33.4	유 상 규	강동구 삼성동 주공㉠ 708동 204호		
14		376-40	대	145	42.4	"	"		
15		376-41	잡	271	125.9	마 상 용	서대문구 홍재동 산5		
16		379	전	843	843	강 동 근	서대문구 불광동 291-123		
17		380	답	3,055	1,223.6	이 명 우	강동구 마천동 6		
18		378	답	2,142	2,169	"	"		
19		377	답	3,749	932	이 승 남	강동구 오금동 268		
20		378-2	전	192	51	임 박 래	갑일리 376-34		

21		378-3	전	192	192	최 길 용	성동구 행당동 7		
22		산59-29	임	192,434	10,303	능성구씨 직장공회중중	감일리 295		
23		376-11	전	456	9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87		
24		376-8	전	456	22.5	이명자외2인	강동구 거여동 135-55		
25		산59-29	임	192,434	4,937	능성구씨중중	감일리 295		
26		산59-38	임	29,100	3,269	"	종로구 혜화동 5-27		
27		산59-37	수	3,448	130	"	"		
28		산59-28	수	2,476	2,130	"	감일리 295		
29		산59-2	임	48,432	10,958	"	"	한국전력	서울 강남 삼성 87 (지상천)
30		산46	묘	863	55	"	"		
31		268-1	전	56,890	2,203	김준기외1인	감일리 245		
32		426	전	1,848	381	국			
33		282-1	전	2,063	720	구 자 완	감일리 295		
34		282-4	답	364	230	구 자 현	성북구 종암동 7-37		
35		281-3	답	1,603	748	구 본 춘	감일리 89		
36		281-2	구	192	115	미등기			
37		281-1	답	106	50	구 본 현	용인 수지 동천 365		
38		283-4	전	79	30	미등기			
39		283-6	답	2,377	1,080	구 자 현	감일리 313		
40		283-3	재	212	50	미등기			
41		429	도	198	90	국			
42		280	전	374	70	김 자 완	감일리 295		

43	경기도 하남시 갑일동	279	전	1,851	806	임 성 규	서울 용산 한남 1-42
44		426-1	전	644	115	국	
45		278	전	879	532	미등기	
46		삼34-1	임	104,826	19,727	능성구씨종중	갑일리 295
47		삼40	임	496	144	"	"
48		삼37	임	793	793	"	"
49		삼36	임	793	793	"	"
50		삼24	임	28,264	5,155	경 제 종	성동구 광장동 산 21 위커힐㉠ 24-103
51		삼25-4	임	9,322	9,322	홍명자외1인	성동구 신당동 432-660
52		삼25-6	임	3,769	3,769	임금씨외1인	성동구 중곡동 94-12
53		삼25-7	임	2,009	2,009	박 정 희	강남구 논현동 219-31
54		삼25-12	임	989	989	이 근 배	영등포구 여의도 28 광장 ㉠ 3-902
55		삼25-11	임	334	334	최 성 민	영등포구 여의도 1-58 순복음㉠ 11층 9호
56		삼25-8	임	1,686	1,686	"	"
57		삼25-10	임	1,983	1,983	장 길 선	성동구 행당동 297-30
58		153-3	전	1,769	820	신 동 련	갑일 153-4
59		삼25-1	임	9,917	1,915	전 영 전	갑일 삼25-1
60		155-1	답	377	377	신 동 련	갑일 153-4
61		153-1	답	688	688	"	"
62		153-2	전	387	387	"	"
63		153-4	대	545	545	"	"
64		삼25-16	임	6,576	6,576	"	"
65		삼25-15	임	1,058	1,058	"	"

66	산25-14	임	1,059	1,059	"	"	김 홍 근	강동구 성내동547-1 미주㉔1동 1207호
67	산25-13	임	1,059	1,059	"	"		
68	산25-5	임	1,058	1,058	"	"		
69	산25-9	임	337	337	경 무 웅	감입 156		
70	156-1	전	608	608	"	"		
71	156	대	430	430	"	"		
72	157	대	783	783	"	"		
73	173-1	대	661	661	박 선 병	성동구 구외동 235-24	중소기업은행	
74	172	전	1,111	446	정 인 영	강동구 방이동 257-2 극동㉔ 5-704		
75	177	답	2,413	158	윤원복외3인	감입 174-1		
76	171-1	답	635	187	신 정 철	감북 413-29	신정철외3인	
77	171	답	922	922	유 찬 옥	강동구 철호동 21-27		
78	179	답	3,914	504	정석태외1인	성동구 성수1가 558	김 응 철	성동구 철호동 397-179
79	180	답	3,187	374	황 윤 학	강동구 철호동 280-9		
80	178	대	3,121	1,800	정석태외2인	성동구 성수1가 558	김 응 철	성동구 철호동 397-179
81	408	구	4,017	864	국			
82	169-3	답	3,299	720	이 태 춘	감북 371		
83	170-4	전	1,150	1,150	김 도 선	감북 469		
84	170-2	전	2,949	1,368	"	"		
85	170-1	전	1,679	748	조 길 선	강동구 성내동 199-5		
86	170-3	대	631	101	강기만외1인	강남구 청담동 282-3		
87	170-5	전	955	955	"	"		
88	158	전	182	182	"	"		

89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59	전	2,122	1,540	·	감일 170		
90		160-1	공	3,855	893	㈜반도산업	감일 160	제일은행	근저당권
91		155	전	662	662	배 태 옥	감북 419		
92		155-4	전	829	829	김 영 복	강남구 청담동 249		
93		155-2	전	969	969	김 수 환	성동구 모전동 204-2	주은상호	강남구 잠원동 1-44
								신용금고	근저당권
94		155-3	대	264	264	·	·	·	·
95		411	도	1,954	921	국			
96		154-1	도	400	206	이 용 우	감일 146		
97		154-2	대	417	158	황숙자의2인	감일 154-2		
98		154-3	잡	189	189	서 흥 원	강동구 성내동 410-31		
99		154-5	잡	383	383	·	·		
100		145-1	전	1,663	1,663	이 중 태	감일 141	송 점 동	감일 419
101		145-2	전	2,182	2,182	강 한 모	감일 146		
102		145-3	전	1,626	1,626	이 용 덕	강동구 성내동 86-17		
103		145-4	전	985	985	김경용외2인	감일 146		
104		145-6	전	1,967	1,180	이 용 우	·		
105		145-5	전	417	417	·	·		
106		145-7	대	403	172	·	·		
107		144-2	대	73	73	윤 석 봉	감북 366		
108		144-1	전	671	671	서동춘외1인	감일 164		
109		143	담	1,428	1,428	이 용 우	감일 146		
110		142-1	담	1,550	1,550	이 재 환	강동구 명일동 312-140		

111		138-2	전	2,155	1,354	박 남 아	구로구 가리봉동 29-21		
112		139	답	2,215	850	김 성 태	춘궁 314		
113		140	답	616	158	고 봉 립	강동구 둔촌동 85-2 삼익빌라 3동 305		
114		141	임	747	747	최 종 의	동대문구 장안동 서영④ 55-408		
115		409	구	7,418	4,334	국			
116		133-2	답	10,628	2,288	박 순 정	감일 146		
117		133-1	임	1,309	345	김 순 자	중구 충무로 2가 12-12		
118		133-5	임	332	101	송 상 춘	강동구 성내동 427-75		
119		133-4	임	1,182	576	임 진 청	감북 338-1		
120		134-1	답	215	30	이 부 웅	감북 307-2	이 부 웅	
121		134-7	답	915	202	이승훈외1인	감북 419		
122		134-3	답	826	826	"	감북 419	윤 수 현	구로 가리봉 316 우성 ④ 가동 305호 가압류
123		134-8	답	1,196	1,196	"	"		
124		134-2	전	1,207	1,207	박 옥 경	강동구 철호동 438-38		
125		134-6	답	86	86	"	"		
126		134-5	답	132	132	이 용 우	감일 146		
127		134-4	전	717	717	이승훈외1인	감북 419	윤 수 현	구로 가리봉 316 우성 ④ 가동 305호 가압류
128		134-9	답	1,013	1,013	"	"		
129		129-2	답	347	347	"	"	윤 수 현	구로 가리봉 316 우성 ④ 가동 305호 가압류
130		129-1	답	1,980	1,879	임 호 성	용산구 한남동 54	이 부 웅	감북 208
131		130	답	945	360	"	"	"	
132		128	답	3,167	2,706	이복녕외3인	감북 413		
133		127	답	668	668	김 중 열	도봉구 번동 411-18	김 양 순	강동구 철호동 385-4 (근저당권)

134	경기도 화남시 갑일동	121	답	1,098	1,098	강 성 복	갑북 346		
135		120-3	답	3,131	1,757	박 병 식	갑북 294	박병식외1인	
136		406	구	5,157	2,232	국			
137		126	답	4,588	864	조 인 회	장남구 둔촌동 108		
138		123-1	답	3,613	259	강 회 수	갑북 353		
139		103-1	답	876	201	정 창 모	화성 오산 청학 41-8 제경주백	박 용 제	강동구 둔촌동 주공 ㉠ 108동 104호
140		111-1	답	413	201	정 경 모	갑일 67		
141		111-2	답	1,402	1,036	김 동 춘	성동구 상왕십리 755		
142		111-4	전	1,941	196	한 현 수	강동구 둔촌동 439-5	손 윤 석	갑북 413
143		113	답	800	662	김 중 화	강동구 둔촌동 457-1		
144		405	도	238	90	국			
145		112-1	답	2,102	1,454	오 태 봉	광암 217		
146		112-3	답	1,769	1,238	김 창 수			
147		110	답	3,365	3,365	미등기		김 병 길	갑일 88
148		111-3	답	737	115	송 윤 석	갑북 413		
149		105-1	전	731	130	김 제 근	갑일 88		
150		106-1	전	886	100	박 상 국	갑일 87	서부 단협	춘궁 421-1(근저당권)
151		98	답	2,466	158	정 길 동	갑북 348	,	,
152		96-1	답	1,273	274	함 선 순	갑일 48		
153		97-1	답	4,532	1,714	정 길 동	갑북 348	한국전력	장남구 삼성동 87 지상권
154		97-2	답	658	658	한 승 은	성북구 하월곡동 90-291		
155		107-1	전	1,084	1,084	이 승 업	갑일 104		
156		107-4	수	43	43	국 (전설부)			

157	경기도 하남시 잠일동	107-3	수	17	17	이 승 업	잠일 107	국(건설부)	
158		107-2	대	390	390	"	"		
159		109-2	전	1,028	1,028	김 제 근	잠일 88	국(건설부)	
160		109-1	수	529	57	"	잠일 88		
161		114-15	수	985	187	박 정 열	감북 353		
162		114-8	답	185	14	"	"		
163		14-7	전	2,777	1,195	정 전 성	감북 346		
164		14-10	답	1,759	547	최 연 택	잠일 69		
165		14-12	수	46	46		국(건설부)		
166		15-3	도	155	115	미등기			
167		15-2	전	2,869	116	평주군			
168		401	도	436	180	국			
169		108-1	수	116	116	이 승 업	잠일 107	국(건설부)	
170		108-2	전	7	7	"	"		
171		403	도	278	278	국			
172		16-5	전	60	60	황 숙 자	잠일 154-2		
173		16-3	수	102	102		국(건설부)		
174		16-2	수	645	645	정 순 창	잠일 14	국(건설부)	
175		16-1	전	225	225	황 숙 자	잠일 154-2		
176		16-4	수	258	258		국(건설부)		
177		399	구	4,899	1,612	국			
178		17	수	126	126	미등기			
179		18-3	수	26	26		국(건설부)		

180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8-1	수	63	63		국(건설부)	국(건설부)	
181		18-4	답	3,388	1,224	조 성 문	서대문구 용암동 335-31		
182		19-10	전	2,093	1,180	이 인 경	감일 71		
183		19-3	수	102	102		국(건설부)		
184		19-1	수	40	40		,		
185		19-2	수	106	106	이 인 경	감일 71		
186		9-4	수	2,747	979	조 일 춘	광암 253		
187		19-4	수	36	36		국(건설부)		
188		19-9	대	527	527	이 인 경	감북 322-18		
189		19-11	대	369	369	김 창 수	감일 19		
190		19-6	전	331	331	이 초 연	감일 14-1		
191		19-5	수	33	33	미등기			
192		9-10	수	46	46		국(건설부)		
193		19-7	수	122	122		,		
194		19-8	전	26	26	이 인 경	감일 71		
195		9-9	수	23	23		국(건설부)		
196		20	전	1,805	921	정 봉 기	강동구 성내 219-36		
197		21	전	826	619	박 영 근	감일 47		
198		22-2	전	3,623	648	조종만외6인	광암 272		
199		22-3	전	2,380	1,022	이 승 연	광암 297		
200		22-1	수	53	53	미등기			
201		23-1	전	3,418	1,382	구 자 방	감일 291-2	한국전력	

202		23	수	7	7	구상원의외1인	감일 38	이 상 원 외 1 인	감일 1036-736
203		9-6	수	185	185		국(건설부)		
204		9-5	수	1,167	273	이 민 용	감일 38	국(건설부)	
205		8-1	수	965	389		국(건설부)		
206		8-2	답	3,574	3,574	이 인 경	감일 71		
207		24	전	2,126	216	방 영 근	강남구 미천동 166		
208		392	구	4,413	345	국			
209		26	임	545	158	미등기			
210		27	전	747	115	한 국 전 력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1		
211		산 2	임	140,140	1,310	"	강남구 삼성동 87	국(건설부)	
212		7-3	수	1,564	460	이 성 용	감일 48		
213		7-4	답	165	165	강 금 자	감일 249		
214		6-4	전	119	119	강 금 자	감일 249		
215		6-3	수	410	57		국(건설부)		
216		390	도	2,916	979	국			
217		5	전	2,149	360	김 민 수	감일 245		
218		4	답	1,537	446	강 성 출	감북 346		
219		3-6	전	1,322	244	이 성 채	감북 322-29		
220		3-2	전	601	259	이 재 환	강동구 평일동 312-1210		
221		산59-3	임	2,163	317	능성구씨종중	종로구 혜화동 5-27		
222		산59-39	수	1,525	1,525	"	감일 295		
223		산59-26	임	2,045	418	"	"		

224	경기도 하남시 갑일동	360-2	전	466	22	구 본 절	갑일 361		
225		360-6	수	969	56	"	"		
226		133-1	임	1,309	835	김 순 자	중구 충무로 2가		
227		133-2	답	10,628	7,185	박 순 정	갑일 146		
228		133-3	임	661	661	석 대 호	갑일 133-3		
229		133-5	임	332	231	송 상 준	강동구 성내 427-75		
230		159	전	2,122	582	강기만외1인	갑일 170		
231		160-1	공	3,855	2,962	㈜반도산업	갑일 160	제 일 은 행	(근저당권)
232		161-1	답	565	565	강경자외1인	갑일 414		
233		161-2	전	1,993	1,993	"	"		
234		162	답	314	314	"	"		
235		163-1	답	876	876	임 호 상	용산구 한남동 54	이 용 덕	강동구 성내동 86-17
236		163-2	전	1,213	1,213	이 광 노	강남구 대치동 307-2 은마 ㉠ 21동		
237		163-3	답	2,030	2,030	이근식외1인	강북 419		
238		163-4	답	2,321	2,321	김 용 천	강북 400-2	이 경 모	성동구 구의동 451-29
239		136-6	답	1,412	1,412	박 수 정	강북 413		
240		164-3	대	1,231	1,231	임 전 국	갑일 164-3		
241		164-4	답	775	775	임 춘 홍	강북 338-1		
242		164-5	대	288	288	임 전 국	갑일 164-3		
243		164-6	답	347	347	임 춘 홍	강북 338-1		
244		165-1	답	2,949	2,949	박 수 정	강북 413		
245		166-1	답	489	489	이근식외1인	강북 419		
246		167-1	답	516	516	이 계 무	용산구 이촌동 300-3		

247		168-1	구	63	63	박 수 회	감북 272		
248		168-2	전	1,580	1,580	이 부 웅	감북 308		
249		168-3	구	165	165	박 수 회	감북 272		
250		168-4	전	407	407	"	"		
251		169-1	답	298	298	김 문 웅	감일 168	이부웅	감북 308
252		169-2	전	1,177	1,177	이 배 출	감북 371		
253		169-3	답	3,299	2,579	"	"		
254		170-1	전	1,679	931	조 길 선	강동구 성내동 199-5		
255		170-2	전	2,949	1,581	김 도 선	감북 469		
256		170-3	대	631	530	강기만의1인	강남구 청담동 282-3		
257		178	대	3,121	1,321	정석태외1인	성동구 성수1가		성동구 천호동
258		408	구	4,017	2,860	국			미
259		409	구	7,418	2,448	국			미

용 지 집 계 표

소 재 지

감 복 동

(단위 : m²)

지목	소유권	사 유 지		국 유 지		계	
		필 지	편 입 면 적	필 지	편 입 면 적	필 지	편 입 면 적
계	8		4,619			8	4,619
답	3		916			3	916
전	4		1,893			4	1,893
대							
임							
구							
도	1		1,810			1	1,810
묘							
천							
철							
제							
수							
잡							
유							

경 기 도 보 제 2337 호

260	경기도 화남시 감북동	393-6	답	179	179	이 재 무	용산구 이촌동 300-2		
261		391-23	전	388	158	이근직외1인	감북동 419		
262		391-21	전	1,036	1,036	송 절 동	감북 423	조 수 형	구로구 계봉동 33-42
263		485	도	3,550	1,810	미등기			
264		375-3	답	375	375	임진청	감북 309		
265		391-24	전	760	34	최 인 섭	강동구 성내동 380-7		
266		375-1	답	362	362	박상가외1인	감일리 350		
267		391-22	전	665	665	송 절 동	감북동 423		

용 지 집 계 표

소 재 지

광 암 동

(단위 : ㎡)

지 목	소유권	사 유 지		국 유 지		계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59	59,401	10	8,354	69	67,755
답		35	44,124			35	44,124
전		8	3,936			8	3,936
대		3	761			3	761
임		3	3,585	1	748	4	4,333
구							
도				4	2,238	4	2,238
묘							
천				3	5,241	3	5,241
철							
제							
수		8	3,014	2	127	10	3,141
잡		2	3,981			2	3,981
유							

(164)

경 기 도 보

제 2337 호

268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297	대	912	216	이 상 철	광암 297		
269		299-1	대	99	99	윤상자의1인	강동구 성내동 156-3		
270		299-3	답	1,534	1,534	이간난의1인	강동구 성내동 165-2		
271		299-2	답	1,858	1,858	구본천의1인	감일 241		
272		299-4	수	1,418	1,418	"	"		
273		301	잡	4,456	3,866	한 국 전 력	강남구 삼성동 87		
274		296	답	509	316	박 명 회	감일 218		
275		300-1	답	3,061	746	북천경자의3	성북구 장위동 68-925		
276		300-2	수	856	93	국 (전 설 부)			
277		300-3	답	43	43	한 국 전 력	영등포구 여의도		
278		397	도	36	36	국			
279		303	잡	350	115	한 국 전 력	강남구 삼성동 87		
280		304	전	4,691	144	이 광 호	강남구 명일동 270-19대청 ㉠ 5-706		
281		305	답	1,418	1,044	"	" 304		
282		306	전	1,190	1,190	이 명 호	초이 470-1	한국전력	강남구 사성동 87 (지상권 설정)
283		308	전	1,474	144	모춘금의3인	광암 265	"	영등포구 여의도 11-791(지상권 설정)
284		307	전	2,017	388	이 승 덕	감일 40	"	강남구 청담동 산2 (지상권 설정)
285		396	천	2,797	2,246	국			
286		292-2	답	717	717	이 명 제	광암 산 56		
287		292-1	수	1,828	172	이 명 제	광암 산56	국(전설부)	
288		293-1	답	1,663	158	박 명 회	광암 218		
289		산69	임	4,665	144	유 태 익	종로구 명륜3가 16-46		
290		산70-1	임	13,686	748	국			

291	295	전	509	509	방 성 문	광암 28		
292	395	도	2,608	1,641	국			
293	294-1	답	555	216	박 규 상	광암 267	서 부 단 형	서부면 춘궁리 421-1 (근저당 설정)
294	291-3	수	1,220	216	이 성 용	감일 48	국 (건설부)	
295	291-4	답	1,590	1,590	"	감일 48	이 경 오	감일리 48
296	291-5	답	2,433	1,857	오 태 봉	감일 238		
297	291-2	수	93	60	"	"	국 (건설부)	
298	294-3	답	453	453	박 규 상	감일 267	서 부 단 형	서부면 춘궁리 421-1 (근저당권 설정)
299	294-2	수	463	34	국 (건설부)			
300	290-1	답	155	155	이명경외1인	감일 71		
301	290-2	수	1,279	862	"	"	국 (건설부)	
302	290-3	답	598	598	"	"		
303	286	답	3,180	1,745	경주김씨종중	종로구 창신동 468-1		
304	287-2	답	3,124	3,124	김 채 현	광암 239		
305	287-1	수	873	57	"	"	국 (건설부)	
306	288-2	답	579	187	김 선 화	강동구 길동 산1-1 삼익파크맨션 10층 6		
307	281	답	3,263	2,150	경주김씨종중	종로구 창신동 468-1		
308	280	답	2,043	677	이 승 업	감일 107		
309	279-1	답	1,980	1,267	조 종 출	광암 243		
310	278	답	2,063	562	경주김씨종중	종로구 창신동 468-1		
311	273-2	답	2,321	46	윤 석 철	광암 221		
312	273-1	답	1,111	360	최 상 대	광암 241		
313	277	답	3,332	475	황 윤 학	강남구 천호동 280-9		

314	383	천	7,299	2,563	국				
315	223-3	답	2,284	2,284	이 재 현	감일 333	려 상 열	성동구 거여동 181-86	
316	223-2	답	3,107	1,210	이 상 용	감일 70			
317	223-1	답	8,202	5,443	김 홍 전	감일 245	김성호외3인	이천군 백사면 오천리 408	
318	222-1	수	1,465	172	서 울 서				
319	222-4	수	311	57	"				
320	225-1	답	9,838	4,953	김석환외1인	감일 241			
321	224	답	1,732	590	김 경 복	상북구 돈암동 155-11			
322	226	답	2,212	1,382	조 종 화	감일 241	광주축협	광주읍 경안리 83-2 (근저당권 설정)	
323	227-2	답	1,517	1,080	윤 효 중	"			
324	227-1	답	2,317	950	정 동 철	감복 424			
325	230	전	4,681	864	충주석씨종중	마포구 동교동 179-25			
326	384	도	1,240	417	국				
327	232	답	2,820	1,685	김 중 열	경암 249			
328	232-1	답	2,820	2,345	김 경 복	서대문구 녹번동 101-3	서부단협	서부면 출궁리 421-1 (근저당권 설정)	
329	231	전	350	350	충주석씨종중	마포구 동교동 179-25			
330	363	도	843	144	국				
331	233	답	324	324	충주석씨종중	마포구 동교동 179-25			
332	234	대	446	446	"	"			
333	362	천	1,527	432	국				
334	211-2	전	750	347	김 경 복	감일 248			
335	산34-1	임	12,198	2,491	윤 현 승	감일 240			
336	산34-3	임	3,372	950	정 중 준	성동구 용담동 12-4			

용 지 점 계 표

소 재 지

출 공 등

(단위 :㎡)

지 목	소유권	사 유 지		국 유 지		계	
		필 지	편 입 면 적	필 지	편 입 면 적	필 지	편 입 면 적
계		159	163,495	11	4,587	170	168,082
답		68	51,471			68	51,471
전		48	43,618	1	393	49	44,011
대		3	910	1	268	4	1,178
임		25	59,173			25	59,173
구		2	296	4	2,192	6	2,488
도		6	1,537	4	1,674	10	3,211
묘		2	736			2	736
천		1	4,276			1	4,276
철							
제							
수		3	1,045	1	60	4	1,105
잠							
유		1	433			1	433

(168)

경 기 도

보

계

2337

호

337	경기도 하남시 출궁동	산40-2	입	227,405	2,001	이 옥 순	강남구 논현동 267-23	김 금 자	관악구 신림동 457-13
338		산485-2	전	2,698	2,698	정 상 태	춘궁 303		
339		483-2	입	1,425	*244	민 서 기	동대문구 전농동 152-112		
340		483-1	전	2,152	934	정 상 태	춘궁 303	김 금 자	관악구 신림동 457-13
341		484	답	1,071	1,071	"	"	유 한 은	중구 남대문로2가 130 불광동 저점 (근저당원)
342		485-1	전	2,982	2,622	남 광 현	동부읍 하산곡 45	김 성 준	춘궁 401
343		482	표	633	635	미등기			
344		480-5	답	1,973	1,598	문 영 기	춘궁 303		
345		603	구	1,329	792	국			
346		480-4	답	1,974	302	문 용 길	"		
347		479	전	1,577	144	조 송 원	춘궁 303		
348		477	전	1,263	1,263	김 창 용	춘궁 401		
349		476	전	1,058	288	조 주 형	춘궁 317		
350		475	표	866	101	미등기			
351		478-6	전	949	691	안 영 기	춘궁 411		
352		478-5	전	926	835	안 영 기	춘궁 411		
353		478-1	전	1,537	922	조 병 옥	춘궁 520		
354		478-4	전	1,927	1,927	이 영 춘	하사 창 69		
355		474	전	375	375	조 영 환	춘궁 410-7		
356		474-1	전	1,761	43	김 정 환	춘궁 389		
357		478-2	전	1,914	1,914	조 송 원	춘궁 303		
358		478-3	구	350	244	미등기			
359		480-3	답	651	158	방 현 규	춘궁 315-3		

360		480-2	구	228	52	민 병 수	종로구 경운동 68		
361		480-1	담	456	86	방 현 규	충궁 315-3		
362		453-1	담	1,276	773	조 용 원	충궁 308		
363		453-2	전	2,122	2,122	"	"		
364		456	전	1,299	1,168	이 중 실	충궁 478-5		
365		457-3	전	2,129	244	박 영 환	강동구 성내동 432-1		
366		457-2	전	1,048	259	전 순 임	충궁 303		
367		457-1	전	942	360	정 관 식	중구 신당동 40-519	김 재 춘	강동구 둔촌동 511-9
368		454-3	담	512	17	김 형 태	충궁 303		
369		454-2	담	1,015	518	박 정 순	충궁 389	조 병 옥	충궁 520
370		454-1	담	1,316	1,205	안 영 기	충궁 411		
371		452-1	담	1,739	893	김해김씨종중	충궁 산 43-1		
372		451-3	담	1,531	927	"	"		
373		450	담	1,696	1,567	"	"		
374		592	천	9,499	4,276	미등기			
375		447	전	1,676	691	김해김씨종중	충궁 산 43-1		
376		448	전	1,051	1,051	"	"		
377		산44-14	임	3,669	692	이 규 홍	동대문구 신설동 205-42		
378		산44-24	임	298	26	대한예수교장 로회영미교회	성동구 상왕십리 524		
379		산43-1	임	16,562	5,293	김해김씨종중	충궁 산 43-1		
380		440	전	456	57	"	"		
381		442-1	전	2,026	288	방 인 옥	충궁 315		

382		439	견	331	331	방 석 만	출궁 196	방연홍	출궁 135
383		산44-12	임	20,231	9,863	김해김씨종중	출궁 산 43-1		
834		443-2	답	860	273	방 인 옥	출궁 315		
385		311-1	답	2,393	115	조 병 규	출궁 303		
386		311-2	답	2,159	316	김영숙외1인	강동구 잠실 19 ㉠ 43-510		
387		산44-11	임	11,901	11,217	손 몽 순	용산구 이태원동 산 13		
388		320-2	답	1,550	1,550	김 순 덕	출궁 317		
389		319-4	답	1,712	576	방 인 섭	출궁 171		
390		319-2	도	149	96	방 연 화	출궁 204		
391		320-1	도	89	89	김 순 덕	출궁 317		
392		산44-10	임	2,678	202	홍 길	종로구 명륜2가 69		
393		338	답	906	144	조 송 원	출궁 303		
394		337-1	답	2,003	72	김 영 현	출궁 341	서부단협	출궁 421-1
395		324-2	도	516	173	장 영 순	출궁 389		
396		572	도	803	316	미등거			
397		324-1	수	529	288	장 영 순	출궁 389	국(건설부)	
398		323-2	수	311	311	김 순 덕	출궁 317		
399		322-3	수	60	60	국(건설부)			
400		321-1	답	2,089	144	민 성 기	출궁 303		
401		322-4	답	393	393	"	"		
402		322-2	유	433	433	"	"		
403		323-1	답	99	99	김 순 덕	출궁 317		
404		325-2	답	129	129	"	"		

405	325-4	수	3,164	446	·	·	국(건설부)	
406	322-1	답	3,071	3,071	조 득 형	출궁 316-1	남 방 북	강동구 가락동 479 가락 시영④ 20동 207호
407	326-1	답	1,200	43	정 수 덕	출궁 303		
408	571	구	8,003	320	국			
409	570	도	3,005	633	미등기			
410	259-5	답	1,828	100	방 금 례	출궁 215		
411	261	답	1,210	1,210	김 봉 전	출궁 267-2		
412	260-2	답	876	761	방 우 식	출궁 222		
413	260-3	답	671	513	·	·		
414	262-2	답	529	529	김 봉 전	출궁 267-2		
415	262-1	전	132	132	·	·		
416	260-1	전	1,359	1,359	방 우 식	출궁 222		
417	263-1	답	800	407	조 흥 식	성동구 신당동 57-9		
418	264-2	답	1,104	418	조 송 원	출궁 303		
419	264-3	답	165	28	출 궁 3 리	출궁 264-3		
					새마을회관			
420	267-5	전	1,658	26	박 동 주	출궁 316-1		
421	257	전	1,663	806	방 금 례	출궁 215		
422	산28-1	임	7,438	4,708	이 지 연	중구 광희2가 262-2		
423	산28-3	임	5,058	1,915	이 기 열	성동구 무학동 57		
424	산29-2	임	3,868	1,656	미등기		이 정 구	출궁 215
425	산27	임	2,579	677	정 수 천	출궁 215		
426	212	전	1,388	72	유 장 회	동부읍 덕풍리 357-39		

427	214	전	645	158	방 석 규	출궁 204		
428	산26-1	임	2,660	2,415	황 영 옥	영등포구 여의도 21-1		
429	213	전	2,069	504	방 창 만	출궁 217		
430	산26-2	임	298	115	방창길외5인	동대문구 신설동 89		
431	산26-4	임	1,009	360	선 석	강동구 둔촌 주공 ㉠ 20동 203호	전 석 한	강동 둔촌 주공㉠ 206동 203호
432	195-1	전	1,940	271			방 연 수	출궁 195
433	산26-3	임	1,885	1,885	강 삼 용	강동구 상일동 393-4		
434	207	전	1,058	490	조 형 원	출궁 314	이 경 회	동대문구 전농2동 622-2
435	208	답	3,048	129	"	"		
436	206	답	314	314	조 형 원	출궁 314		
437	132-1	답	2,549	777	방 연 목	출궁 193		
438	137-2	답	2,337	43	박수윤외1인	동작구 흑석동 191-8		
439	132-6	답	1,742	1,627	김 현 태	성동구 송정동 73-670		
440	137-1	답	3,306	2,116	조 갑 석	출궁 273		
441	568	도	1,498	230	머둥기			
442	132-5	답	1,372	1,166	왕 교 석	출궁 114		
443	567	도	506	490	국			
444	205	임	198	198	최 영 옥	강동구 둔촌 주공 ㉠ 102-303		
445	산23-1	임	750	187			민 석 기	동대문구 전농동 152-112
446	133	답	331	72	방 학 규	출궁 43-2		
447	134	답	1,679	273	"	"		
448	136	답	2,790	1,621	"	"		
449	139	답	284	284	윤 자 원	출궁 139	윤 석 현	출궁 32

450	경기도 하남시 출궁동	140	답	965	33	윤 종 옥	출궁 32-2	동부단협	출궁 421-1 (근저당권)
451		141	답	899	360	,	,		
452		142	답	1,937	1,937	윤 자 원	출궁 9	윤 석 현	출궁 32
453		143	답	1,319	331	방 영 은	출궁 203	방 명 규	성동구 중곡동 242-22
454		564	구	9,521	562	국			
455		146-2	답	820	820	조 중 환	출궁 100		
456		146-1	답	1,501	1,501	조 병 덕	출궁 100		
457		148	답	3,403	2,985	방 시 규	출궁 90	서부단협	출궁 421-1 (근저당권)
458		148-1	답	1,351	562	방 학 규	출궁 32		
459		149	답	2,704	2,027	윤 시 학	출궁 67	유 계 동	용산구 한강로1가 61-6
460		562	도	1,855	133	국			
461		47	답	3,478	1,109	손성열외5인	출궁 106		
462		560	구	1,458	518	국			
463		561	도	1,260	773	국			
464		25-3	답	2,552	2,552	방 연 규	출궁 199	서부단협	출궁 421-1 (근저당권)
465		25-2	전	764	764	,	,		
466		26-3	답	684	684	방 정 만	출궁 135		
467		27	전	1,230	1,230	,	,		
468		44	전	1,160	1,160	유 영 준	용산구 청파1가 11-314	동부단협	신장 432 (근저당권)
469		45-2	전	188	188	정 숙 자	출궁 45-5		
470		46	답	826	274	염 귀 산	출궁 123		
471		45-3	답	469	25	정 숙 자	출궁 45-5		
472		43-1	답	1,673	403	방 학 규	출궁 43-2		

473	32-2	대	813	24	윤 종 현	출궁 32
474	32-1	임	10,790	3,816	윤 자 원	실촌 장리 406
475	28	전	1,798	1,798	방 찬 식	출궁 216
476	26-2	전	1,068	1,068	방 연 승	출궁 199
477	25-1	답	879	879	방 종 식	출궁 156-2
478	22	답	2,003	590	기재유씨종중	동부 하산곡리 172
479	24	답	132	132	조 익 환	출궁 100
480	26-1	답	691	691	방 연 승	출궁 199
481	23-2	답	1,998	1,998	조 익 환	출궁 100
482	23-3	전	2,137	1,195	이창선외7인	교산 227
483	549	도	278	278	국	
484	29-1	답	1,190	1,190	전외이씨종중	출궁 29
485	23-1	전	1,283	677	방 종 식	출궁 156-2
486	13	전	549	360	"	"
487	12-2	답	367	367	박 덕 환	동부 덕동 419-23
488	12-1	대	466	466	"	"
489	11-1	답	592	592	"	"
490	29-2	전	4,628	4,628	전외이씨종중	출궁 29
491	29-3	대	420	420	"	"
492	11-2	전	2,377	2,377	윤 종 판	출궁 9
493	10	답	1,001	1,001	임 종 수	출궁 155
494	9-1	전	214	214	"	"
495	8-3	전	393	393	국 (건설부)	

496	경기도 하남시 출궁동	8-1	대	268	268	국(건설부)	
497		9-2	전	664	664	윤 중 관	출궁 9
498		8-2	전	1,223	1,223	"	덕봉
499		30	전	757	757	전외이씨종중	출궁 29
500		31	임	9,917	9,917	이봉상외5인	용신구 한남동 산15
501		7	임	921	921	기계유씨종중	동부 하산곡 172
502		33	임	741	259	이 전 우	강남구 논현동 124-21
503		33-1	임	3,310	130	이 상 규	관악구 상도동 134-900
504		34	전	270	270	전 영 모	출궁 37
505		산1-1	임	3,904	274	방 호 식	출궁 216
506		산1-2	임	1,699	202	양 영 식	동부 신장 427-62

용 지 집 계 표

제 2337 호 경 기 도 보 (177)

소 재 지	초 일 동
-------	-------

(단위 : ㎡)

지 목	소유권	사 유 지		국 유 지		계	
		필 지	편 . 입 면 적	필 지	편 입 면 적	필 지	편 입 면 적
계		6	662			6	662
답		3	357			3	357
전		2	227			2	227
대							
임							
구							
도							
묘							
천							
철							
수							
잡							
유							
과		1	78			1	78

507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150	전	49	49	김 승 현	초일 236	이 재 환	강동구 명일동 312-140
508		151	답	140	140	이 봉 우	종로구 돈의동 137	김 용 옥	초일 227-1
509		146	과	6,521	78	안 문 환	초일 233		
510		145	전	1,634	178	조 수 동	초일 235		
511		143	답	265	77	이 상 옥	강동구 둔촌동 67-7		
512		142	답	4,485	140	이 용 선	초일 247		

용 지 점 계 표

제 2337 호

경 기 도 보

(179)

소 재 지

덕 풍 동

(단위 : m²)

지 목	사 유 지		국 유 지		계	
	필 지	편 입 면 적	필 지	편 입 면 적	필 지	편 입 면 적
계	57	35,588	9	2,354	66	37,942
담	25	18,001			25	18,001
전	9	6,585			9	6,585
대	4	674			4	674
임	3	9,208			3	9,208
구			3	687	3	687
도	11	644	6	1,667	17	2,311
묘						
천	4	264			4	264
철						
제						
수						
잡	1	212			1	212
유						

513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11-8	전	833	833	방 연 우	출강 197		
514		611-3	전	185	185	방 서 규	"		
515		619	도	1,766	634	국			
516		611-4	전	982	65	윤 종 관	출강 9		
517		611-5	전	2,580	1,827	방 연 수	출강 197		
518		611-7	전	2,132	2,132	윤 종 호	강동구 성내동 449-12		
519		611-10	답		1,541				
520		610-6	도	56	56	최 영 학	강동구 철호동 362-33		
521		610-8	도	99	99	국(건설부)			
522		610-15	도		19				
523		610-9	답	96	96	최 영 학	강동구 철호동 362-33		
524		611-1	전	1,428	1,428	윤 종 호	강동구 신내동 449-12		
525		610-2	답	1,766	1,766	구자윤외2인	용산구 후암동 102-32		
526		610-1	답	575	575	조 수 길	출강 100	최 선 제	동부읍 덕풍리 445
527		611-2	전	2,149	72	윤 종 관	덕풍 611-6	평리단협	서부면 출강리 421-1 (근저당권 설정)
528		613	답	3,961	1,339	최 선 제	덕풍 445	최 선 제	성동구 능동 224-18
529		614	답	2,560	1,123	"	덕풍 445	"	"
530		614-22	도	7	7	손 순 근	영리 128		
531		668	도	825	115	국			

532		529-2	답	112	48	최 선 제	덕풍 445	최 선 제	성동구 능동 224-18
533		529-4	전	17	17	"	"		
534		614-6	답	307	226	미등기			
535		산74	임	3,319	2,397	유전대의1인	덕풍 419-20		
536		600	답	241	241	유 역 군	덕풍 445		
537		602-8	답	727	727	경기도항공	종로구 명륜3가 53	경기도항공	수원시 교동 43
538		602-6	답	2,258	461	이 홍 배	강남구 청담동 134-9 한양 ㉠ 5동 701호		
539		602-5	답	535	144	미등기			
540		602-4	답	1,008	1,008	임 종 수	춘궁 155	북 동	춘궁 157-2
541		602-3	답	423	423	"	"	"	"
542		602-10	답	3,432	2,798	김 한 구	덕풍 555		
543		602-9	답	3,745	2,131	전주이씨종중	연천 관인 서정 247	가계유씨종중	동부읍 덕풍리 439
544		677	도	1,231	634	국			
545		605	답		576				
546		606-1	답	1,648	144	가계유씨종중	덕풍 172		
547		607	답	1,368	634	전주이씨종중	춘궁 29		
548		608-1	답	369	369	윤 중 관	덕풍 611-6		
549		667-3	구	569	504	국			
550		546-11	답	787	33	미등기			

551	546-12	답	1,587	936	방 연 성	출궁 197		
552	546-13	답	599	599	이 영 호	강남구 내곡동 1-149 군인 ㉔ 207		
553	546-10	답	1,144	40	방 학 규	출궁 43-2		
554	546-16	도	23	23	방 연 성	출궁 197		
555	546-15	도	56	56	방 학 규	출궁 43-2		
556	666	도	113	113	국			
557	540-8	도	10	10	전주이씨종중	강서구 방화동 598-1		
558	541-4	도	69	69	이 근 업	관악구 동작동 307		
559	541-2	대	1,448	173	오 동 근	강동구 신천동 17-6 크로바 ㉔ 2동 903호	좌동	좌동
560	540-3	임	8,717	5,990	전주이씨종중	강서구 방화동 598-1		
561	540-4	도	226	226	,	,		
562	533-3	도	109	109	,	,		
563	533-2	전	26	26	전주이씨종중	,	이 훈 종	덕풍리 445 (지상권 설정)
564	533-1	잡	212	212	,	,	,	,
565	537-1	임	10,258	821	기계유씨종중	덕풍 439		
566	534-13	대	979	202	한대 화지 피	덕풍 524	한일은행	남대문로2가 175 (근저당권 설정)
567	534-14	대	126	126	,	,	,	,
568	534-2	천	26	26	미등기			
569	534-7	도	33	33	한대 화경금속	관악구 노량진 114-5	한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30 (지상권 설정)

570		530-2	천	119	119	미등기			
571		530-6	천	10	10	,			
572		666-1	도	129	72	국			
573		524	대	14,195	173	취대 화 저 피	덕봉 524	한 일 은 행	중구 남대문로2가 130 (근저당권 설정)
574		523-4	도	36	36	취대 화 경 금 속	관악구 노량진 114-5		
575		523-2	천	109	109	미등기			
576		667	구	295	115	국			
577		667-1	구	68	68	국			
578		602-1	답	3,279	23	방 승 식	출공 199		

용 지 집 계 표

소 재 지

천 현 · 동

(단위 : ㎡)

지 목	소유권	사 유 지		국 유 지		계	
		필 지	편 입 면 적	필 지	편 입 면 적	필 지	편 입 면 적
계		23	4,544	6	331	29	4,875
담		15	2,535	1	33	16	2,568
전		2	240	2	170	4	410
대		1	547			1	547
임							
구				1	49	1	49
도							
묘							
천		4	920	2	79	6	999
철							
제							
수							
잠		1	302			1	302
유							

(184)

경 기 도 보

계 2337 호

579	경기도 하남시 철현동	603-3	천	762	86	경 기 도	
580		603-4	천	44	44	국	
581		603-5	천	35	35	국	
582		293-2	천	2,447	547	유 역 군	덕풍 445
583		603-7	천	5,004	173	경 기 도	
584		295-3	답	457	230	유 일 준	덕풍 439
585		296-4	답	387	101	미동기	
586		296-3	답	104	104	유 역 군	덕풍 445
587		296-2	답	140	140	유 일 준	덕풍 439
588		296-12	답	316	18	유 역 군	덕풍 445
589		296-1	답	340	202	,	,
590		290-5	잡	523	302	한 영 돈	철현 290-1
591		290-1	천	484	114	안 석 회	,
592		604	구	897	49	국	
593		289-6	천	8,774	55	국(국세청)	
594		250-2	답	2,251	33	국	
595		250-3	답	366	108	이 용 운	철현 255-7
596		250-1	답	1,517	112	백 복 너	풍산 산 16
597		253-1	답	84	84	김 인 태	강남구 삼성동 산 45-545

598	경기도 하남시 철현동	253-3	답	2,070	490	김 연 봉	신장 432
599		255-5	답	209	76	미동기	
600		254	전	1,418	216	유 용 근	덕릉 441
601		255-3	답	400	274	김 연 화	수원 메교동 77-101 경인연립 1-101
602		279-4	답	3,437	346	이 순 희	강남구 이동 243
603		279-2	답	856	115	방 현 국	성동구 중곡동 150-216
604		289-11	전	2,706	115	국(국세청)	
605		289-2	전	314	24	김 용 중	교산 166
606		289-8	답	135	135	"	"
607		246-1	대	8,095	547	김 인 태	강남구 삼성동 산 45-545

번호	소재지		구조	용도	규모 (수량)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지번				주소	성명		
36	서울강동구장지동	104	천막목조	건사	9.9㎡		이상구		
37			"	주택	12.0㎡		박재석		
38			스레트목조	창고	34.0㎡		박남수		
1			물탱크		37.8m ³		감일3리주민		
2	하남시 감일동	376	천막목조	주택	35.0㎡		이순옥		
			"	"	12.5㎡				
3			"	"	7.5㎡		최만규		
4			기와벽	"	72.0㎡		최길용		
			스레트벽	창고	15.0㎡				
			"	"	10.0㎡				
			기와벽	주택	21.0㎡				
			스레트벽	"	12.5㎡				
5	하남시 감일동	279	비닐하우스	주택	33.1㎡		이용재		
			"	"	35.4㎡				

6	하남시 감일동	173	스레트브릭		3 5. 4 m ²		박 선 병		
		-1	"	사 무 실	3 7. 3 m ²				
			브릭와가	공 장	3 8. 2 m ²				
			브릭	공 장	1 2 1. 9				
7		170	브릭와가	담 장	1 7 6 m		강 기 만		
		-3	"	주 택	54.9m ²				
			브릭스레트	공 장	92.8m ²				
			"	"	68.8m ²				
			"	"	47.6m ²				
			"	"	86.9m ²				
			브릭	창 고	15.2m ²				
8		150	브릭와가	담 장	156.4m		최 원 백		
		-1	"	주 택	70.7m ²				
			브릭스레트	"	65.2m ²				(주)
			"	탈 의 실	3.4m ²				반 도
				기 속 사	61.8				산 업

9		156	브릭스레트	공 장	563.6㎡			
			"	창 고	121.5㎡			
			브릭	담 장	246.4㎡			
			브릭와가	주 택	61㎡			
			브릭스레트	"	73.4㎡			
10	하남시감일동	156	"	우 사	56.6㎡			
			브릭스레트	우 사	60.2㎡			
			"	"	55.7㎡			
			목조스레트	창 고	14.4㎡			
			브릭	담 장	127.5㎡			
11		153	브릭와가	주 택	66㎡			
			"	"	56.8㎡			
			브릭스레트	우 사	134.8㎡			
			"	"	134.8㎡			
			브릭스레트	주 택	63.3㎡			
12		산25 -1	"	창 고	18.6㎡			
			"	창 고	14.6㎡			
			"	화 장 실	3.2㎡			

13		55	브 렉 와 가	주 택	44.8㎡		김 수 환	
		-3	"	"	78.2㎡			
14		154	브렉스레트	우 사	162.2㎡		서 홍 원	
		-3	"	우 사	116.4㎡			
15		145	목 조 와 가	주 택	62.6㎡		윤 석 봉	
		-7	브렉스레트	주 택	99.3㎡			
			브 렉	담 장	45m			
16		146	목 조 와 가	주 택	48.3㎡		김 광 용	
			비닐하우스	창 고	7.6㎡			
			"	우 물	5.0㎡			
			브렉스레트	화 장 실	3.4㎡			
			브 렉	담 작	51m			
17	하남시 감일동	141	벽 돌 와 가	주 택	85.2㎡		김 용 무	
			브 렉	담 장	58.8㎡			
18		107	목 조 와	주 택	47.8㎡		이 승 업	
		-2	브렉스레트	주 택	38.5㎡			
			브 렉	담 장	73.8㎡			
19		19	브 렉 와 가	주 택	75.3㎡		이 연 경	

			브릭스레트	주 택	60.5㎡				
			"	주 택	37.6㎡				
			"	창 고	5.4㎡				
20		19-11	목 조 와 가	주 택	60.7㎡		김 창 수		
			브릭스레트	주 택	33.0㎡				
21		145-2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6,912㎡		강 무 용		
							하 재 욱		
22		134-2	"	"	2,590㎡		강 무 용		
							이 용 근		
23		107-2	"	"	661㎡		이 승 업		
24		18-4	"	"	2,404㎡		박 상 욱		
25	하남시 광암동	197	목조스레트	주 택	80㎡		이 승 연		
			브릭스레트	창 고	13.9㎡				
			브 렉	담 장	30.6m				
26		299-1	목 조 와 가	주택상점	33.6㎡		윤 욱 분		
			브 렉	담 장	23.4m				
27	하남시 광암동	299-1	브릭스레트	주 택	34.7㎡				세가
			브 렉	담 장	30.1				

28		301	브릭스라브	경 비 실	7.8㎡		한국전력	
29		232-1	목 조 와 가	주 택	42.6㎡		김 종 성	
			브릭스레트	창 고	16.0㎡			
			브릭스레트	화 장 실	4.0㎡			
			브 렉	담 장	21.6㎡			
30	하남시 춘궁동	478-5	브릭스레트	주 택	19.8㎡		탁 동 진	
			브릭스레트	화 장 실	6.6㎡			
31		산43-1	"	창 고	153.7㎡		김 동 원	
			"	주택및창고	104㎡			
32		195-1	비닐하우스	개사육장	183.6㎡			
33		산23-1	비닐하우스	"	19.8㎡		최 명 옥	
34		12-1	브릭스레트	주 택	73.2㎡		박 덕 환	
			"	우 사	137.8㎡			
			"	화 장 실	2.9㎡			
35		29-2	목 조 와 가	주 택	62.8㎡		이 영 호	
			"	"	26.3㎡			
			브릭스레트	화 장 실	9.3㎡			
			V.H	창 고	12.8㎡			
			브 렉	담 장	66.0㎡			

36		43-1	V . H	버섯재배	86.4㎡		방 연 만	
37	하남시 덕풍동	541-2	브릭스레트	주 택	26.6㎡		최 용 화	
			브릭	담 장	28m			
38		533-1	목 조 와 가	주 택	67.9㎡		이 훈 종	
			벽 돌 와 가	"	38.4㎡			
			브릭	담 장	58.5m			
39		534-14	벽 돌 와 가	주 택	82.2㎡		정 재 경	
			"	주 택	38.4			
			브릭	담 장	49.5m			
40	하남시 천천동	290-5	브릭 와 가	주 택	21.1㎡		한 영 돈	
			브릭스레트	우 사	74.4㎡			
			브릭	담 장	53.1m			

물 건 조 서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41	하남		감일	주택	벽돌	104		임진국	164-3				165-1
				상점	와합석	68		"					
42				주택	벽돌	105.6		임춘홍	164-5				
				식당	와합석	49.3		"	"				
43				주택	벽돌	61.2		석대호	133-3				
				상점	와합석								
44				주택	브릭	129.8		김순자	133-1				
				식당	스레트								
				담장	브릭	42		"	"				
				채소	V.H	2,949		박인울					
45	하남		천현	주택	벽돌	21.1		한영돈	290-5				
				와합석									
46				우사	브릭	74.4		"	"				
				담장	브릭	53.1		"	"				
						3,657.9							

(194)

경 기 도 포

제 2337 호

고 시

광주군 고시 제 6 호

경안도시계획시설(동성학원)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1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 24 조 3항 규정에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광주군청 도시과 및 광주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2. 6.

광 주 군 수

1. 허가 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당초 :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 산18-1번지의 9필지

변경 :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 산18-1번지의 4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학교 - 경화여자 중·상업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서명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번지 한성아파트 비동 308호

성명 : 학교법인 동성학원 이사장 김 득 연

라. 면적 및 규모

(1) 면 적

결정면적	당초	-	44,127㎡
	변경	-	114,482㎡
시행승인허가면적	당초	-	44,127㎡
	변경	-	114,482㎡

(2) 규 모

토지이용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 축 부 지	13,943㎡	60,398㎡	
운 동 장 부 지	9,576㎡	26,090㎡	
도 로 부 지	1,540㎡	4,580㎡	
녹 지 부 지	19,058㎡	20,345㎡	
주 차 장 부 지		2,814㎡	
계	44,127㎡	114,227㎡	

마.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주소

: 아래 토지조서 참조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 허가일로 부터 1년

지 번	지목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지 적	편입면적			
43	답	2,337	1,072	△ 255	817	도로계획선편입
44-1	임	1,207	200		200	
50	답	3,131	1,220		1,220	
52	학	225	225		225	
-1	"	3,299	3,299		3,299	
53	답	3,458	3,000		3,000	

	-1	학	655	655		655	
	-2	전	331	331		331	
	-3	대	301	301		301	
	-4	전	813	813		813	
산 18	-1	임	28,760	25,000		25,000	
산	-3	임	298	298		298	
산 24	-1	"	1,686	1,247		1,247	
산	-8	"	4,760	4,760		4,760	
산	-10	"	65,455	20,820		20,820	
산	-11	"	7,438	7,438		7,438	
산	-23	"	34,116	700		700	
산	-24	"	2,479	1,979		1,979	
산	-25	"	298	210		210	
산 24-28	임		20,132	20,132		20,132	
	-36	"	3,967	1,210		1,210	
	-37	"	4,562	2,500		2,500	
504		구	1,160	526		526	
505		"	526	485		485	
43필지			209,930	114,482		114,227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30 호

K.S표시 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월 2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동양수지
2. 소 재 지 :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271-30
3. 대 표 자 : 정연환
4. 허가번호 : 4128
5. 규 격 번 호 : KSM 3808
6. 품 명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7. 종류및등급 : 허가 전종류 및 등급
8. 취 소 일 자 : 1990. 2. 5
9.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31 호

안양 도시계획 제8지구(2,3공구)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4 조, 제 47 조, 제 5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하였기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를 안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0년 1월 일

경 기 도 지 사

가. 사 업 목 적 :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나. 사업의명칭 : 안양 제8지구(2,3공구)토지구획정리사업

다. 위 차 : 안양시 호계동, 군포시, 산본, 금정 당리 각일부지역

라. 시행면적 :

지구명	공구명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제8지구	2공구	446,553	증12,657.40	459,210.40	
	3공구	1,235,272	증 5,194.10	1,240,466.10	
계		1,681,825	증17,851.80	1,699,676.50	

마. 시 행 자 : 안양시장

바. 시행기간 : 1980. 3. 17. - 1990. 12. 31.

사. 사업 계획 변경 조서(총괄)

명칭	기정	변경	증	감	비고
총 면 적	1,681,825.00	1,699,676.50	17,851.50		
일 반 지	733,955.60	741,766.82	7,811.22		
도 로	435,962.38	434,631.38		1,331.00	
공 원	39,336.10	39,336.10			20 개 소
시설녹지	13,287.32	9,555.50		3,731.82	
시 장	21,930.20	22,140.30	210.10		기존2개소신설3개소
학 교	54,741.60	54,691.10		50.50	기존1개소신설2개소
수 로	59,427.40	64,636.40	5,209.00		
관 용 지	3, 377.40	2,972.00		405.40	
체 비 지	319,807.00	329,946.90	10,139.90		
계	947,689.40	957,909.68	23,370.22	5,518.72	

평균감보율 : 지정 : 52.41% = 52,000% 최저감보율 : 25%
 변경 : 51.63% = 52,000% 최고감보율 : 70%

아. 시설별 변경 조서 : 별 첨

자. 관 계 도 서 : 별첨과 같음. 생 략

아. 시설별 변경 조서

1. 공원 변경 조서

단위 : m²

기 정		변 경		증 감	확정측량에의함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210브럭	640.80m ²	210브럭	640.80m ²		확정측량에의함
153	2,545.40	153	2,546.20	0.80	"
129	1,500	129	1,504.10	4.10	"
143	1,500	143	1,485.90	14.20	"
159	1,500	159	1,488.30	11.70	"
111	2,500	111	2,501.80	1.80	"
156	2,500	156	2,487.80	12.20	"
102	1,500	102	1,590.00	90.00	"
92	1,500	92	1,500	0.80	"
83	1,500	83	1,481.60	18.40	"
67	1,260.20	67	1,261.60	1.40	"
61	1,500	61	1,490.40	9.60	"
54	1,000	54	996.50	3.50	"
41	1,500	41	1,500.80	0.80	"
45	1,500	45	1,495.80	4.20	"
24	1,500	24	1,514.80	14.80	"
22	1,600	22	1,597.40	2.60	"
18	1,000	18	984.90	15.10	"
3	1,600	3	1,597.20	2.80	"
77	9,689.70	77	9,669.50	20.20	"
계	39336.10		39,336.10		"

2. 도로 변경 조서

가 로			폭원	연 장	면 적㎡	시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대로	2	4	30m	677m	23,965㎡	중3-8	지구계	2공구
"	3	6	25	1,206	30,150	지구계	지구계	"
"	2	2	30	606	18,186	지구계	대2-4	3공구
"	2	4	30	897	24,388	중2-14	지구계	"
중로	2	14	15	289	4,335	지구계	대2-4	"
"	3	8	12	1,339	16,068	대2-4	대3-6	2공구
	계			5,014	117,092			

3. 학교 지적 승인 조서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2	23,367.10	2	23,266.50		100.60	기존
140	13,531.70	140	13,500.20		31.50	신설
64	17,842.80	64	17,924.40	81.60		신설
	54,741.60		54,691.10			

4. 시장 지적 승인 조서

단위 : m²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38브럭	1,500	38브럭	1,500.90	0.90		신설
49	2,000	49	1,996.80		3.20	"
55	6,322.30	55	6,561.10	238.80		기존
56	9,307.90	56	9,286.70		21.20	"
82	2,800		2,794.80		5.20	신설
계	23,580.20		23,790.30			

5. 수로 지적 승인 조서

단위 : m²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2공구	59,427.40	2공구	64,636.40	5,209		
계	59,427.40		64,636.40			

6. 관용지(공용의 청사)지적 승인 조서

단위 : m²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32브럭	2,450	32브럭	2,188.50	261.50	군포시청	
10	400	10	0.70		우체국	
33	250	33	132.80		파출소	
55	277.40	55	0			
계	3,377.40		2,972			

7. 시설 녹지 지적승인 조서

단위 : m²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233.73		0			중2-14호선북측
	586.23		0			"
	502.65		0			"
	174.65		0			"
	1,935.36		0			중2-14호선남측
	262.50		0			"
99-1	1693.60	99-1	1,695.20	1.60		대2-2호선남측
100-1	7,889.20	100-1	7,860.30		38.90	대2-2호선남측
계	13,287.32		9,555.50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33 호

전기용품안전관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2. 7.

경 기 도 지 사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제조구분	소재지
선진전기	김철식	3-7-174	전열기구류	부천시 중구 삼정동 217-4
(주)대결	한기봉	3-10-93	광원용융기 계기구류	부천시 중구 삼정동 222-13
상산전자	주경숙	3-7-179	전열기구류	부천시 중구 삼정동 266-2

끝.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34 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 37 조의 규정에 의거 어법권포기 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령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0년 1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어업권자		어 장		포기사유 수령	수리 일자
	주 소	성 명	위 치	면 적		
부천양식 제11호	웅진군영 흥면내리 1번지	영흥법인 어촌계장 목영직	웅진군영흥 면선제리 지선	300,000	보상금	90.1

경기양식 689호	"	"	"	50,000	"	"
" 814호	"	"	"	300,000	"	"
" 874호	"	"	"	200,000	"	"
" 875호	"	"	"	240,000	"	"
" 878호	"	"	"	150,000	"	"
" 914호	"	"	"	100,000	"	"
" 915호	"	"	"	50,000	"	"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35 호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존속기간연장허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합니다.

1990년 1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양식품종 (채포물)	어 장		어업권자		연장허가 기 간
		위 치	면 적	주 소	성 명	
제 1 종 공동95호	해삼	웅진군덕적면 백아리지 선	㎡ 50,000	웅진군덕적면 백아리31번지	백아리어촌 제장 서 우 석	1990.2.28 2000.2.27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36호

수산업법 제 52 조 규정과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9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확정 내용을 공고합니다.

1990년 1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90년 어장이용 개발계획 확정내역

면적 : 헥타

시군별	어업별	품종	시설 방법	어장위치	계획확정		면허대상	비고
					건수	면적		
합계					10	154.2		
화성	1종공동	굴,잡패		화성,우정,매향리	1	24.2	어촌계	1
용진	소 계				9	130		
	1종공동	굴		용진,북도,장봉리	1	20	어촌계	2
	"	동 죽		용진,북도,장봉리	1	40	"	3
	"	굴		용진,대부,풍도리	1	20	"	4
	"	굴		용진,대부,풍도리	1	10	"	5
	"	굴,해삼		용진,송림,연평리	1	20	"	6
	양식어업	굴	투석식	용진,송림,연평리	1	3	"	7
	"	바지락	살포식	용진,송림,연평리	1	7	"	8
	"	전 복	"	용진,백령,진촌리	1	5	"	9
	"	전 복	"	용진,대청,대청리	1	5	"	10

공 고

경기도공고 제 47 호

내무부훈령 제 682 호에 의거 안양경찰서 중부파출소의 7개(양지, 내손, 당정, 금정, 충훈, 부곡, 동안) 신설파출소에 대한 파출소장관인 및 계인을 신조 조각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공인사용개시일 : 1990. 1. 4.

1990. 1. 4.

안 양 경 찰 서 장

관 인 신 조 인 영

○ 안양경찰서

구분	중 부 파 출 소	양 지 파 출 소	내 손 파 출 소	당 정 파 출 소
관 인				
계 인				

구분	금 정 파출소	충훈 파출소	부곡 파출소	동안 파출소
관 인				
제 인				

공 고

경기도공고 제 49 호

의정부경찰서 덕제지서장 제인이 규격 위반되어 신규 각하여
 1990. 2. 12 일 부터 사용함을 경찰지서장 및 파출소장 직인규정 제 7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 2. 10.

의 정 부 경 찰 서 장

○ 신규조각제인

사 용 제 인



신 규 제 인



안양시공고 제 25 호 공 고

공 인 신 조 사 용 공 고

안양시 통합공과금제 실시에 의한 각종 회계직 공무원의 공인을 안양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 및 안양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2. 7.

안 양 시 장

1. 사용개시일 : 1990. 2. 9

2. 신조사용일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안양시 안양 1 동 통합공과금과징 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 안양 2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안양시 안양 3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 안양 4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안양시 안양 5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 안양 6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안양시안양 7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안양 8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안양시비산 1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비산 2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안양시관양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평촌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안양시호계 1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호계 2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안양시호계 3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석수 1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안양시석수 2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석수 3 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안양시박달동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출납원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공 고

화성군공고 제 6 호

화성군 공인조례 9 조 1 항에 의거 개각공인 및 폐기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사용개시일 : 1990. 3. 2
2. 개각공인 및 폐기공인 인영
 - 가. 개각공인

민원사무화성군수인 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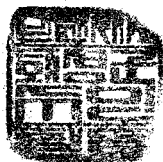
화성군계 민원사무



나. 폐기공인

민원사무화성군수인 전용

화성군계 민원사무



1990. 2. 14.

화 성 군 수

광주군공고 제 8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관 제서류를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개 요	사 업 시행자
	시 점	종 점		
광주읍 시가지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광주읍 경안리 57-8 번지	광주읍 경안리 20-64 번지	도로개설 및 포장 L = 200 m	광 주 군 수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2. 공람장소 : 광주군청 도시과

3. 편입토지조서 : 공람장소에 비치

1990. 2.

광 주 군 수

공 고

용인군공고 제 16 호

용인군 공인조례 제 6 조에 의거 신조할 관인을 같은 조례 제 9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 공고합니다.

1990. 1. 30.

용 인 군 수

1. 사용 및 폐기일시 : 1990. 2. 1

2. 공인명 및 인영

양곡관리특별회계
용인군분임채권관리관인



양곡관리특별회계
용인군분임물품관리관인



양곡관리기금용인군
분임채권관리관인



공 고

용인군공고 제 22 호

용인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로 1 류 1 호선, 중로 1 류 4 호선)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2. 1

용 인 군 수

1. 변경결정내용

구 분	시설명	노 선 명	내 용
변경결정	도 로	중로 1 류 1 호선 중로 1 류 4 호선	용인주유소 - 마평주유소간 선형변경

2.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 일간

3. 공람장소 : 용인군청 도시과, 새마을과, 용인읍사무소

제 2338 호 1990. 2.16 ~ 2.28 경기도공보관실발행	경기도보	경기도청종합발간실 인
--	-------------	----------------

(조 려)

경기도 조례 제 2006 호 경기도 도립극단 설치조례

(규 칙)

경기도 규칙 제 2055 호 경기도 도립극단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 2056 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제 2057 호 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제 2058 호 경기도 직제 규칙중 개정규칙

제 2059 호 경기도 담당관 및 과 규칙중 개정규칙

(훈 령)

경기도 훈령 제 861 호 경기도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중 개정 규정

제 862 호 팔당호수 준설사업지구내 골재채취 사무처리 시행
세칙

제 863 호 경기도 인사관리 규정중 개정규정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63 호 사방지 정지 해제 고시

제 64 호 배합사료 성분 등록 고시

제 65 호 도로구역 변경고시

제 67 호 부천도시계획시설(괴안어린이공원)사업실시계획인가

제 68 호 부천도시계획시설(심곡어린이공원)사업실시계획인가

제 69 호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어린이공원)사업실시계획인가

제 70 호 부천도시계획시설(원종어린이공원)사업실시계획인가

제 72 호 쇠고기 연동가격 고시

제 73 호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실시계획 인가 고시

제 74 호 '90골재채취 허가 사항 고시

제 75 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고시

제 76 호 "

제 77 호 "

제 78 호 사료성분 등록 고시

수원시 고시 제 3 호 수원도시계획시설 (학교) 사업 변경시행 허가 고시

제 5 호 수원도시계획사업 (일단의공업용지조성) 변경 승인
고시

안산시 고시 제 10 호 반월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변경시행 허가 고시

(공 고)

경기도 공고 제50호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말소 공고

제 51 호 제2종 전기공사업체 영업정지 처분 공고

제 52 호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제 59 호 K.S표시허가 취소 공고

제 60 호 "

안양시 공고 제 42 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안성군 공고 제 27 호 공인 신조 공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립극단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2월 16일

경기도 조례 제 2006 호

경기도극단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경기도립극단(이하“극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구성) ① 극단의 단장은 부지사가 된다.

② 극단은 연출자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③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단원은 상근하는자로 일반공무원에 준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직무) 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단무를 맡아 처리하고 극단을 지휘 감독한다.

② 연출자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연극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연출자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전형으로 전형위원의 과반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제6조(정년) 단원의 정년은 55세 까지로 한다. 다만,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극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 하기 위하여 경기도립극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 실·국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경기도 지회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주관과장 또는 담당관, 극단연출자,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부장등 당연직위원과 기타 문화예술분야 전무가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극단의 기본운영계획, 전형 실시, 실기평정 실시, 각단원의 실비보상액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주무계장이 된다.

제9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4인이상 7인이내로 하며 연극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3분의1이상은 극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제10조(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특별 전형은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11조(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4.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5. 극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
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 한 자

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예산) 극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비로 매년 예산에 정한다.

제14조(단원의 보수)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 수입) ① 극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징수된 입장료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

가지정문화재관람료징수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입장료는 입장권을 발행 징수하며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극단설치조례시행규칙을 이에 제정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2월 16일

경기도규칙 제 2055 호

경기도극단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극단 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업무 주관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연출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단장이 수석단원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3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나눈다.

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수시공연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③ 극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3개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급여 및 호봉)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으로 한다.

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 월액은 “별표2”와 같다.
2. 단원에게는 “별표3”과 “별표4”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간부단원의 호봉은 “별표5”와 같다.
3. 호봉별 승급년한은 “별표6”과 같다.

제6조(수당) 수당은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 기말장려수당으로 구분한다.

1. 예능연구보조비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7”과 같다.
2.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임 간부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8”과 같다.
3. 기말 장려수당은 상임단원에 한하여 본봉에 대한 연 400%를 지급한다.

제7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 위촉 및 해촉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단원의 월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③ 비상임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9”에 의한다.

④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단원경력은 신청한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확정한다.

제8조(여비 및 기타수당) ① 단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10”과 같다.

② 운영위원은 회의1일 30,000(여비포함), 전형위원은 전형1일 100,000원(여비포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

② 연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예능연구 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연출자.기획담당.수석단원.부수석단원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관람료징수기준) 경기도립극단설치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징수기준은 “별표11”과 같다.

제11조(시행규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단 원 의 종 류 와 정 원

구 분	정 원	비 고
계	30	
연 출 자	1	
기 획 담 당	1	
수 석 단 원	2	
부 수 석 단 원	4	
단 원	22	

(별표2)

급 여 월 액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정	600,000	11	367,000
1	579,000	12	341,000
2	559,000	13	316,000
3	538,000	14	290,000
4	517,000	15	264,000
5	497,000	16	238,000
6	476,000	17	212,000
7	455,000	18	187,000
8	434,000	19	161,000
9	414,000	20	135,000
10	393,000		

(별표3)

학 력 별 초 임 호 봉 기 준

학 력	초 임 호 봉	비 고
대 졸 이 상	18호봉	
초 급 대 졸	19호봉	
고 졸, 기 타	20호봉	

(별표4)

신규위촉시의경력환산기준

구 분	경 력 기 준	환산율
단원경력	○ 국가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
	○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100%
	○ 군경력(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 별표6에 준함)	100%
유사경력	○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	운 영 위 원 회에서 사 정한 기간
	○ 해외에서 동일분야연구 및 연기경력	" · "
	○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	

(별표5)

간 부 단 원 호 봉 기 준

직	책	호	봉	비	고
연	출	자	정		
기	획	담	당	10	

(별표6)

호봉별승급소요년한

승급기간	해 당 호 봉	비 고
재직 1년	20호봉부터 11호봉 까지	
재직 1년 6월	10호봉 부터 6호봉까지	
재직 2년	5호봉부터 1호봉까지	

(별표7)

예 능 연 구 보 조 비

단위 : 원

등 급	구 분	월
가	연 출 자	150,000
나	기 획 담 당	100,000
다	수 석 단 원	90,000
라	부 수 석 단 원	80,000
마	단 원	70,000

(별표8)

직 책 수 당

단위 : 원

구 분	인 원	월 수 당 액
연 출 자	1	150,000
기 획 담 당	1	100,000
수 석 단 원	2	80,00
부 수 석 단 원	4	60,000

(별표9)

비상임단원수당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월 수 당 액	비 고
비 상 임 단 원	120,000	

(별표10)

여 비 지 급 기 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연 출 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기 획 담 당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수 석 단 원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수 석 단 원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단 원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 상 임 단 원	9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별표11)

관 랑 료 징 수 구 분

구 분	대 상
어린이	7세 이상 12세 하인 자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및 방위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자(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제외한다.)
노 인	65세 이상인자
단 체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주)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노인의 관람료는 어른관람료의 50%이하로 한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을 이에 제정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2월 16일

경기도 규칙 제 2056 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 지방채의 발행 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 원권

2. 100,000,000 원권

3. 1,000,000,000 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 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 금액의 지방채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 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원리금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도지사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제8조(공고) ① 도지사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업무)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증권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 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2월 20일

경기도 규칙 제 2057 호

경기도소방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파출소등) 제2항중 “별표2”를 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2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2]

경기도 소방관 파출소 및 소방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소방서	파출소	위 치	관 할 구 역
수 원 소방소	매 산	수원시 권선	팔달로 1,2,3가, 남창동,영도,중동,구천동,장
	파출소	구 매산로3가 35	안동,신흥동,교동,매교동,새류1동,매산로1.2.3 가,고등동,인계동중 194,195,199-221,229- 275,310-312,507-520,527-566,573-587, 736-774,776-780,783-798,800-935,938 번지
	서 둔 파출소	수원시 권선 구 서둔동 17 -77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 서둔동, 구 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탑동, 화성군중 봉 담면일원

정 자 파출소	수원시 장안 구 정자1동	화서1.2동, 파장동, 이목동, 울전동, 천천동, 정자동, 영화동, 조원동, 송죽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원 천 파출소	수원시 권선 구 원천동 122	매탄동, 원천동, 하동, 인계동중 146-193, 196-198, 222-228, 276-309, 313-399, 408-491, 493-506, 614-617
권 선 파출소	수원시 권선 구 원천동 122	세류2.3동, 권선동, 장지동, 대항교동, 곡반 정동, 인계동중 400-447, 492, 521-526, 583-613, 618-676, 679-735
지 만 파출소	수원시 장안 구 지만지구 40브력 9롯데	지동, 남수동, 매향동, 연무동, 복수동, 우만 동, 이의동
오 산 파출소	오산시 오산 동 871-1	오산시 일원
기 흥 파출소	용인군 기흥 읍 신갈리 52	용인군중 기흥읍 일원
태 안 파출소	화성군 태안 읍 진안리 526-2	화성군중 태안읍 일원
용 인 파출소	용인군 용인 읍 김량장리 303-3	용인군중 용인읍 일원

성 남 소 방 서	수 진 파출소	성남시수정구 수진1동4417	수진1.2동, 태평1.3동, 여수동, 복정동, 신촌 동, 성남동, 오야동, 심곡동
	신 흥 파출소	성남시수정구 신흥동192	신흥 1.2.3동, 중동, 창곡동, 태평2동
	상 대 원 파출소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517 -14	상대원 1.2.3동, 하대원동, 도촌동, 갈현동
	판 교 파출소	성남시중원구 판교동178-1	분당동, 정자동, 수내동, 율동, 이매동, 서현 동, 야탑동, 고등동, 상적동, 둔전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 판교동, 상평동, 백현동, 금 곡동, 궁내동, 동원동, 구내동, 운중동, 대장 동, 석운동, 하산운동
	은 행 파출소	성남시중원구 단대동4673	은행1.2동, 단대동, 금광1.2동, 산성동, 양지 동
	광 주 파출소	광주군광주읍 송정리94-6	광주군중 광주읍, 오포면 일원
	하 남 파출소	하남시덕풍1 동466-8	하남시 일원
	이 천 파출소	이천군이천읍 창전리267- 11	이천군중 이천읍 일원
	여 주 파출소	여주군이주읍 상리285-2	여주군중 여주읍 일원

의정부 소방서	중 부 파출소	의정부시의정 부1동35-12	의정부 1.2.3동, 호원동, 장곡동, 송산동
	동 부 파출소	의정부시의정 부1동232	의정부4동, 가능1.2.3동, 녹양동, 자금동
	회 천 파출소	양주군회천읍 덕정리141	양주군중 회천읍.주내면 일원
	원 당 파출소	고양군원당읍 성사리370	고양군중 원당읍 일원
	금 촌 파출소	파주군금촌읍 769-1	파주군중 금촌읍 일원
	포 천 파출소	포천군포천읍 신읍리59	포천군중 포천읍 일원
안 양 소방서	안 양 파출소	안양시안양6 동472-2	안양1동, 안양2동중 688-816, 818, 820-1195번지, 안양 3.4.5.6.7.8동, 박달동
	호 계 파출소	안양시호계동 110-27	호계동, 관양동중 954, 1144-1257번지, 평촌동
	비 산 파출소	안양시비산동 7지구222브럭	비산1.2동, 관양동중1-953, 955-1143, 1258-1307번지
안 양 소방서	석 수 파출소	안양시석수동 295-14	석수1.2동, 안양2동중 1-72, 817, 819, 산 1-19번지
부 천 소방서	원 미 파출소	부천시중구원 미동99-2	원미동, 춘의동, 도당동
	심 곡 파출소	부천시중구심 곡동383	심곡 1.2.3동
	내 동 파출소	부천시중구내 동54-3	내동, 삼정동, 약대동, 대장동, 오정동

	증 동 파출소	부천시남구5 -1지구61브 력3롯데	증동, 상동, 송내동
	괴 안 파출소	부천시남구괴 안동4지구279 브력	소사1.2동, 역곡동, 괴아나동, 범박동, 옥길 동, 개수동
	원 종 파출소	부천시중구원 종동오정1지 구168브력5로 트	원종동, 고강동, 여월동, 작동
	시 흥 파출소	시흥시대야동 25브력5롯데	시흥시 일원
	김 포 파출소	김포군김포읍 북변리361-2	김포군중 김포읍 일원
광 명 소방서	철 산 파출소	광명시철산3 동379	광명4.5.6.7동, 학은동, 철산 2.3.4동
	광 명 파출소	광명시광명2 동44-16	광명 1.2.3동, 철산1동
	하 안 파출소	광명시하안동 271	소화1.2동, 하안동
송 탄 파출소	서 정 파출소	송탄시서정동 78-6	송탄시일원 평택군중 진위면 일원
	생 연 파출소	동두천시생연 2동666-2	동두천시일원
동두천 소방서	전 곡 파출소	연천군 전곡 읍전곡리312 -3	연천군중 전곡읍 일원

안 산 소방서	고 잔 파출소	안산시고잔동 515	고잔동, 부곡동, 성포동, 양상동, 월피동, 와 동
	원 시 파출소	안산시원시동 773-4	원시동, 초지동
	선 부 파출소	안산시선부동 54브력1-1	선부동, 원곡동
	성 곡 파출소	안산시성곡동 602-2	성곡동, 목내동, 신길동
안 산 소방서	일 동 파출소	안 산 시 일 동 302-4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팔곡이동
과 천 소방서	중 앙 파출소	과천시중앙동 40	관문동, 부림동, 중앙동, 문원동, 갈현동, 별 양동, 원문동
	주 압 파출소	과천시주암동 685-8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구 리 소방서	중 앙 파출소	구리시교문동 산72-6	교문동, 이천동, 인창동, 사노동
	교 문 파출소	구리시교문동 263	갈매동, 남양주군 별내면 일원
	토 평 파출소	구리시토평동 164	토평동, 수택동
	미 금 파출소	미금시호평동 132-1	미금시 일원
평 택 소방서	평 택 파출소	평택시평택동 35-20	평택동, 지제동, 세교동, 신대동, 통북동, 군 문동, 동부동
	합 정 파출소	평택시합정동 산24	합정동, 소사동, 비전동, 죽백동, 청룡동, 월 곡동, 용이동, 유천동

	안 중 파출소	평택군안중면 안중리280	평택군중 안중면 일원
	안 성 파출소	안성군안성읍 봉남리365	안성군중 안성읍 일원
군 포 소방서	군 포 파출소	군포시군포2 동70브럭50롯 트	군포시 일원
	의 왕 파출소	의왕시오전동 348	의왕시 일원

경기도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2월 23일

경기도규칙 제 2058 호

경기도직제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공보관) 제2항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민간사회 단체의 지도 육성

제4조(내무국) 제12항중 “제4호 사회단체 등록증 지도감독”을 “제4호 시·군 문화원의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5조(보건사회국) 제2항중 “보건과장은 보건기좌로, 위생과장은 환경기좌 또는 보건기좌로”를 “보건과장은 의무기좌, 약무기좌 또는 보건기좌로, 위생과장은 화공기좌 또는 보건기좌로”한다.

제10조(건설국) 제2항중 “주택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건축기좌로”를 “주택과장은 건축기좌로”로 한다.

제11조(도시국) 제2항중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를 “시설기정으로”하고, “도시계획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기좌로”를 “도시계획과장은 토목기좌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담당관 및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2월 23일

경기도 규칙 제 2059 호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담당관 및 과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계의 분장사무) “별표1”중 다음과 같이 한다.

공보관실 소관사무의 “공보계”분장사무중 “제6호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을 “제6호 민간사회단체의 지도육성”으로 한다.

지방과 소관사무의 “지도계”분장사무중 “제11호 농민교육원 지도감독”을 삭제한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무의 “새마을계”분장사무중 “제20호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21호 ”로 하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농민교육원 지도 감독

문화예술과 소관사무의 “문화예술계”분장사무중 “제6호 사회단체등록등 지도감독”을 “제6호 시·군 문화원의 지도감독”으로 하고 “제7호”내지 “제10호”를 “제8호”내지 “제11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보건과 소관사무의 “보건계”분장사무중 “제10호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건환경 연구소와의 연락조중(보건연구부 소관)

환경보호담당관실 소관사무의 “환경관리계”분장사무중 “제12호 보건환경 연구서 지도감독”을 “제12호 보건환경연구소와의 연락조정(환경연구부 소관)”으로 한다.

수산과 소관사무의 “중시계”분장사무중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내수면 개발시험장 지도감독

주택과 소관사무의 “도시주택계”분장사무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중 소관사무의 조정.협의

치수과 소관사무의 “도시주택계”분장사무중 “제14호 석산개발사업소 및 한강개발사업소 지도감독”을 “제14호 석산개발사업소 및 한강개발사업소 지도감독”을 “제14호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중 소관사무의 조정·협의”로 한다.

도시개발담당관실 소관사무의 “구획정리계”분장사무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중 소관사무의 조정·협의

도시개발담당관실 소관사무의 “상하수도계”분장사무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소방과 소관사무의 “방호계”분장사무난 다음에 “소방교육대”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담당과·과	계	분 장 사 무
소방과	소 방 교육대	1.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2. 화재진압의 기술,훈련지도 3. 소방관 기증검정 4.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및 후생 5. 교육훈련 성과측정 및 분석 6.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관리 7. 교육자재 편찬 8. 기타 소방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43조(소방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소방과) 소방과에 ~~소~~방계, 방호계, 소방교육대를 두고, 각 계장은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소방교육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훈령 제 861 호

경기도 국가공무원 정원 규칙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2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경기도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무원 정원) 제1항 “별표1-1”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도 총괄)의 일반직난 4급의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1을 삭제하고, 시설기정1을 2로 하며, 5급의 보건기좌1,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기좌1, 행정사무관 또는 건축기좌1, 보건기좌 또는 환경기좌 1을 각각 삭제하고, 토목기좌 3을 4로하며 건축기좌에 1, 의무기좌, 약무기좌 또는 보건기좌에 1, 화공기좌 또는 보건기좌에 1을 각각 삽입한다.

동조 제2항 “별표1-2”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도본청)의 일반직난 4급의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1을 삭제하고, 시설기정 1을 2로 하며, 5급의 보건기좌1,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기좌1, 행정사무관 또는 건축기좌1, 보건기좌 또는 환경기좌1을 각각 삭제하고, 토목기좌 3을 4로하며, 건축기좌에 1, 의무기좌, 약무기좌 또는 보건기좌에 1, 화공기좌 또는 보건기좌에 1을 각각 삽입하고,

보건과의 일반직난 5급의 보건기좌 1을 삭제하고, 의무기좌, 약무기좌 또는 보건기좌에 1을 삽입하며,

위생과의 일반직난 5급의 보건기좌 또는 환경기좌 1을 삭제하고, 화공기좌 또는 보건기좌에 1을 삽입하며,

주택과의 일반직난 5급의 행정사무관 또는 건축기좌 1을 삭제하고 건축기좌에 1을 삽입하며,

지역계획과의 일반직난 4급의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 1을 삭제하고 시설기정에 1을 삽입하며

도시계획과의 일반직난 5급의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기좌 1을 삭제하고 토목기좌에 1을 삽입한다.

동조 제5항 “별표1-5”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시·군 총괄)의 계난 1,625를 1,632로 하고, 소방직난 소계의 181을 188로, 소방정 5를 7로, 소방령 8을 7로, 소방경 23을 25로, 소방위 34를 38로 하며

광명시의 소방직난 소방정에 1을 신설하고, 소방령 1을 삭제하며,

안산시의 소방직난 소방정에 1을 신설하고, 소방령 1을 삭제하며,

군포시의 계난 3을 10으로 하고, 소방직난 소계에 7을, 소방령에 1을, 소방경에 2를, 소방위에 4를 각각 삽입한다.

동조 제15항 “별표7”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시·군 소방서)의 계난 181을 188로, 소방정 5를 7로, 소방령 8을 7로 소방경 23을 25로, 소방위 34를 38로 하고,

광명소방서의 소방정에 1을 신설하고, 소방령 1을 삭제하며

안산소방서의 소방정에 1을 신설하고, 소방령 1을 삭제하며

평택소방서 다음에 군포소방서 난을 신설하여 계난에 7을 소방령에 1을 소방경에 2를, 소방위에 4를 각각 삽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원은 1990년 10월 31일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기도 훈령 제 862 호

팔당호수 준설사업지구내 골재채취허가 사무처리 시행세칙

팔당호수 준설사업지구내의 골재채취허가 사무처리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1990년 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과 경기도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특수지역으로 지정된 팔당호수 준설사업지구내에서의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동시행규칙 제7조의 5와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4조 3항, 경기도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 제26조에 의한 토석 및 사력(이하 “골재”라 한다) 채취 허가에 관한 세부시행세칙을 규정하여 수도권 골재수급을 원활히함과 동시에 사무처리의 통일성과 합리화를 기함으로서 하천등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팔당호수 준설지구내에서의 골재채취허가에 관하여는 하천 및 공유수면등 관계법령,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경기도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경기도하천 및 공유수면점. 사용료 징수조례 및 동규칙과 기타 타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허가신청자격)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각호의 자격 및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1.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에 참여한자 및 건설업법에 의한 준설업면허 소지자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한 다음의 장비를 소유한자.

가. 펌프준설선(1,000HP이상)1척 이상

나. 바켈식 준설선, 펌프바지선, 크랩셀중 1대 이상

다. 쇄석기 1대 이상

라. 로우더, 쇼벨계 중기 각 1대 이상

2. 하천 산출물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자.

제4조(허가지역등의 공고) 허가청은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 5 제4항에 따라 허가지역, 허가대상물량, 허가신청기간, 허가기간, 허가신청자격, 허가일등을 일간신문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신청) 제3조의 허가신청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구역을 제1회망지와 제2회망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2. 허가신청량은 별표1에 의한 장비능력 산정기준의 채취장비의 종류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역별 허가예정량이상이어야 한다.
3. 허가신청인은 점용료 납부이행 보증금으로 허가청이 정한 금액(허가신청량에 해당하는 점용료의 100분의 10이상)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피허가자의 선정) ① 허가청은 신청접수기간종료후 즉시 구역별 신청량을 게시공고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피허가자를 선정한다.

1. 구역별로 제1회망으로 허가신청자중에서 신청량이 최고인 자에게 허

가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선정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해서는 제2회망으로 신한한 자중 신청량이 최고인 자에게 허가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량이 경합된 경우에는 순위추첨후 공개 추첨에 의하여 피허가자를 결정한다.
 4. 제1회망지를 허가받은 자는 제2회망지에서 허가받을 수 없다.
- ② 제1항 각호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해서는 재공고하여 피허가자를 선정한다.

제7조(허가) ① 허가청은 허가조건을 부하여 피허가자에게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허가사항을 통보하고 피허가자는 허가조건을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② 허가청이 수도권 골재수급상 증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허가량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증산명령을 하고 피허가자는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대치) 허가청은 피허가자가 선정된 경우에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예치한 금액을 골재점용료로 대치할 수 있다.

제9조(허가구역의 분할) ① 허가청은 허가구역 분할을 도상으로 정하고 허가후에 측량에 의하여 확정한다.

② 허가청은 확정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구역측량을 하게 하고 그 결과 수상에는 부표를 설치하고 육상에는 표식기를 설치하게 하여 구역분쟁을 해소한다.

제10조(생산시설 부지선정) 골재채취 및 생산에 필요한 선별 및 야적장 위

치 지정은 피허가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청이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지정 하되 경합시에는 허가청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1조(채취시간과 반출시간) 골재채취 및 반출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허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출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반출증) ① 허가청은 피허가자에게 반출증(별지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청은 반출계획을 고려하여 반출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작업장 관리) ① 골재채취 및 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 기타 민원등 제반문제는 피허가자 책임하에 보상 또는 해결한다.

② 골재채취 과정에서 수질오염, 발전, 홍수조절등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허가청의 작업중지 요구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허가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피허가자는 허가사항을 명시한 표식판(별지 제4호서식)을 허가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피허가자는 골재채취에 따른 팔당호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 시행 하고 유수분리기, 오탁방지막(silt protedtor)및 오일펜스(oil fence)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청이 수질오염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지사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피허가자는 골재채취시 허가청의 지시에 따라 저니층을 먼저 준설하여야 한다. 특히, 골재를 선별할시에는 침전지를 설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고, 이때 발생한 폐기토는 허가청의 지시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허가청은 수질보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장비를 확인하여 피허가자에게 시설개선 및 장비교체를 명할수 있다. 이때 피허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⑦ 피허가자는 허가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경계표(별지 제5호 서식)와 수중에는 수중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허가청은 피허가자에게 홍수시 채취선 및 기타장비가 떠내려갈 긴급한 사태가발생 우려시에는 채취선을 수중침하시킬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장 감시) 골재채취 및 반출 지도감독과 사업장의 공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감시를 대행업체(이하 “감리단”이라 한다.)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위탁시킬수 있다. 허가청은 배후감시 및 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한다.

제15조(채취기록의 비치와 보고) 피허가자는 매일 채취선 량과 반출량을 기재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10일, 20일, 월말을 기준으로부터 2일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반출량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하 천 명 및 위 치								
신 청	제1회망지역	제	공구	면적	m ²	허가신청량	원석	m ³
장 소	제2회망지역	제	공구	면적	m ²	허가신청량	원석	m ³
종 류 및 수 량								
채 취 기 간		19 . . . 부터 19 . . . 까지 (일간)						
목 적 및 사 유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 | |
|--|---|
| 1. 위치도(1/50,000) | 2. 골재사업계획서(골재반출계획서, 골재채취 장비투입 계획서) - (별지2호서식) |
| 3. 법인등기부 등본 |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4. 준설업 면허증 사본(해당자) | 7. 사용 인감제 |
| 6. 인감증면서 | 9. 납세완납증명(국세, 지방세) |
| 8. 중기등록증 및 검사증 | 11.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 10. 중.횡단면도 및 구적을 표시 하는 실측평면도(1/2,000, 1/3,000 또는 1/5,000) - 허가청에서 제시 | 12. 기타 허가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
- 모든 사본은 허가청의 정본확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3호 서식)

(피허가자 보고용)

골재반출증(보고용)		
발행No.	허가번호	
채 취 지		
품 명	m ³	
반 출 일	199 . . .	
차량번호		
취 급 자		
199 . . .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장(인)		
발 행 취 급 소	사업단	감리단

(감시초소 회수 보고용)

골재반출증(회수분)		
발행No.	허가번호	
채 취 지		
품 명	m ³	
반 출 일	199 . . .	
차량번호		
취 급 자		
199 . . .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장(인)		
발 행 취 급 소	사업단	감리단

(운송자 소지분용)

골 재 반 출 증		
발행No.	허가번호	
채 취 지		
품 명	m ³	
반 출 일	199 . . .	
차량번호		
취 급 자		
199 . . .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장(인)		
발 행 취 급 소	사업단	감리단

(후 면)

경 고

1. 반출증 없이 운반하였을 때는 하천법 제25조 및 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반출증은 1대당 1매에 한하되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수정위조 하였을 시 무효로 함.
3. 골재 반출시 반드시 초소를 경유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4. 반출증 기재사항과 적재사항이 일치되어야 한다.
5. 골재가 산재하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별지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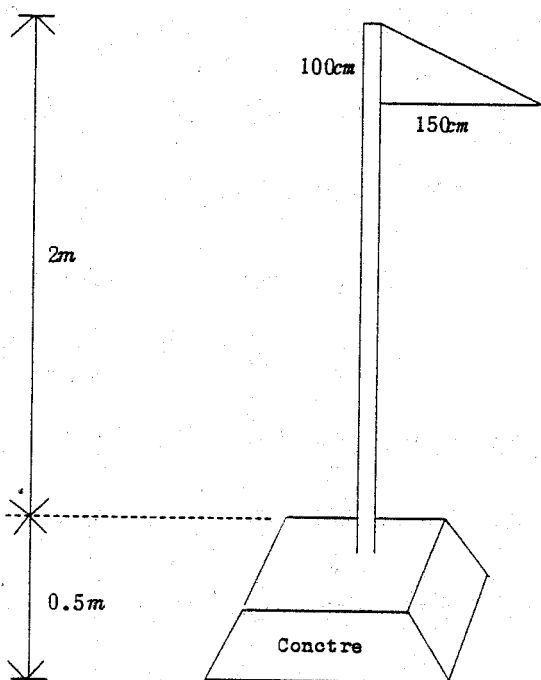
허가 표시판의 규격 및 기재내용

1m	골재채취 허가 개요	허가 구역 약도
	허가번호 : 제 호 1. 위치 : 2. 피허가자 : 주소, 성명 3. 채취 허가 면적 : m ² 4. 채취허가량 : m ³ 5. 허가기간 : 19 . . ~ 19 . .	
	1m	1m

* 기재상 주의

1. 글자가 지워지지 않도록 페인트로 쓸것
2. 약도는 방향과 지점을 고려하여, 표시판 설치 위치에서 누구나 알수 있도록 그릴것.
3. 넘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할 것.

지 역 경 계 표 식



(별지7호 서식)

동 의 서

1. 본 적 또는 상 호 :
2. 주 소 :
3. 성 명 및 생년월일 :
4. 주 민 등 록 번 호 : 년 월 일
5. 하천의 명칭 및 위치 :

본인이 귀청에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하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며, 이에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와 작업의 정지는 물론, 허가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귀청과 타허가청에서 골재채취허가를 금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기선납한 채취료와 항상정리비를 자진포기하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가.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천부속물 또는 공작물을 훼손하였을 때.

다. 채취량을 은폐하거나 채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라.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마. 분기별 채취계획량 및 반출량이 허가시의 분기별 계획량의 90% 미만인 때.

바. 허가청의 승인없이 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취를 타인에게 하청 하였을 때.

사.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부관 및 허가청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하였을 때.

아. 기타 위반사항이 있을 때.

199

상 호 :

제출자 :

인

귀 하

(별지8호 서식)

제 호	골 재 채 취 허 가 증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상 호	
주 소	
하 천 명 및 위 치	
채 취 장 소	별첨 도면 표시 지역
종 류 및 수 량	
채 취 면 적	
채 취 기 간	
조 건	별 첨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골재 채취를 허가함.

첨 부 : 1. 허가조건 1부.

2. 허가도면 1부.

19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인)

골 재 채 취 허 가 조 건

팔당호수 준설사업 지구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허가 조건을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현장대리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자는 골재채취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허가청에 통지하고 골재채취 현장에 상주하여 허가청(감리단포함) 및 그 관계공무원(감리단직원포함)의 지시, 감독에 따라 골재현장의 단속 및 채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경계표시) 골재채취 허가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경계표와 수증에는 수증표를 50m간격으로 설치하고 골재채취 개시일로부터 허가청의 사후정리 상태 점검 완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민원등) 골재채취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허가청의 작업중지 요구시에는 즉시 응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허가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안전대책)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골재채취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 가. 하천 부속물과 하천 공작물의 보호
 - 나. 각종지하 매설물의 보호
 - 다. 사유재산 토지 및 지장물의 보호
5. (무단출입통제) 골재채취 허가구역내에는 관계자이외의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지시키고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구역내에서 허가조건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허가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장비교체) 팔당호 수질보호상 사용장비가 부적합할 경우 시설개선 및 장비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수명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채취방법) 허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취심도 및 채취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8. (원석반출의 원칙) 반출골재의 종류에 불구하고 반출되는 골재는 원석으로 간주하며 특히 골재채취 및 생산결과 발생한 규격외 자갈(O/S)은 전량 반출하여야 한다.
9. (반출시간) 골재채취 및 반출시간은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일원의 골재수급이므로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취 및 반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0. (구조변경 및 과적반출금지) 골재운반 장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난간에 부착 및 기타방법으로 반출중에 의한 골재적재량을 초과하여 과적반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1. (통제소 설치) 피허가자는 골재의 부정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기 허가청이 지정한 장소에 감시 초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허가청의 통제소 설치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채취된 골재는 지정된 반출로를 통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12. (반출의무) 골재 반출은 별도로 정한 분기별 반출계획량의 90% 이상을 해당 분기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13. (반출량 보고)

가. 피 허가자는 매일(08 : 00부터 익일 08 : 00까지) 반출량을 기준으로 소정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10, 20, 월말을

기준으로 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반출량을 허가청의 감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허가물량 반출완료시 수심 측량을 실시하여 골재채취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구역을 표시한 채취구역과 채취물량을 표기한 도면을 작성 첨부)

14. (수질오염방지) 골재채취에 따른 팔당호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강구시행하되 수중채취장비는 유수분리기 및 오탁방지막(SILT PRO-TECTUR)을 설치하고 허가청이 수질오염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폐기토 처리) 허가청의 지시에 따라 피허가자는 저니층을 먼저 준설 하여야 한다. 특히, 골재를 선별할시에는 침전지를 설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하고 이때 발생하는 폐기토는 허가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6. (홍수시조치) 홍수시 채취선이 떠내려갈 긴급한 사태 발생 우려시에는 채취선을 수중침하 시킬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허가물량의 정산) 허가만료시까지 채취 못한 허가물량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관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기 납부한 점용료는 경기도 하천점.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8. (하도급 금지) 골재채취 및 생산에 대하여는 허가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9. (타 법과의 관계) 공작 물의 설치, 유수인용, 선박운항, 토지의 점용등 골재채취이외의 하천점용등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득하여야 한다.

20. (사후관리) 피허가자는 골재채취 허가기간내에 골재채취가 종료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사후 정리를 완료하고 사후정리 상태를 수심 측량을 실시한 후 점검을 허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21. (행정처분) 허가청은 피허가자에게 대하여 하천법 또는 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및 골재채취 허가조건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2. (행정처분사유) 행정처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골재채취허가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속물 또는 공작물을 훼손하였을 때
다. 초과 채취량을 은폐하거나 채취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라. 장비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마. 분기별 채취계획량 및 반출량이 허가시의 분기별 계획량의 90% 미만일 때

바. 허가청(감리단포함) 및 그 관계공무원(감리단직원 포함)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를 위반하였을 때

23. (지장물 제거) 허가구역내 지장물(시설물, 농작물, 불용토)은 피허가자 부담으로 제거후 채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피허가자가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24. (기타사항)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천관계법규 및 골재채취 처리 규정과 허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표1)

장 비 능 력 산 정 기 준 표

장 비 명	장 비 능 력 산 정 기 준	비 고
1. 바렐식 준설선	$Q = 60 \cdot n \cdot q \cdot f \cdot E$ $Q = 1\text{시간당 준설량}(m^3/hr)$ $n = \text{바렐의 매분당 통과수}(33\text{개/분})$ $q = \text{바렐의 공칭용량}(m^3)$ $k = \text{바렐의 굴착효율}(0.75)$ $f = \text{토랑환산 계수}(0.85)$ $E = \text{작업효율}(0.63)$	* 1 일 작업 시간 : 17시간 월 작업 일 수 : 25일
2. 펌프식 준설선	$Q = \frac{q \cdot b \cdot E}{1,000}$ $Q = 1\text{시간당 준설량}(m^3/hr)$ $q = \text{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 1,000\text{Hp의}$ $1\text{시간당 준설량}(m^3/hr)$ - 배송거리 : 1km - N : 15(중질) $b = \text{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마력}(Hp)$: 디젤 공칭주기 마력 $\times 0.8$ $E = \text{작업효율}(0.87)$	

장 비 명	장 비 능 력 산 정 기 준	비 고
5. 백호우 (유압식 백호우)	$Q = \frac{3,600 \cdot q \cdot k \cdot f \cdot E}{cm}$ Q = 시간당 작업량(m^3/hr) q = 바켈용량(m^3) f = 토랑환수계수(1.0) E = 작업효율(0.75) k = 바켈계수(0.9) cm = 용량 1.9 까지(21') 용량 2.0 이상(27')	
6. 로우더	$Q = \frac{3,600 \cdot q \cdot k \cdot f \cdot E}{cm}$ Q = 시간당 작업량(m^3/hr) q = 바켈용량(m^3) k = 바켈계수(1.0) E = 작업효율(0.6) f = 토랑환산계수(1.0) cm = 38.4초	

장 비 명	장 비 능 력 산 정 기 준	비 고
3. 그레브 준설선	$Q = \frac{3,600. q \cdot k \cdot f \cdot E}{cm}$ $Q = 1\text{시간당 준설량}(m^3/hr)$ $q = \text{바켓용량}(m^3)$ $k = \text{바켓계수}(0.75)$ $f = \text{토량변화율}(0.85)$ $E = \text{작업효율}(0.68)$ $cm = 1\text{회 싸이클 시간(초)} (80)$	
4. 크램셀	$Q = \frac{3,600. q \cdot k \cdot f \cdot E}{cm}$ $Q = 1\text{시간당 작업량}(m^3/hr)$ $q = \text{바켓용량}(m^3)$ $k = \text{바켓계수}(0.90)$ $E = \text{작업효율}(0.60)$ $cm = 1\text{회 싸이클의 시간(초)} (31')$	

경기도 훈령 제 863 호

경기도 인사관리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 인사관리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 인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1(발탁) (1) 도 지방 5급공무원중 도본청 국가5급(과장)직위 및 시군지방4급 직위로의 발탁은 선발예정 인원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별표4의 5급의 승진임용 범위내의자중에서 선발임용 한다.

(2) 도 지방6급공무원중 도지방5급 (계장)직위 및 시군지방5급 (과장)직위로의 발탁은 선발예정 인원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 제2항 별표6의 응시배수 범위내에 들고 실질임용기관에서도 같은 응시배수 범위내에 있는자를 선발 임용한다.

(3) 다만 도본청과 시군간의 인사형평성 유지와 임요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 기타 개관적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서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자기평가서 및 상사의 지도관찰서 제출)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시 제 63 호

사방사업법 제 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년 2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 제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화성	팔탄	고주	산5-1	임야	ha 3.17	ha 0.30	ha 0.30	직업훈련원부 지조성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계					0.30	0.30			

2. 해제신청자 : 주 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43-3

성 명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경기직업훈련원장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64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한다.

1990년 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

- 공장명 : 선진축산(주)
- 소재지 : 이천군대월면 사동리 114-1
- 대표자 : 이원복

구분	사료			등록 번호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배합 사료	종계 II	육용계 (수탁용)	9-10-22	11.0	2.0	0.8	0.4	8.0	10.0
			이	하		여	백			

경기도 고시 제 65 호

도로구역 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경과지 일부를 변경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관계도면은 경기도 도로과 및 양주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공한다.

1990년 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구분	종류	노선명	변경구간(KM)	연장 (km)	주 요 경과지	구역변경 사 유
덕정고개 낮추기공 사(도 로 선 형 개 량)	지방도 316 호 선	문산- 가산	• 시정 - 당초 : 양주군회천읍 회 정리 64-2(도로) - 변경 : 양주군회천읍회정 리 47-7(도로) • 종점 - 당초 : 양주군은현면용암 리446-5(도로) - 변경 : " (0.8km)	38.33	덕 정 검문소	도로선형 개량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67 호

부천도시계획시설(괴안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조성계획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 12 조 제4항 및 동법 제 2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결정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년 2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 도시계획시설 (괴안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 : 별첨
- 조성계획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실시계획 인가사항, 별첨
- 승 인 조 건 : 본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것이며 본법이의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이행후 사업시행. 끝.

○ 조성계획 결정조서

단위:㎡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합 계		2,645.1	20	20	
교통시설	도 로	597.3			
조경시설	파 고 라	60			
휴양시설	휴 게 소	105.1			
운동시설	소 계	317.2			
	평행봉 외 2종	317.2			
유흥시설	어린이놀이터	293			
	조합놀이대의 3종				
편익시설	화 장 실	60	20	20	
관리시설	울 타 리 잔 디 보 호 책				
기타시설	소 계	1,212.5			
	녹 지	1,212.5			

실 시 계 획 인 가 사 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천시 남구 괴안동 124-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괴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o 결정면적 : 2,645.1 m²

o 시행면적 : 2,645.1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부천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년월일

o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7일

o 준공예정일 : 1990.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o 소재지 : 부천시 남구 괴안동 124-2번지

o 면 적 : 2,645.1m²

o 소유자 : 부천시

○ 면적 및 규모

단위:㎡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합 계		2,645.1	20	20	
교통시설	도 로	597.3			
조경시설	파 고 라	60			
휴양시설	휴 게 소	105.1			
운동시설	소 계	317.2			
	평 행 봉 외 2 종	317.2			
유흥시설	어린이놀이터	293			
	조합놀이대의 3종				
편익시설	화 장 실	60	20	20	
관리시설	올 타 리 잔 디 보 호 책				
기타시설	소 계	1,212.5			
	녹 지	1,212.5			

고 시

경기도 고시 제68호

부천도시계획시설(심곡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조성계획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결정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2. 22

경 기 도 지 사

- 부천도시계획시설(심곡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별첨
- 조성계획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 실시계획 인가사항 : 별첨
- 승인조건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본법 이외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이행후 사업 시행

○ 조성계획 결정조서

단위 : m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합 계		2,128.2	20	20	
교 통 시 설	도 로	493.98			
조 경 시 설	파고라의2종	59.96			
휴 양 시 설	휴게소의2종	12.56			
유 회 시 설	조합놀이대외3종	411.5			
편 의 시 설	화 장 실	60	20	20	
관 리 시 설	울타리잔디보호책				
기 타 시 설	녹 지	1,090.2			

실시계획 인가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천시 남구 심곡동 652-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심곡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결정면적 : 2,128.2 m²○ 시행면적 : 2,128.2 m²

4. 시행자의 주소,성명 : 부천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7일

○ 준공예정일 : 199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소재지 : 부천시 남구 심곡동 652-2번지

○ 면 적 : 2,128.2 m²

○ 소유자 : 부천시

○ 면적 및 규모

단위 : m²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합 계		2,128.2	20	20	
교통시설	도 로	493.98			
조경시설	파 고 라 외 2 종	59.96			
휴양시설	휴 게 소 외 2 종	12.56			
유희시설	조 합 놀 이 대 외 3 종	411.5			
편익시설	화 장 실	60	20	20	
관리시설	울타리잔디보호책				
기타시설	녹 지	1,090.2			

고 시

경기도 고시 제69호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조성계획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결정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2. 22

경 기 도 지 사

-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별첨
- 조성계획 결정도면 : 반월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 실시계획 인가사항 : 별첨
- 승인조건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본법 이외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이행후 사업시행

○ 조성계획 결정조서

단위 : m²

구 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합 계		2,975.2	20	20	
교통시설	소 계	701.5			
	도로	359.4			
	광 장	342.1			
조경시설	파 고 라	81.5			
운동시설	철 봉 외 2 종	323			
유흥시설	조합놀이대의 3종	430			
편익시설	화 장 실	60	20	20	
관리시설	잔 대 보 호 책				
기타시설	녹 지	1,379.2			

실시계획 인가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천시 남구 역곡동 2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역곡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결정면적 : 2,975.2 m²
 - 시행면적 : 2,975.2 m²
 4. 시행자의 주소,성명 : 부천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 부터 7일
 - 준공예정일 : 1990.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소재지 : 부천시 남구 역곡동 22번지
 - 면 적 : 2,975.2 m²
 - 소유자 : 부천시
- 면적 및 규모 단위 : m²

구 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합 계		2,975.2	20	20	
교통시설	소 계	701.5			
	도로	359.4			
	광 장	342.1			
조경시설	파 고 라	81.5			
운동시설	철 붓 외 2 종	323			
유흥시설	조 합 놀 이 대 외 3 종	430			
편익시설	화 장 실	60	20	20	
관리시설	잔 디 보 호 책				
기타시설	녹 지	1,379.2			

고 시

경기도 고시 제70호

부천도시계획시설(원종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조성계획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결정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2. 22

경 기 도 지 사

- 부천도시계획시설(원종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별첨
- 조성계획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 실시계획 인가사항 : 별첨
- 승인조건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본법 이외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이행후 사업시행

○ 조성계획 결정조서

단위 : m²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합 계		3,240.1	40.0	40.0	
교통시설	소 계	772.6			
	도로	481.6			
	광 장	291.0			
휴양시설	파 고 라 외 3 종				
운동시설	철 봉 외 2 종	518.0			
유흥시설	조합놀이대의 3종	300.0			
관리시설	울타리외 7종 관리사무소	40.0	40.0	40.0	
조경시설	잔 디 및 수 목 식 재	1,609.5			

실시계획 인가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천시 중구 원종동 26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종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결정면적 : 3,240.1 m²○ 시행면적 : 3,240.1 m²

3. 시행자의 주소,성명 : 부천시 중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7일 이내

○ 준공예정일 : 1990.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소재지 : 부천시 중구 원종동 269번지

○ 면 적 : 3,240.1 m²

○ 소유자 : 부천시

○ 면적 및 규모

단위 : m²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합 계		3,240.1	40.0	40.0	
교통시설	소 계	772.6			
	도로	481.6			
	광 장	291.0			
휴양시설	파 고 라 외 3 종				
운동시설	철 봉 외 2 종	518.0			
유흥시설	조합놀이대 외 3종	300.0			
관리시설	울타리외 7종 관리사무소	40.0	40.0	40.0	
조경시설	잔디 및 수목식재	1,609.5			

고 시

경기도 고시 제72호

쇠고기 연동가격 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88-24호 제9조 규정에 의거 쇠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2. 22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비 고
쇠 고 기	정육 500g당	5,200원	도내 전지역

• 시행일 : 1990. 2.

고 시

경기도 고시 제73호

반월 도시계획시설(제12주구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를 안산시청과 고잔동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1990. 2. 23

경 기 도 지 사

1. 실시계획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고잔동 60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제12주구운동장

○ 명칭 :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건립

다. 사업규모 : 24,287.3 m^2

○ 건축부지 : 4,830.94 m^2

○ 녹지부지(조경) : 9,714.92 m^2

○ 옥외 운동시설 : 2,512.0 m^2

○ 주차시설 : 2,410.0 m^2

○ 기타시설 : 4,817.44 m^2

라. 사업시행자 : 안산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 수 : 인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준공년월일 : 1990. 12.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지 번	지 목	원지적(m^2)	편입지적(m^2)	소 유 자	비 고
604	운동장	24,287.3	24,287.3	안산시장	

사. 관계도서 : 생략(안산시청 비치)

고 시

경기도 고시 제74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내 90 골재채취를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 2. 27

경 기 도 지 사

1. 위 치 : 경기지역 한강개발 제4공구

2. 면 적 : 187,080 m^2

3. 물 량 : 1,030,000 m^3

4. 점 용 료 : 2,987,000천원
5. 허가기간 : 90. 3. 1 ~ 90. 7. 31
6. 피허가자 : 한국중공업(주) 대표이사 안천학

고 시

경기도 고시 제75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구룡지구
2. 구 역 : 김포군 대곶면 구룡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한강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1,786,749 m²
5. 환 지 내 용 : 구룡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28

경 기 도 지 사

고 시

경기도 고시 제76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대명지구
2. 구 역 : 김포군 대곶면 대명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한강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1,202,375 m²
5. 환 지 내 용 : 대명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28

경 기 도 지 사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77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신영지구
2. 구 역 : 평택군 포승면 신영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평택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1,621,395 m²
5. 환 지 내 용 : 신영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2. 28

경 기 도 지 사

고 시

경기도 고시 제78호

사료관리법 제2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및 취소사항을
별첨과 같이 고시한다.

1990. 2. 28

경 기 도 지 사

배합사료성분등록 및 취소내역

구 분	사 료 공 장			사 료			등 록 번 호	등 록 내 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 류	명 칭	용 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비타민A IU/kg
등 록	홍 성 사 료	안산시 옥내동 490-1	정 태 원	배 합 사 료	착 유	비유량	18-31	18.0	3.0	0.6	0.4	25.0	10.0	
					4-4	20kg이상	-4							
					큰소비육1	생체중 300~400kg	18-35 -21	13.0	2.5	0.5	0.3	8.0	10.0	
취 소					"	"	"	15.0	2.5	0.5	0.3	8.0	10.0	
등 록	천 광 산 업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609-1	김 만 호	"	육계전기1	0~3주 (임붙이기)	12-7- 1	21.0	3.0	0.8	0.5	6.0	8.0	
					육계후기2	출하7일전~ 출하시	12-9- 1	17.0	3.0	0.7	0.5	6.0	8.5	
					착 유 1	비유량 15kg이하	12-28 -1	14.0	2.5	0.6	0.4	13.0	10.0	
	녹 십 자 수의약품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227-5	김 선 환	" 대 용 유	양 돈 용 대 용 유 1	어린 돼지용	23-2	20.0	5.0	0.7	0.5	5.0	10.0	25,000

고 시

수원시 고시 제3호

수원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1항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 시행 허가하고 동법제24조 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과 및 권선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2. 15

수 원 시 장

가. 허가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동없음)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 1-6번지의 4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학교

○ 명칭 : 수원간호전문대학

3)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결정면적 : 23,27㎡

시행면적 : 23,275 ㎡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분	계	건축부지	운동장부지	주차장부지	도로부지	녹지부지	비고
기정	23,275	8,820	4,766	855	4,809	4,025	
변경	23,275	6,833	3,480	1,656	5,393	5,913	

○ 건축계획

단위 : m²

구 분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비 고
기 정	3,489.6	9,777.16	
변 경	4,210.27	16,215.42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당초 : 수원시 신풍동 249번지

학교법인 :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 이병직

변경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 1-6번지

학교법인 : 수원인제학원 이사장 : 이병직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구 분	착 수 일	준 공 예 정 일	비 고
기 정	84.12.17	89.12.30	
변 경	"	91.12.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지번,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6)항과 동일

고 시

수원시 고시 제5호

1. 경기도 고시 제273호(89. 9.25)로 변경결정된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함과 동시에 동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수원시청 도시과 및 장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2. 27

수 원 시 장

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세 부 시 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89-4외 57필지 이목동 338-4외 10필지 천천동 1-1외 10필지	286,210		286,210
	건축부지		179,950	감 3,884	176,066
	운동장부지		13,897		13,897
	주차장부지		5,128.75	증 3,195.25	8,324
	녹지부지		58,268.25	증 589.75	58,858
	도로부지		28,966	증 99	29,065

나. 관계도면은

(생략)

고 시

안산시 고시 제10호

반월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시행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제24조 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 및 고잔2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2.

안 산 시 장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고잔동 672-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소매시장

명칭 : 중앙시장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당초 주소 : 안산시 고잔동 531-5

성명 : (주) 금창사 대표 김환웅

— 변경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1-3

성명 : (주) 금창사 대표 이병규

라. 면적 및 규모

- 면적 : 1,398.4㎡(변경없음)
- 규모
 - 건축 부지
 - 당초 : 787,285㎡
 - 변경 : 793.92 "
 - 녹지 부지
 - 당초 : 116.88 "
 - 변경 : 78,177 "
 - 주차장부지
 - 당초 : 82.50 "
 - 변경 : 151.25 "
 - 기타 부지
 - 당초 : 411,735 "
 - 변경 : 373,053 "
- 사업비 : 2,770백만원(변경 없음)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 당초
 - 토지소유자 : (주) 금창사 대표 김환웅
 - 건물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없음
- 변경
 - 토지소유자 : (주) 금창사 대표 이병규
 - 건물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없음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당초 : 1989. 6. 3 ~ 1989.11.30
- 변경 : 1989. 8. 3 ~ 1990. 2.28

공 고

경기도공고 제50호

대지조성사업지자 등록말소 처분 공고

우리 도에 등록된 재지조성 사업자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0. 2. 20

경 기 도 지 사

아 래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구분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말소일	사 유	근 거
89-129	89.5.17	대지조성	대창산업 개 발 (주)	오준문	부천시 중구 심곡동 87-3	90. 2.20	· 고용기술자 갑근세 미제출 ·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 · 행정지시 불이행	주택건설촉진 법 제7조

공 고

경기도 공고 제51호

전기공사업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전기공사업면허를 영업정지 처분 하였기에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2. 20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정지기간	비 고
제705호	신한전기	김 춘 구	부천시 중구 원종동 296-4	90. 2.19~ 5.18(3월)	면 허 기 준 미달

공 고

경기도 공고 제52호

도로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하고 동
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도로의 종류	지방도 393호선	노 선 명	오 산 ~ 서 울
공 사 의 종 류	지방도로확장(고속국도, 지방도 입체교차시설 개량)		
장 소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 구성면 마북리		
시 행 자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사무소장		
공 사 기 간	90. 3. 1 ~ 12. 5		
사 업 량	L = 320m, B = 15m		
목 적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건설에 따라 입체교차 시설 개선		

1990. 2. 20

경 기 도 지 사

공 고

경기도 공고 제59호

K·S 표시허가 취소

고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KS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2. 27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쌍용제지(주)
2. 소 재 지 : 오산시 청학동 188
3. 대 표 자 : 추 세 환
4. 허가 번호 : 1541
5. 규격 번호 : KSM 7500
6. 품 명 : 크라프트 신장지
7. 종류및등급 : 허가 전종류 및 등급
8. 취소 일자 : 90. 2.26
9. 취소 사유 : 자진 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 공고 제60호

K·S 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2.27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주)일진전기
2. 소 재 지 :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837-1
3. 대 표 자 : 조용규
4. 허가 번호 : 제6033, 2001호
5. 규격 번호 : KSC 7603,8102
6. 품 명 : 형광등기구,형광램프용 안정기
7. 종류및등급 : 허가 전종류 및 등급
8. 취소 일자 : 90. 2.26
9. 취소 사유 : 고장폐업으로 표시품생산 불가능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공고 제42호

공인개각 사용 및 폐공인 공고

기관 명칭이 변경된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개각 및 폐기 공인을 안양시 공이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90. 2. 23

안 양 시 장

1. 개각사용 및 폐기일 ; 1990.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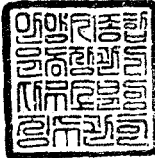
2. 개각 사용인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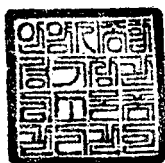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계인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분임경리관인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분임징수관인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물품관리관인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수입금출납원인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안양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물품출납원인 	
3. 폐 기 인	
안양시종합경기장관리소장인 	안양시종합경기장관리소 계인 
안양시종합경기장관리소 분임경리관인 	안양시종합경기장관리소 분임징수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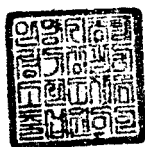
안양시종합경기장관리소
물품관리관인



안양시종합경기장관리소
수입금출납원인



안양시종합경기장관리소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종합경기장관리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안양시종합경기장관리소
물품출납원인



안성군 공고 제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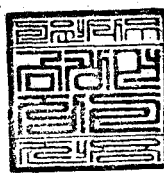
공인 신조 공고

안성군 공인조례 6조 규정에 의하여 신조 및 개각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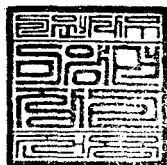
1990. 2.20

안 성 군 수

개각 인영

금광면장인	공도면장인	일죽면장인
		
민원사무전용 안성읍장인	민원사무전용 보개면장인	민원사무전용 금광면장인
		

민원사무전용
미양면장인



민원사무전용
대덕면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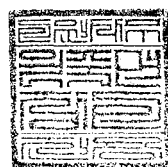
민원사무전용
공도면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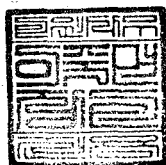
민원사무전용
원곡면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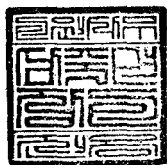
민원사무전용
일죽면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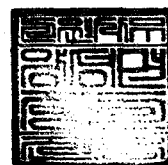
민원사무전용
이죽면장인



민원사무전용
삼죽면장인



민원사무전용
양성면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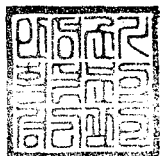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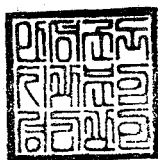


민원사무전용
안성읍계인



민원사무전용 보계면계인	민원사무전용 금광면계인	민원사무전용 미양면계인
		
민원사무전용 공도면계인	민원사무전용 원곡면계인	민원사무전용 일죽면계인
		
민원사무전용 이죽면계인	민원사무전용 삼죽면계인	
		

신조 인영

안성군 기획실
분임경리관인안성군 지적과
분임경리관인안성군 도시과
분임경리관인안성군 지적과
전도자금출납원인